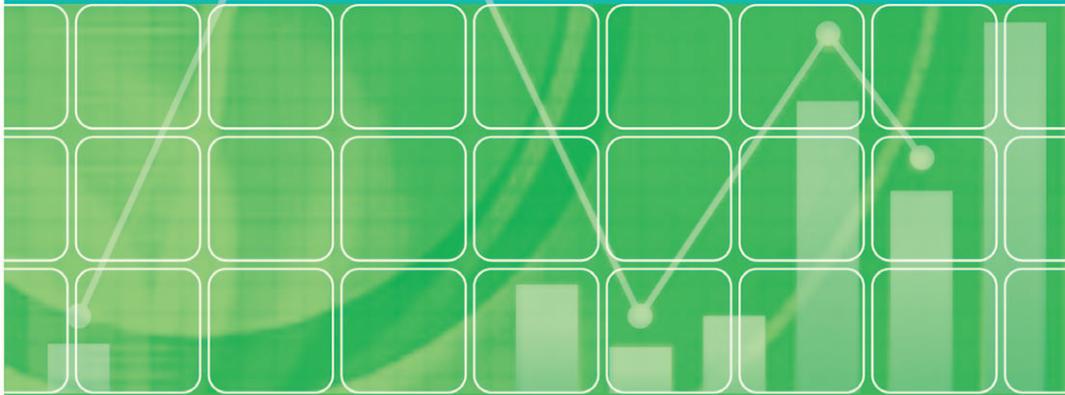


# 재정용자제도 개선방안

2009. 6

박상원 · 박정수 · 안종범 · 이원희



# 재정융자제도 개선방안

2009. 6

박상원 · 박정수 · 안종범 · 이원희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재정용자는 매년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용자한 규모는 25.6조원 수준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용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중요한 지원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최근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재정용자제도를 전반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용자방식이나 이차보전방식의 보조는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용자제도는 용자제도 자체의 단점보다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용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재정용자제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우리나라의 재정용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재정보조율을 계산하여 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 일관되지 않는 기준에 의해 지원 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재정용자제도의 편성지침과 종합관리체계 구축,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직접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박상원 박사, 성균관대학교의 안종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정수 교수, 한경대학교의 이원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이들 집필자들은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 기금운영자, 시중은행의 전문인력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결성하여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논의를 가다듬었다. 따라서 테스크포스 참여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본 보고서가 작성될 수 없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에서의 토론자, 익명의 논평자, 편집과 교정에 도움을 준 변경숙 주임연구행정원과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요약 및 정책시사점

재정용자제도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전체 재정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 현재 재정용자제도의 형태는 기금의 역할 및 활용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용자는 공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용자하고 미래에 상환받는 구조이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실 개별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재정용자사업도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수행되게 된다. 따라서 재정용자제도의 형태가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고영선·신인석(2000)의 경우 정치한 분석과 함께 체계적 관리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고영선·신인석(2000)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재정용자제도를 파악하고, 재정용자제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과 일본, 유럽 투자은행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방만한 재정용자제도의 운용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Ⅳ장에서는 재정용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보조율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다. 재정보조율은 각 재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하나의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재정보조율이 높다는 것은 그 사업으로부터의 정부지출(혹은 수혜자의 수혜 크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재정보조율을 사업별로 계산하고 이를 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평균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적절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V장에서는 제IV장의 분석에 기초하여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재정융자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재정융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둘째, 부처별로 융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셋째,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융자제도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방안으로는, 금리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하는 방식과 융자조건(금리, 대출기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융자조건을 단순화하는 방안은 다시 메뉴를 통한 단순화 방안과 재정보조율을 이용하여 유형화하는 방안으로 세분된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재정보조율을 이용하여 유형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VI장에서는 재정융자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관리

체계의 경우 거시적인 총량 자료와 개별 사업별 미시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연차보고서 및 매뉴얼 등의 발간을 제안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거시자료로서의 관리체계와 미시자료로서의 관리체계를 구별하여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재정용자제도의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용자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정용자의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용자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사업간 형평, 일관된 기준, 체계적 관리 및 홍보 없이 진행되는 재정용자사업은 향후 더욱 큰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목 차

I. 서론 .....	19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융자의 필요성 .....	21
1.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재정융자 .....	21
2. 정부지원 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	22
가. 정부지원 방식의 종류 .....	22
나. 기존 문헌에서의 비교 .....	26
다. 이차보전과 재정융자방식의 장단점 .....	28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	33
1. 미국 .....	33
가. 규모와 방식 .....	33
나. Federal Credit Reform Act .....	38
다. 재정보조율의 계산 .....	40
2. 일본 .....	55
가. 규모와 특징 .....	55
나. 재정투융자제도의 개혁 .....	60
3.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EIF(European Investment Fund) .....	62
가. 설립개요 .....	62
나. 융자방식과 특징 .....	64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65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	69
1. 재정용자의 현황 .....	69
가. 재정용자제도의 발전과정 .....	69
나. 규모 .....	70
다. 주요 부문별 현황 .....	72
2. 재정용자의 유형 .....	83
가. 지원분야별 유형 .....	85
나. 용자사업별 주관기관 .....	89
다. 용자조건 .....	97
3. 재정보조율 계산과 사례분석 .....	112
가. 재정보조율 정의 .....	112
나. (이론적인) 시장금리 산정 방법 .....	112
다. 재정보조율 결정과정 .....	115
라. 재정보조율 시산 결과 (분야별·재원별) 요약 .....	118
마. 재정보조율 시산 결과 사례분석 .....	121
V. 재정용자의 표준화·단순화 .....	150
1. 현행 재정용자제도의 문제점 .....	150
2. 재정용자 표준화를 위한 기준 .....	152
3. 재정용자제도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 .....	154
가. 금리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제1안) .....	154
나. 용자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3가지 금리와 만기로 단순화(제2안) .....	156
다. 재정보조율 개념을 활용하여 용자조건 유형화(제3안) .....	158
4. 재정용자사업 편성지침 .....	162
가. 기본방향 .....	162

나. 편성지침 .....	163
VI. 재정용자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 시스템 구축 .....	168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	168
가. 구축의 주요 변수 .....	168
나. 종합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요소 .....	169
다. 용자자금의 관리 체계의 재구축 .....	170
2. 포털시스템 구축 .....	172
가. 거시자료로서의 관리 체계 .....	172
나. 미시적인 자료로서의 관리 체계 .....	176
3. 관리 방안과 홍보 .....	177
가. 연차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177
나. 재정용자사업의 매뉴얼 발간 .....	178
다. 교육의 실시 .....	178
라. 만족도 조사 및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	178
VII. 결 론 .....	180
참고문헌 .....	184
<부록 IV-1> 주요부문별 현황 .....	186
<부록 VI-1> 개별 용자자금의 관리방식의 예 .....	212
<부록 IV-2>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평가 결과 .....	217

## 표 차례

<표 III-1>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융자 최근 추이 .....	35
<표 III-2>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융자의 사업별 규모 .....	36
<표 III-3> 미국의 직접융자의 재정보조율 .....	42
<표 III-4> 미국의 신용보증의 재정보조율 .....	46
<표 III-5> 미국의 직접융자의 재정보조율의 구성 .....	49
<표 III-6> 2008년 재정투융자 규모 (계획기준) .....	56
<표 III-7> 투융자채권의 잔존기간별 잔고 .....	58
<표 III-8> 투융자채권의 소화방식 .....	59
<표 III-9> 투융자채권의 연한별 발행, 상환 및 잔고 .....	59
<표 III-10> EIB의 대출현황 .....	65
<표 III-11> 외국의 재정투융자 활용사례와 규모 .....	66
<표 IV-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세부 현황 .....	72
<표 IV-2> 국민주택기금 융자자금별 지원조건 .....	73
<표 IV-3>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 융자추이 .....	73
<표 IV-4> 주택구입자금 .....	74
<표 IV-5> 전세자금의 융자추이 .....	74
<표 IV-6> 국민임대주택건설 융자추이 .....	75
<표 IV-7> 공공임대주택건설 융자추이 .....	75
<표 IV-8>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	76
<표 IV-9>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조건 .....	77
<표 IV-10> 영농규모화사업의 융자추이 .....	78
<표 IV-11> 2008년 상반기 융자금 잔액(한국농촌공사) .....	78
<표 IV-12> 농안기금의 융자규모 및 추이 .....	79
<표 IV-13> 2008년 상반기 융자금 잔액 .....	79

<표 IV-14> FTA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80
<표 IV-15>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80
<표 IV-16> 수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81
<표 IV-17>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81
<표 IV-18> 축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82
<표 IV-19>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현황 .....	83
<표 IV-20> 출자계정별 재정용자사업 현황 .....	84
<표 IV-21> 재정용자 지원분야별 분류표 .....	85
<표 IV-22> 사회복지·보건 분야별 현황 .....	87
<표 IV-23>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별 현황 .....	87
<표 IV-24> 농림수산 분야별 현황 .....	88
<표 IV-25> 교육·문화·환경 분야별 현황 .....	88
<표 IV-26> 기획재정부 .....	90
<표 IV-27> 지식경제부 .....	90
<표 IV-28> 교육과학기술부 .....	91
<표 IV-29> 행정안전부 .....	91
<표 IV-30> 문화체육관광부 .....	91
<표 IV-31> 국방부 .....	92
<표 IV-32> 국토해양부 .....	92
<표 IV-33> 노동부 .....	92
<표 IV-34> 농림수산식품부 .....	93
<표 IV-35> 보건복지가족부 .....	95
<표 IV-36> 여성부 .....	95
<표 IV-37> 통일부 .....	95
<표 IV-38> 국가보훈처 .....	95
<표 IV-39> 방송통신위원회 .....	96
<표 IV-40> 중소기업청 .....	96
<표 IV-41> 지식경제부 .....	96

<표 IV-42> 농림수산식품부 .....	97
<표 IV-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용자 금리조건 .....	99
<표 IV-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재정용자 금리조건 .....	99
<표 IV-45> 환경개선특별회계 .....	100
<표 IV-46>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0
<표 IV-47> 고용보험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1
<표 IV-48> 국민주택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1
<표 IV-49>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1
<표 IV-5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2
<표 IV-51> 농지관리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2
<표 IV-5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2
<표 IV-53> 수산발전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3
<표 IV-5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3
<표 IV-55> 축산발전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	104
<표 IV-5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5
<표 IV-5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6
<표 IV-58> 환경개선특별회계 대출기간 .....	106
<표 IV-59> 고용보험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6
<표 IV-60>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7
<표 IV-61> 국민주택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8
<표 IV-62>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8
<표 IV-6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9
<표 IV-64> 농지관리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09
<표 IV-6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10
<표 IV-66> 수산발전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10
<표 IV-67>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11
<표 IV-68> 축산발전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	111
<표 IV-69> 재정용자사업의 이론상의 시장금리 .....	114

<표 IV-70> 재정용자 분야별 평균 보조율 및 보조액 .....	123
<표 IV-71> 재정용자 분야별·세부사업별 보조율 및 보조액 ...	124
<표 IV-72> 재정용자 분야별·세부사업별 보조율 및 보조액 ...	137
<표 V-1> 분야별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 예시: 제2안 ...	157
<표 V-2> 분야별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 예시: 제3안 .....	158
<표 V-3> 용자사업의 유형(예시) .....	160
<표 V-4>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별표]의 예 .....	165
<부표 IV-1>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예산현황 .....	186
<부표 IV-2> 중소기업 대출금리 .....	186
<부표 IV-3> 중소기업 대출현황(잔액기준) .....	186
<부표 IV-4>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현황 .....	187
<부표 IV-5> 보증공급 현황 .....	187
<부표 IV-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조건 .....	187
<부표 IV-7>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	189
<부표 IV-8> 중소기업 분야 재정비중 .....	191
<부표 IV-9>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비 .....	191
<부표 IV-10> 영농규모화사업의 용자규모 .....	192
<부표 IV-11> 영농규모화사업의 용자추이 .....	193
<부표 IV-1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용자규모 .....	193
<부표 IV-1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용자추이 .....	193
<부표 IV-14> 농지관리기금 자금별 업무 요약 .....	194
<부표 IV-15>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한국농촌공사) .....	194
<부표 IV-16> 농안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196
<부표 IV-17> 농안기금 자금별 업무 요약 .....	197
<부표 IV-18>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198
<부표 IV-19> FTA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200
<부표 IV-20> 자금별 업무요약 .....	201

<부표 IV-21>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202
<부표 IV-22> 수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203
<부표 IV-23> 자금별 업무요약 .....	205
<부표 IV-24>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206
<부표 IV-25> 축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	208
<부표 IV-26> 자금별 업무요약 .....	209
<부표 IV-27>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현황 .....	210
<부표 IV-28>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	211

## 그림 차례

[그림 II-1] 직접용자 제도 .....	23
[그림 II-2] 전대방식 .....	24
[그림 II-3] 신용보증 방식 .....	25
[그림 II-4] 이차보전방식 .....	26
[그림 III-1]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용자 장기 추이 .....	33
[그림 III-2] 투용자기관채의 규모와 추이 .....	60
[그림 IV-1] 용자규모 추이 .....	70
[그림 IV-2] 자원별 재정용자 비중(2008) .....	71
[그림 IV-3] 자원별 용자규모(2009) .....	71
[그림 IV-4] 분야별 재정용자 비중(2008~2009) .....	86
[그림 IV-5] 분야별 금리수준(평균금리) .....	98
[그림 IV-6] 분야별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	105
[그림 IV-7] 분야별 평균 재정보조율 .....	119
[그림 IV-8] 분야별 평균 재정보조액 .....	119
[그림 IV-9] 자원별 평균 재정보조율 .....	120
[그림 IV-10] 자원별 재정보조액 총액 대비 비중 .....	120
[부 그림 IV-1]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 .....	190

## I. 서론

- 재정용자는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가지고,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용자하는 제도임
  - 공적자금은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기도 하고, 조세나 부담금을 통해 마련하기도 함
  - 넓은 의미의 재정용자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정부의 신용보증이 포함되기도 하며, 재정투자와 함께 재정투용자로 불리기도 함
- 2008년도와 2009년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용자한 규모는 각각 24.6조원, 25.6조원 수준이며, 2007년 말 기준 용자자산은 113.1조원 규모임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용자제도가 전체 재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특히 기금의 경우에 용자는 핵심적인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 금융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경우, 정부의 재정용자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정보의 비대칭성·외부성의 존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 형평성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등이 재정용자제도의 존재 근거
- 재정용자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정용자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고영선·신인석(2000), 황성현·이기영·박정수

- (2002), 황선호(2007), 박상원·김지영(2008) 등을 들 수 있음
- 고영선·신인석(2000)을 제외하고 이들 문헌들은 재정용자제도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초점
  - 본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와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재정용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방대한 재정용자사업이 각 부처별, 기금별로 제각각 필요에 따라 용자조건(이자율, 기간)을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
    - 재정용자사업 전반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
    - 용자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가장 먼저 배분되는 시그널이 작동하지 못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Ⅰ장: 서론
    - 제Ⅱ장: 재정용자를 비롯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식별 특징을 분석
    - 제Ⅲ장: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제Ⅳ장: 재정용자사업의 현황과 재정보조율을 분석
    - 제Ⅴ장: 재정용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순화·표준화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제시
    - 제Ⅵ장: 재정용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방법과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제Ⅶ장: 결론

##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융자의 필요성<sup>1)</sup>

### 1.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재정융자

- 금융시장의 정부 개입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
  - 정부 개입의 종류는 시장규제, 자금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 보증과 같은 신용의 공급 등이 있음
-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율성은 외부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있다는 것이고, 형평성은 소외계층이 존재한다는 것
  -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외부성이 존재
  - 자금의 수요자 혹은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
  - 순수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정융자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하는데, 재정융자의 역할도 시장의 효율성 보완과 형평성 증진으로 구분 가능

---

1) 박상원·김지영(2008)의 제II장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람.

-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에 의해서는 바람직할 정도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는 직접 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함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불충분한 자금이동(funding gap)이 발생할 수 있음
    - Funding Gap이란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규모가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완전한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작은 경우를 말함
  - SOC 투자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경우 정부가 재정용자를 통해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함
-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 경제주체에 의해서는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순수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용자제도가 이용되기도 함
  -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에 의해 공급받지 못하는 계층이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일종의 재정보조(government transfer)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하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그 비용(자금조성 및 대출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

## 2. 정부지원 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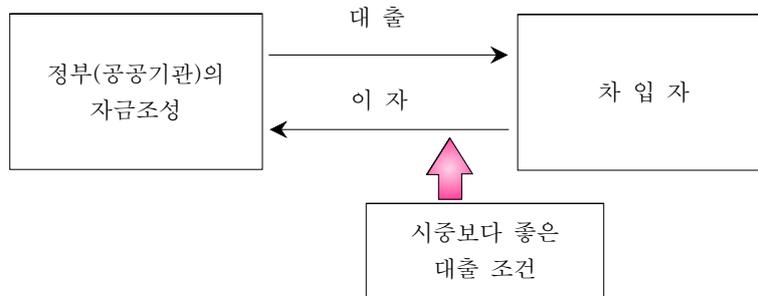
### 가. 정부지원 방식의 종류

-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대상이나 분야에 금융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직접융자, 신용보증, 금융기관 투·융자, 이차보전, 직접규제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용자의 필요성 23

- 이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직접용자, 이차보전, 금융기관 투·융자 등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원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이고 대출비용(예: 이자)을 낮추는 방식이며, 신용보조나 직접 규제의 경우는 접근도(accessibility)를 높이는 방식
- 직접용자(Direct Loan)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차입자를 선별한 후 융자하는 방식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
- 정부가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성할 뿐 아니라 대출 업무도 담당하므로, 지원자에 대한 선별이나 융자 규모 등과 같은 정책결정을 정부가 직접 할 뿐 아니라 융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자)수입도 정부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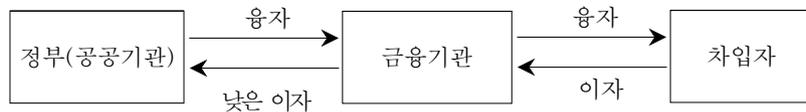
[그림 II-1] 직접용자 제도



- 전대(on lending) 혹은 대하방식은 특정지원 대상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일정금액 대부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 전대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형태로 유형화하기 힘들

- 원론적인 전대방식의 경우 정부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활동을 유도하며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
  - 금융기관은 어떤 차입자에게 자금이 대출되는지에 대해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도 금융기관이 입게 됨
- 우리나라의 대리대출 혹은 대하방식은 금융기관은 일정한 수수료(가산금리)를 받고 공공재원의 용자업무를 대리하는 형태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은 금융기관이 지지만, 차입자 조건 및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
  - 금융기관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대하금리(용자금리)+가산금리=대출금리”를 수요자에게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대출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역할
  - 즉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심사, 대출관리, 회수-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
  - 단순히 은행은 대출업무를 대리하고 차입자 선별, 금리 등의 대출조건 등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용자 제도는 시장의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라고는 할 수 없음

[그림 11-2] 전대방식



□ 신용보증(Loan Guarantee)은 차입자의 자금 상황을 일정부분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용자의 필요성 25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보장하는 제도

- 지급불능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확실한 보증처인 정부로부터 원금이나 이자의 일정부분을 얻게 되므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유인이 커짐
  - 전체 상환금액 중 정부가 보증하는 비율이나 규모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짐
  - 보증을 받는 대신 차입자는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fee)를 지불함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이 대표적인 예
  - 차입자는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신청을 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수혜자를 선별
  - 심사에 통과한 수혜자는 금융기관에 정부보증서를 제출하게 되고, 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됨.

[그림 II-3] 신용보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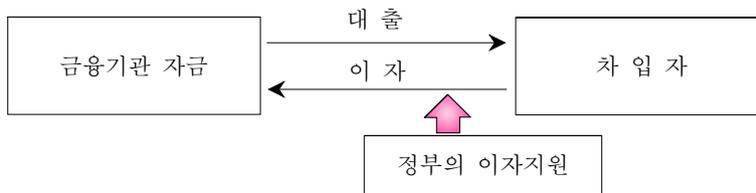


- 이차보전방식(Interest Subsidy)은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입자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고,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
  - 기본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이 융자되므로, 상환 여부가

금융기관의 이윤에 직접 영향을 줌

-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위험성, 자금의 조성 비용과 유동성, 대출과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됨
- 수혜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의 한도, 담보조건, 대출기간, 수혜자 조건 등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계약을 통해 결정

[그림 II-4] 이차보전방식



- 직접융자나 전대방식(대하방식)은 모두 재정융자제도의 한 형태이지만, 신용보증이나 이차보전방식은 보통 이에 포함시키지 않음<sup>2)</sup>
-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유사

나. 기존 문헌에서의 비교

-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해외 문헌들은 직접 융자와 신용보증의 차이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
- 미국에서 직접융자와 신용보증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론적으로 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다른 지원방식과의 차이점보다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기도 함

2)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보증을 재정융자의 한 형태라고 분류하기도 함

##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용자의 필요성 27

- Gale(1989)은 정부가 수혜대상 차입자들에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직접용자 방식과 채무불이행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신용보증 방식을 비교<sup>3)</sup>
  - 만약 수혜대상 차입자들에게 신용할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신용보증이 직접용자 방식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
  - Williamson(1994)도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의 효과 비교를 신용할당(credit ration)과 연결하여 분석
- Fred(1983)는 금융거래의 양을 늘리는 측면에서 직접용자가 신용보증보다 효과적임을 논증
  - 직접용자의 경우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해 재원을 직접 조성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 신용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유입되는 자금도 증가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이차적 교란 때문에 직접용자가 금융거래의 양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
  - Fred(1983)의 주장은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면서도 신용보증의 경우에만 일반균형적인 이차효과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평한 비교라고 하기 어려움
- Li(1998)는 직접용자·신용보증·보조금 지급 방식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수치분석(simulation)을 함
  - Li(1998)의 모형은, 차입자가 자금을 빌려 투자를 수행할 때 이 투자의 성공가능확률이나 차입자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대칭정보(symmetric information)를 가정
  - 직접용자·신용보증·보조금 지급은 모두 수혜자의 후생을 증

3) Gale(1989)에서의 모형은 이차보전과 직접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음

- 가시키지만 비수혜자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임
- 직접용자의 경우는, 신용보증에 비해 목표 계층의 투자 촉진에는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지만, 투자의 성공확률이 높고 경제력이 낮은 차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
  - Li(1998)의 모형은 직접용자와 이차보전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

#### 다. 이차보전과 재정용자방식의 장단점

- 재정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재정용자(직접용자나 대하방식)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황성현·이기영·박정수(2002)와 이기영(2008)은 중앙정부의 연간 총 재정용자규모가 통합재정의 약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상기시키면서 민간금융시장의 자금을 이용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
    - 특히 현재의 재정용자제도는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수수료(가산금리)를 지불해야 하고, 기금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며 기금·특별회계가 난립하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
  - 기금이나 분야별 정부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문헌들도 존재
    - 2003년 감사원과, 2004년도·2007년도의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05, 2008) 등에서는 용자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 김현욱 외(2007)는 국민주택기금을 평가하면서, 이차보전방식과 전대방식이 직접금융방식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을 설명

##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용자의 필요성 29

-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차보전과 재정용자방식의 장단점을 자세히 비교해야 함
  -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은 양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 민간금융시장의 활용과 효율성

- 금융시장의 활용이란 정부가 민간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점
  - 금융시장이란 금융기관, 민간자금, 금리 혹은 대출조건이라는 가격 메커니즘을 모두 포괄함
- 민간 금융시장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금융시장의 활용도는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역할은, 자본에 여유가 있는 대부자로부터 투자가 가능한 차입자에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
  - 효율적 자원배분이란 같은 수익을 보다 높은 확률로, 혹은 같은 확률이라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차입자에게 대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민간에 비해 정부는 효율적 자원배분보다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금융기관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직접용자<대리대출(전대방식)>이차보전 순이라고 볼 수 있음<sup>4)</sup>
  - 직접용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 재원을 조성하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므로 금융시장의 활용이 거의 없음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권이 잘 보장됨

---

4) 이는 원론적 측면에서의 비교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구체적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이윤을 극대화하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적인 용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유인을 가짐
- 정부에 비해 차입자의 사업성공 가능성, 상환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민간 금융기관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경우 유리
- 전대방식도 차입자 선별 및 인센티브에 있어서 이차보전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됨
-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만성적 자금공급부족 현상이 존재한 경우, 정부의 직접 자금 조성이 필요
- 이와 반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나 계층에 대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과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2) 정책 목표의 달성

- 금융적 활동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의 상당 부분은,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체를 지원하는 것
- 정책 목표의 달성은 전술한 민간시장의 활용과 상반된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 직접용자는 대출 규모와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식
- 대리대출 방식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대리로 수행하지만, 정부가 이자율, 상환기간, 대출 규모 등의 조건들을 대부분 결정하는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
- 정부가 명시적으로 차입자 선별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자원배분은 금융기관의 선택에 크게 의존
  -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II. 정부지원 방식과 재정용자의 필요성 31

- 이차보전은 민간시장의 기재(mechanism)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서도 정책적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
  - 민간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와 계층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 신용이 높지 않거나 리스크가 많은 계층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공급하더라도 높은 이자부담을 요구하므로, 정책목표와는 상충
  -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위험을 낮추어 준다면 상당부분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음

### 3) 재정적 측면

- 재정적 측면이란 각 방식을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파생효과 측면에서 각 방식을 비교하는 것
- 정부 재원조달의 크기 측면에서의 비교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로부터의 사중손실(자원배분의 왜곡)을 고려한다면, 작은 재원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직접용자와 대리대출방식은 수혜자에게 용자되는 모든 자금을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은 큼
    - 한번 큰 자금이 마련되면 이후에는, 지난 기의 원금상환으로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금소요는 작음
  - 이차보전방식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므로, 동태적으로 본다면 총소요자금은 방식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한계사중손실의 크기가 체증(체감)하는 경우 이차보전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불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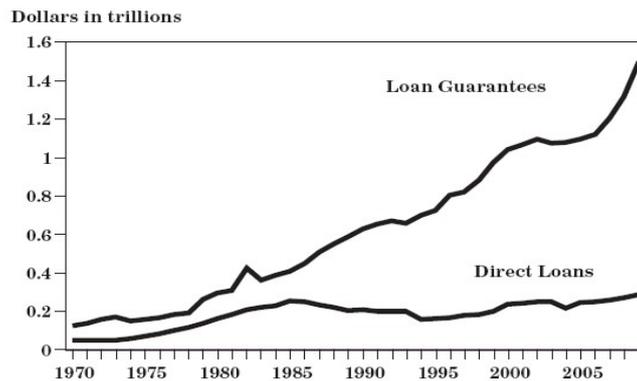
- 자금의 관리·운용 비용 측면에서의 비교도 필요: 이차보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용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기관의 운용비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대리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이 자금을 관리하므로 직접용자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지만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추가적 부담이 있음
  - 하지만 직접용자시의 관리비용이나 대리대출시의 수수료는 이차보전 위험부담에 대한 보전, 대출관리 및 회수 책임비용 등에 해당
    - 즉 이러한 비용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이자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
- 용자방식 전환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적립된 재원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의 장단점도 존재
  - 현재의 재정용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이차차익만큼의 재원만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적립한 재원은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경우 적립된 자산은 결국 향후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하므로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
  - 또한 당장의 재정적 필요를 위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기금을 다른 분야에 사용한다면 향후 국가재정이 더욱 긴급하게 요구될 경우를 대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 Ⅲ. 해외의 재정용자제도

#### 1. 미국

##### 가. 규모와 방식

[그림 Ⅲ-1]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용자 장기 추이



출처: U.S. Government (2009)

-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정책(credit policy)은 주로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으로 구성되는데 [그림 Ⅲ-1]은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직접용자 규모는 2,600억달러이며 신용보증의 규모는 1조 2,020억달러 수준임
    - 이때 직접용자의 규모란 그 시점까지 대출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 즉, 잔고(outstanding)를 말하며, 신용보증의 규모란 그 시점까지 보증된 대출의 규모를 말함

- 연방정부의 신용정책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뉴딜정책에 기원을 두고 있음
- 직접용자의 경우 완만한 성장을 보여준 것에 비해, 신용보증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표 III-1>에 나타난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직접용자는 2008년까지 평균 매년 2.5% 증가한 반면, 신용보증은 7.3%씩 증가
- OMB는 신용보증을 통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보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접용자보다는 신용보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Circular No. A-129)<sup>5)</sup>
  - 신용보증은 효율적인 민간 금융기관의 활동을 동반하므로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
  -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
    - 민간 금융기관 업무의 효율성
    - 대부자의 신용에 대한 분석 능력의 차이
    - 수혜자들이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신용을 축적
    - 직접 용자는 민간 활동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재정용자 및 관련 사업은 정부후원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 이하 GSE)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GSE는 민간 소유이므로 엄밀히 말해 공공기관(government agent)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고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음
  - 비록 법적으로 GSE가 발행한 채권은 정부의 보장을 받지 못하나, 시장에서는 무위험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표적인 GSE는 부동산관련의 Fanni Mac, Freddie Mac, Sallie Mac, Farm Credit System 등이 있음

5) 신용보증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따라 혜택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음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35

- 정부의 장기 대출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 이를 유동화시키는 역할도 많이 수행

<표 III-1>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융자 최근 추이

(단위: 10억달러)

	Actual								Estimat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irect Loans:										
Obligations	37.1	39.1	43.7	45.4	42.0	56.3	57.8	42.5	44.7	39.9
Disbursements	35.5	37.1	39.6	39.7	38.7	50.6	46.6	41.7	42.1	40.5
New subsidy budget authority	-0.4	0.3	*	0.7	0.4	2.1	4.7	1.7	5.3	0.7
Reestimated subsidy budget authority <sup>1)</sup>	-4.4	-1.8	0.5	2.9	2.6	3.8	3.1	3.4	-0.6	...
Total subsidy budget authority	-4.8	-1.5	0.5	3.5	3.0	6.0	7.8	5.1	4.7	0.7
Loan Guarantees:										
Commitments <sup>2)</sup>	192.6	256.4	303.7	345.9	300.6	248.5	280.7	266.5	306.1	361.9
Lender disbursements <sup>2)</sup>	180.8	212.9	271.4	331.3	279.9	221.6	256.0	251.2	270.3	340.6
New subsidy budget authority	3.6	2.3	2.9	3.8	7.3	10.1	17.2	5.7	-2.6	1.1
Reestimated subsidy budget authority <sup>1)</sup>	0.3	-7.1	-2.4	-3.5	2.0	3.5	7.0	-6.8	3.6	...
Total subsidy budget authority	3.9	-4.8	0.5	0.3	9.3	13.6	24.2	-1.1	1.0	1.1

주: \* Less than \$50 million.

1) Includes interest on reestimate.

2) To avoid double-counting, totals exclude GNMA secondary guarantees of loans that are guaranteed by FHA, VA, and RHS, and SBA's guarantee of 7(a) loans sold in the secondary market.

출처: U.S. Government (2009)

- 직접융자나 신용보증의 대상이 대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됨
  - 주택분야: 주택모기지대출은 신용보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분야: 직접용자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신용보증과 이자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과 직접 용자인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Student Loan이 대표적
  - 기업 및 농촌신용사업: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와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s)에 의한 직접용자및 신용보증
- <표 III-2>는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의 사업별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신용보증의 경우 학자금 대출 보증, 모기지 관련 보증 등의 규모가 크고, 직접용자의 경우 학자금 용자, 농어촌 관련 용자의 규모가 큼

<표 III-2> 미국의 신용보증과 직접용자의 사업별 규모

(단위: 10억달러)

Program	Program Outstanding 2006	Estimated Future Costs of 2006 Outstanding <sup>1)</sup>	Outstanding 2007	Estimated Future Costs of 2007 Outstanding <sup>1)</sup>
Direct Loans: <sup>2)</sup>				
Federal Student Loans	116	16	124	15
Farm Service Agency (excl. CCC), Rural Development, Rural Housing	43	10	44	10
Rural Utilities Service and Rural Telephone Bank	38	2	40	1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3	10	3
P.L. 480	8	4	8	4
Disaster Assistance	7	2	10	2
Export-Import Bank	7	2	6	2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7	3	6	2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2	1	1	.

<표 III-2>의 계속

(단위: 10억달러)

Program	Program Outstanding 2006	Estimated Future Costs of 2006 Outstanding <sup>1)</sup>	Outstanding 2007	Estimated Future Costs of 2007 Outstanding <sup>1)</sup>
VA Mortgage	1	.	1	-1
Other Direct Loan Programs	12	4	11	5
Total Direct Loans	251	47	260	44
Guaranteed Loans: <sup>2)</sup>				
Federal Student Loans	325	52	363	51
FHA-Mutual Mortgage Insurance Fund	317	3	322	7
VA Mortgage	211	3	232	4
FHA-General and Special Risk Insurance Fund	98	1	108	.
Small Business <sup>3)</sup>	67	2	72	2
Export-Import Bank	36	2	39	1
Farm Service Agency (excl. CCC), Rural Development, Rural Housing	31	.	32	.
International Assistance	22	2	22	2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3	.	3	.
Maritime Administration	3	.	3	.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 <sup>3)</sup>	.	*	.	*
Other Guaranteed Loan Programs	7	1	6	2
Total Guaranteed Loans	1,120	66	1,202	69
Total Federal Credit	1,371	113	1,461	113

주: \* Less than \$500 million.

- 1) Direct loan future costs are the financing account allowance for subsidy cost and the liquidating account allowance for estimated uncollectible principal and interest. Loan guarantee future costs are estimated liabilities for loan guarantees.
- 2) Excludes loans and guarantees by deposit insurance agencies and programs not included under credit reform, such as CCC commodity price supports. Defaulted guaranteed loans which become loans receivable are accounted for as direct loans.
- 3) Certain SBA data are excluded from the totals because they are secondary guarantees on SBA's own guaranteed loans. GNMA data are excluded from the totals because they are secondary guarantees on loans guaranteed by FHA, VA and RHS.

출처: U.S. Government (2009)

- 재정용자 및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정보는 예산관련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특징 중 하나
  - 미국의 예산 관련 문서는 Budget of the United State Government, Budget Resolution, Analytical Perspectives 등 여러 개가 존재
  - 직접용자 및 신용보증과 같은 신용정책에 대한 정보는 Analytical Pespectives에 자세하게 수록

#### 나. Federal Credit Reform Act

- 미국은 1990년대 초 연방정부의 신용정책(credit policy)의 재정비용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계산하여 예산문서에 발표하는 방식을 크게 바꿈
  - 특히 1990년에 Federal Credit Reform Act(이하 FCRA)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
- FCRA에 의해, 연방정부는 그해 제공된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으로 인해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흐름을 현재가치화하여 표시하게 됨
  - 이전까지는 당해에 들어오는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표시하였음
  - 이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즉 발생주의에 의해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을 표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당해에 100원을 대출하고 다음해에 105원(원금 100원, 이자 5원)을 상환하는 용자가 200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 기존 방식에 의하면 재정문서에 나타나는 현금흐름(재정지출)은
    - 2007년: 100원 (2007년 대출)
    - 2008년: -5원 (2008년 대출 100원 - 2007년 용자로부터의 상환 105원)

### III. 해외의 재정용자제도 39

- 2009년: -105원 (2008년 용자로부터의 상환)
- 할인율을 10%로 가정할 때, 새로운 방식에 의해 계산되는 정부비용(subsidy cost)은
  - 2007년:  $100\text{원} - (105\text{원}/1.1) = 4.55\text{원}$
  - 2008년:  $100\text{원} - (105\text{원}/1.1) = 4.55\text{원}$
  - 2009년: 0원
- 매년 동일한 양의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 방식에 의한 정부비용의 보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방식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과거의 방식에 따르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미래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당장의 정부지출을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유인이 있음
- Elliott(2004)는 기존 방식이 초래하는 세 가지 왜곡을 지적
  - 기존 방식은 직접용자의 첫째 비용을 과도하게 표시하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직접용자를 갱신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음
  - 직접용자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려는 유인이 있음
  - 신용보증은 현재 비용이 높지 않도록 표시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유인이 있음
- FRCA의 지침에 의해 각 사업별 정부의 보조비용(subsidy cost)을 산출하고 이를 용자규모로 나누어 얻은 재정보조율(subsidy rate)을 발표<sup>6)</sup>
  - 각 사업별 지원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 각 사업을 위한 정부의 비용(혹은 각 사업의 수혜자가 얻는 혜택의 크기)을 일관된 기준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
  - 재정보조율은 정부가 1원의 용자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

6) 재정보조율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식은 후에 기술하고자 함

는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것

- 정부의 비용은 반대로 수혜자가 얻는 혜택의 크기임
- 재정보조율은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재원조성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경제적 비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다. 재정보조율의 계산

- 재정보조비용(subsidy cost)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부 현금수입에서 현금지출을 빼고, 이 흐름을 현재가치로 표시한 것
  -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시간할인과 위험이라는 두 요소를 반영해야 함
- 시간선호(할인)와 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두 번째 방식을 채택
  - 할인율에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는 방식
    - 시장이자율이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에 대한 위험(risk spread)을 반영
    - 정부 용자와 위험수준이 동일한 채권의 시장이자율을 정확하게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
  -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예: 국채 이자율)을 사용하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기와 확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기와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하지만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 예를 들어 3년 후의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3년 만기인 Treasury Bond with no coupon의 이자율을 이용

### III. 해외의 재정용자제도 41

- 현재 미국의 방식은 과거 재정용자의 상환 자료를 추적하고, 이와 유사한 채권의 시장 평가를 이용하여 채무불이행 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 재정보조비용(subsidy rate)은 “채무불이행시의 비용+이자지급+용자시의 수수료+원금상환” 등의 현재가치로 구성됨
  - 채무불이행 비용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포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결정됨
    - 보조율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불이행 비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비용 추정에는 “계량적 방식(econometric method)”, “과거 평균치 (historical average)”, “전문지식에 기초한 판단(professional opinion)” 등이 사용됨
- 재정보조비용과 이로부터 산출되는 재정보조율은 재정용자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overnment agent)이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하되 OMB가 이를 감독
  - OMB는 OMB subsidy rate calculator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각 담당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
    - 소프트웨어는 입력된 자료에 기초하여 재정보조율을 계산해 줄 뿐 아니라, 재정보조율이 어떻게 이자율 부분, 채무불이행 비용 부분, 원금 상환부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표시
- <표 III-3>과 <표 III-4>는 2009년 미국 직접용자와 신용보증의 재정보조율을 보여주고 있음
  - 직접용자의 경우 교육, 농업 일부 사업 등의 재정보조율이 높고, 중소기업 지원이나 국방 관련 사업은 중간 정도
  - 신용보증의 경우 재정보조율이 대체적으로 낮음

- 교육과 주택, 농업 일부 사업의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출이자가 시간할인율보다 높은 경우 보조율이 음수가 될 수 있음
-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보조비용이 생략되었으므로 음수의 경우에도 정부가 실제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
- 수혜자가 시장할인율에 해당하는 대출조건을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조율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재정보조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제IV장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 관련 사업의 보조율이 월등히 높음
  - 농업, 중소기업, 교육 등의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우리나라와 대조적

&lt;표 III-3&gt; 미국의 직접융자의 재정보조율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Agriculture:									
Agricultural Credit Insurance Fund Program Account	9.32	92	985	9.28	88	948	9.37	88	944
Farm Storage Facility Loans Program Account	0.38	1	174	1.01	2	153	6.11	9	153
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 <sup>2)</sup>	9.09	132	1,451	.	.	.	.	.	.

<표 III-3>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Rural Electr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Loans Program Account	-0.67	-29	4,267	-0.57	-41	7,284	-2.05	-98	4,790
Distance Learning, Telemedicine, and Broadband Program	1.98	5	283	2.15	12	523	3.90	12	298
Rural Water and Waste Disposal Program Account	.	.	.	6.81	70	1,025	3.77	48	1,269
Rural Community Facilities Program Account	.	.	.	5.55	22	404	5.72	17	302
Rural Housing Assistance Grants	47.82	1	2	.	.	.	.	.	.
Farm Labor Program Account	47.95	16	33	43.26	13	31	.	.	.
Multifamily Housing Revitalization Program Account	.	.	.	46.39	6	14	.	.	.
Rural Housing Insurance Fund Program Account	13.42	181	1,354	11.85	156	1,313	12.93	6	38
Rural Development Loan Fund Program Account	44.07	15	34	42.89	14	34	41.85	14	34
Rural Economic Development Loans Program Account	21.84	6	26	22.59	7	33	.	.	.
Commerce:									
Fisheries Finance Program Account	-8.02	-4	48	-3.72	-4	90	-12.78	-1	8

## &lt;표 III-3&gt;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Defense - Military:									
Defense Family Housing Improvement Fund	14.57	59	406	23.86	109	457	43.50	47	107
Education:									
College Housing and Academic Facilities Loans Program Account	65.22	304	467	.	.	.	16.31	10	61
TEACH Grant Program Account	.	.	.	13.03	7	57	13.05	14	105
Loans for Short-Term Training Program Account	.	.	.	.	.	.	-0.27	.	46
Federal Direct Student Loan Program Account	1.37	258	18,850	0.76	169	19,891	1.13	250	21,048
Homeland Security:									
Disaster Assistance Direct Loan Program Account	.	.	.	1.73	.	25	1.04	.	25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HA-Mutual Mortgage Insurance Program Account	.	.	3	.	.	50	.	.	50
State:									
Repatriation Loans Program Account	60.14	1	1	60.22	1	1	59.77	1	1
Transportation:									
Federal-aid Highways	3.92	30	766	10.00	232	2,320	10.00	100	998
Railroad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gram	.	.	103	.	.	600	.	.	600

<표 III-3>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Treasury: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Program Account	37.47	.	1	37.52	3	8	37.88	1	2
Veterans Affairs:									
Housing Program Account	5.08	6	122	0.55	2	337	-0.16	.	328
Native American Veteran Housing Loan Program Account	-13.46	-1	8	-14.48	-2	12	-10.07	-1	13
General Operating Expenses	2.00	.	3	2.16	.	3	1.93	.	3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s:									
Debt Restructuring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Program Account	4.42	13	291	3.22	11	342	2.34	11	450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s Program Account	17.73	267	1,506	16.27	156	959	14.92	158	1,061
Business Loans Program Account	10.21	2	19	10.12	2	20	.	.	25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port-Import Bank Loans Program Account	.	.	.	33.01	17	50	33.01	17	50
Total	N/A	1,386	31,203	N/A	1,159	36,984	N/A	737	32,809

주: 1) Additional information on credit subsidy rates is contained in the Federal Credit Supplement.

2) 2007 data include Rural Water and Waste Disposal and Rural Community Facilities loan programs.

N/A = Not applicable.

출처: U.S. Government (2009)

&lt;표 III-4&gt; 미국의 신용보증의 재정보조율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Agriculture:									
Agricultural Credit Insurance Fund Program Account	258	56	2,155	258	67	2,607	261	65	2,497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Export Loans Program Account	292	39	1,334	233	53	2,274	0.96	26	2,675
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 <sup>2)</sup>	409	45	1,090	.	.	.	.	.	.
Rural Water and Waste Disposal Program Account	.	.	.	-0.82	-1	75	-0.82	-1	75
Rural Community Facilities Program Account	.	.	.	3.68	8	210	3.08	6	210
Rural Housing Insurance Fund Program Account	1.37	51	3,754	1.37	84	6,141	0.3	16	5,149
Rural Business Program Account	.	.	.	4.33	63	1,463	4.35	30	700
Renewable Energy Program Account	6.49	4	57	9.69	18	184	.	.	.
Education:									
Loans for Short-Term Training Program Account	.	.	.	.	.	.	1.02	3	316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Account	6.29	6,850	108,873	1.07	1,077	100,559	2.21	2,407	109,117
Energy:									
Title 17 Innovative Technology Loan Guarantee Program	.	.	.	.	90	600	.	.	2,220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3.42	1	28	3.41	.	8	.	.	.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47

<표 III-4>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dian Housing Loan Guarantee Fund Program Account	2.35	5	235	2.42	9	367	2.52	11	420
Native Hawaiian Housing Loan Guarantee Fund Program Account	2.35	1	43	2.42	1	41	2.52	1	41
Native American Housing Block Grant	11.99	1	12	12.12	2	17	12.34	2	17
Community Development Loan Guarantees Program Account	2.17	4	201	2.25	5	200	.	.	.
FHA-Mutual Mortgage Insurance Program Account	-0.37	-209	56,519	-0.51	-368	72,172	-0.49	-749	151,280
FHA-General and Special Risk Program Account	-2.46	-813	32,927	-1.76	-663	39,346	-2.20	-143	6,530
Interior:									
Indian Guaranteed Loan Program Account	6.45	6	87	6.53	6	86	7.73	7	85
Transportation:									
Minority Business Resource Center Program	1.82	.	3	2.03	.	18	1.86	.	18
Federal-aid Highways	.	.	.	10.00	20	200	10.00	20	200
Railroad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gram	.	.	.	.	.	100	.	.	100
Maritime Guaranteed Loan (Title XI) Program Account	.	.	.	4.35	5	115	.	.	.
Veterans Affairs:									
Housing Program Account	-0.36	-87	24,186	-0.34	-120	35,197	-0.66	-236	35,817

## &lt;표 III-4&gt;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Agency and Program	2007 Actual			2008 Enacted			2009 Proposed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Subsidy rate <sup>1)</sup>	Subsidy budget authority	Loan levels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s:									
Loan Guarantees to Israel Program Account	.	.	.	.	.	700	.	.	700
Development Credit Authority Program Account	1.99	7	350	6.00	21	348	3.05	15	475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Program Account	-0.59	-8	1,333	-1.75	-23	1,338	-0.84	-11	1,400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Loans Program Account	.	.	20,506	.	.	28,000	-0.01	-5	28,000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port-Import Bank Loans Program Account	-0.15	-18	12,599	-1.74	-238	13,710	-1.79	-248	13,807
Total	N/A	5,935	266,262	N/A	86	306,076	N/A	1,216	361,849
ADDENDUM:									
SECONDARY GUARANTEED LOAN COMMITMENTS									
GNMA:									
Guarantees of Mortgage-backed Securities Loan Guarantee Program Account	-0.21	-193	85,071	-0.21	-163	77,400	-0.21	-163	
SBA:									
Secondary Market Guarantee Program	.	.	3,678	.	.	12,000	.	.	12,000
Total, secondary guaranteed loan commitments	N/A	-193	88,749	N/A	-163	89,400	N/A	-163	89,400

주: 1) Additional information on credit subsidy rates is contained in the Federal Credit Supplement.

2) 2007 data include Rural Water and Waste Disposal, Rural Community Facilities, and Rural Business and Industry loan guarantee programs.

1. N/A = Not applicable.

출처: U.S. Government (2009)

<표 III-5> 미국의 직접용자의 재정보조율의 구성

(단위: %, unless noted otherwise)

Agency, Bureau, Program and Risk Category	Composition of Subsidy				Loan Characteristics								
	Subsidy rate	Defaults, net of recoveries	Interest	Fees	All other	Loan maturity (years)	Borrower rate	Grace period (years)	Upfront fees	Annual fees	Other fees	Default rate <sup>1)</sup>	Recovery rate <sup>2)</sup>
Department of Agriculture													
Farm Service Agency: <sup>3)</sup>													
Agricultural Credit Insurance Fund:													
Farm Ownership	4.45	11.00	-6.72		0.17	37.00	5.74					105.95	22.76
Farm Operating	12.69	13.94	-1.11		-0.14	4.00	5.61					25.69	48.78
Indian Tribe Land Acquisition	3.15	0.31	2.83			40.00	5.00					11.92	22.61
Emergency Disaster	11.15	5.24	6.72		-0.82	11.00	3.75					18.56	99.57
Boll Weevil Eradication	-0.27	1.45	-2.00		0.28	7.00	5.52					2.22	23.46
Farm Storage Facility Loan Program	1.01	1.10	0.02	-0.11		7.00	5.00		0.11			19.85	69.90
Sugar Storage Facility Loan Program	0.98	0.62	0.36			15.00	5.00					10.54	87.45
Rural Utilities Service:													
Water and Waste Disposal Loans	6.81	0.09	7.03		-0.31	38.00	4.50	1				4.52	99.90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Loans	2.14	2.15			-0.01	8.00	4.67					17.64	90.00
Broadband Treasury Loans	2.15	2.17			-0.02	18.00	4.89	1				8.92	71.00
Rural Electrification and Telephone Program:													
Electrification:													
Electric Hardship Loans	0.12	0.96	-0.03		-0.81	33.00	5.00	1				10.21	83.03
FFB Electric Loans	-0.70	0.67	-1.37			27.00	5.06	1				5.28	83.03

## &lt;표 III-5&gt;의 계속

(단위: %, unless noted otherwise)

Agency, Bureau, Program and Risk Category	Composition of Subsidy			Loan Characteristics									
	Subsidy rate	Defaults, net of recoveries	Interest	Fees	All other	Loan maturity (years)	Borrower rate	Grace period (years)	Upfront fees	Annual fees	Other fees	Default rate <sup>1)</sup>	Recovery rate <sup>2)</sup>
Telephone:													
Telecommunication Hardship Loans	0.08	1.00	-0.96		0.04	19.00	5.00	1				7.02	83.03
FFB Telecommunications Loans	0.62	0.85	-0.01		-0.22	16.00	4.79	1				5.52	83.03
Treasury Telecommunication Loans	0.67	0.64			0.03	18.00	4.90	1				4.69	83.03
Rural Housing Service:													
Community Facility Loans	5.55	0.73	5.40		-0.58	30.00	4.50	1				6.10	83.08
Rural Housing Insurance Fund:													
Single-Family Housing Credit Sales	-1.15	7.85	-15.38		6.38	20.00	6.72					46.69	64.00
Multi-Family Housing Credit Sales	37.14	5.41	-17.41		49.15 <sup>(3)</sup>	50.00	6.22					18.65	22.50
Section 502 Single-Family Housing	9.37	5.73	-13.44		17.09	30.00	6.22					32.23	41.28
Section 504 Housing Repair	28.27	0.94	29.14		-1.81 <sup>(4)</sup>	19.00	1.00					7.15	56.86
Section 515 Multi-Family Housing	42.61	1.13	-17.92		59.39 <sup>(4)</sup>	50.00	6.22					13.47	76.39
Section 523 Self-Help Housing	2.84		2.84		2.00	2.00	3.00						
Section 524 Site Development	-0.79	0.92	-1.71		2.00	6.22	0.99						
Section 514 Farm Labor Housing	43.26	8.93	44.45		-10.11 <sup>(4)</sup>	33.00	1.00					56.47	61.26



## &lt;표 III-5&gt;의 계속

(단위: %, unless noted otherwise)

Agency, Bureau, Program and Risk Category	Composition of Subsidy			Loan Characteristics									
	Subsidy rate	Defaults, net of recoveries	Interest	Fees	All other	Loan maturity (years)	Borrower rate	Grace period (years)	Upfront fees	Annual fees	Other fees	Default rate <sup>1)</sup>	Recovery rate <sup>2)</sup>
Federal Student Aid: Ford Direct Loan Program: Weighted Average of Total Obligations	0.76	1.98	-7.39	-2.10	8.26	11	6.75	*	2.10			13.92	105.62 <sup>5)</sup>
Subsidized Stafford	9.74	0.86	3.25	-2.38	8.01	10	6.40	*	2.38			11.89	114.60 <sup>5)</sup>
Unsubsidized Stafford	-10.31	0.89	-18.46	-2.38	9.64	10	6.46	*	2.38			10.75	114.60 <sup>5)</sup>
PLUS	-11.75	0.59	-18.49	-4.00	10.15	10	7.90		4.00			5.55	114.17 <sup>5)</sup>
Consolidated TEACH Grants	9.88	6.32	-1.90		5.46	16	6.94					26.26	93.59 <sup>5)</sup>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tate Share Loans	13.03	0.49	6.15		6.39	9	6.80					8.35	114.60 <sup>5)</sup>
Community Disaster Loan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Repatriation Loans	1.73 93.3		1.38 5.01		0.35 88.29	7 5	4.96 5.09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60.22	59.65	0.57			*	1.20	*				94.19	39.81



<표 III-5>의 계속

(단위: %, unless noted otherwise)

Agency, Bureau, Program and Risk Category	Subsidy rate	Composition of Subsidy			Loan Characteristics								
		Defaults, net of recoveries	Interest	Fees	All other	Loan maturity (years)	Borrower rate	Grace period (years)	Upfront fees	Annual fees	Other fees	Default rate <sup>1)</sup>	Recovery rate <sup>2)</sup>
OPIC Direct Loans	3.22	13.60	-1.31	-9.08		10	6.67	5	0.40	1.50		33.76	50.00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General Business Loan Programs:					1.80	10	3.77	1					
7(m) Direct Microloans	10.12	-0.05 <sup>6)</sup>	8.37										
Disaster Loan Program:					-5.45	21	3.94	1				24.01	15.56
Disaster Assistance	16.27	10.25	11.47										
Other Independent Agencies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Direct Loans: Tied Aid War Chest	33.01	5.97	31.50	-4.46		24	1.50	3		4.67		9.08	

주: \* Nonzero amount rounds to zero.

1) Lifetime defaults as a percentage of disbursements.

2) Recoveries as a percentage of lifetime defaults.

3) Subsidy estimates are based on total cash receipts curves. Default component includes net expected inflows and outflows where insufficient data is available to identify the source.

4) Fees included in the all other component.

5) Recovery rate includes interest and penalties.

6) Default component reflects recoveries only; defaults are included in the all other component.

출처: U.S. Government (2009)

- <표 III-5>는 각 사업의 재정보조율이 어떻게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위험비용” 등으로 구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과거에 결정된 직접투자자와 신용보증의 재정비용은 정해진 기간마다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재계산(reestimate)하도록 하고 있음
  - 대출이나 신용보증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자율의 변화를 비롯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함
  - 이자의 변화, bad loan의 처분과 구매, default rate에 대해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용

## 2. 일본<sup>7)</sup>

### 가. 규모와 특징

- 일본의 재정투융자는 중소기업 지원, 교육·복지·의료 분야 융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산업연구개발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신용력·담보력 등이 약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자금 공급을 공급받지 못하는 중소 영세기업에,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공급
  - 교육·복지·의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학자금 대여, 의료시설에 대한 융자 등을 실시
  - 사회간접자본: 공항, 고속도로, 도시 재개발 등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재정투융자 실시
  - 산업·연구 개발: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기초 산업 연구 분야에 재정투융자 활용
  - 주택: 정책적으로 중요하면서 민간으로부터 재원조달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자금 대부분 실시
- <표 III-6>은 2008년 재정투융자제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규모

7)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참조

&lt;표 III-6&gt; 2008 재정투융자 규모(계획기준)

(단위: 억엔)

	재정융자	산업투자	정부 보증	재정투융자 합계
<특별회계>				
에너지대책특별회계	375			375
국립고등전문의료센터특별회계	92			92
식료안전공급특별회계	180			180
사회자본정비사업특별회계	725			725
<공고 등>				
공영기업금융공고	-	-	3,500	3,500
국민생활금융공고	9,450	62	-	9,512
중소기업금융공고	4,900	284	500	5,684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	17,697	157	3,150	21,004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775	16	-	791
농림어업금융공고	956	-	-	956
일본정책투자은행	1,800	-	1,900	3,700
국제협력은행	3,997	200	1,800	5,997
<독립행정법인 등>				
독립행정법인주택금융지원기구	300	-	-	300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	7,340	-	-	7,340
독립행정법인수자원기구	115	-	-	115
지방공영기업등 금융기구	-	-	4,200	4,200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 금	959	-	-	959
독립행정법인석유천연가스·금속 광물자원자원기구	12	100	-	112
독립행정법인복지의료기구	3,008	-	-	3,008
독립행정법인국립병원기구	335	-	-	335
독립행정법인의료기반연구소	-	12	-	12

III. 해외의 재정투자제도 57

<표 III-6>의 계속

(단위: 억엔)

	재정투자	산업투자	정부 보증	재정투자 합계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163	-	-	163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 센터	624	-	-	624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4,541	-	-	4,541
독립행정법인농업·식품산업지원 총합연구기구	-	14	-	14
독립행정법인삼립총합연구소	63	-	-	63
독립행정법인일본고소도로보유· 채무반제기구	-	-	23830	23,830
독립행정법인류비군도진흥개발 기금	-	3		3
예금보험기구	-	100		100
독립행정법인신에너지·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	-	50		50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	42		42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	1,493	-		1,493
<지방공공단체>				
지방공공단체	32,400			32,400
<특수회사 등>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644	644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185	185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1,072	1,072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594	594
사카가미고속도로주식회사			76	76
관서국제공항주식회사			451	451
중부국제공항주식회사			167	167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	1,580		1700	3,280
합계	93,880	1,040	43,769	138,689

출처: 일본재무성, 『재정투자자 리포트 2008』

- 일본 재정투융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금융기관이나 공단 등의 조직(이하 공공기관)을 통해 자금이 융자된다는 것
  - 조성된 자금은 투융자 대상기관에게 전달
  - 일본도로공단과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여 도로 건설과 같은 생산활동을 하고, 정책은행과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 등에 채용자함
- 재원조성 측면에서의 특징은 조세가 아닌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표 III-7>, <표 III-8>, <표 III-9> 참조)
  - 2008년도 정부가 재정투융자를 위해 발행하는 투융자채권의 예정발매액은 8.4조엔, 투융자채권의 2007년도 말 잔고는 140조엔임
  - 공공기관도 직접 채권(투융자기관채)을 발행하는데, 2008년 26개의 재정투융자 기관이 총 5.2조엔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

<표 III-7> 투융자채권의 잔존기간별 잔고

(단위: 억엔)

잔존기간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1년이하	260,063	159,139	171,881
1년 초과 2년 이하	159,139	171,881	181,088
2년 초과 3년 이상	91,498	112,753	93,278
3년 초과 4년 이상	112,753	93,278	188,968
4년 초과 5년 이상	88,654	178,205	119,589
5년 초과 6년 이상	139,116	105,048	91,391
6년 초과 7년 이상	105,048	91,383	132,180
7년 초과 8년 이상	91,381	132,156	111,157
8년 초과 9년 이상	132,150	111,133	120,181
9년 초과 10년 이상	100,097	96,040	30,995
10년 초과	113,631	138,044	156,835
합 계	1,393,532	1,389,061	1,397,543

출처: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59

- [그림 III-2]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투융자기관채권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줌
- 특별한 경우에, 국채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음

<표 III-8> 투융자채권의 소화방식

(단위: 억엔)

	경과조치				시중 소화	합계
	우편예금 자금	연금자금	간이생명 보험자금	소계		
2005	111,915	36,966	13,484	162,365	119,993	282,358
2006	109,958	31,986	9,992	151,936	103,653	255,589
2007	54,933	15,976	4,998	75,907	91,620	167,527
2008	-	-	-	-	84,800	84,800
2008년 발행예정액						
30년채	-	-	-	-	2,000	2,000
20년채	-	-	-	-	13,000	13,000
10년채	-	-	-	-	25,000	25,000
5년채	-	-	-	-	12,000	12,000
2년채	-	-	-	-	32,000	32,000

출처: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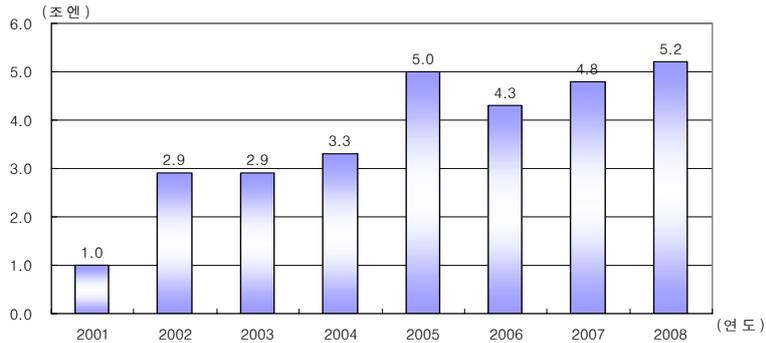
<표 III-9> 투융자채권의 연한별 발행, 상환 및 잔고

(단위: 억엔)

	2006년도 말 잔고	2007년도 중 발행액	2007년도 중 상환액	2007년도 말 잔고
30년채	20,186	2,983		23,169
20년채	100,600	15,808		116,408
15년채 변동이부채	17,258	-		17,258
10년채	686,749	52,089		738,838
10년채	10,039	3,008		13,141
5년채	404,211	25,304	89,503	340,012
2년채	150,019	68,335	69,636	148,718
합계	1,389,061	167,527	159,139	1,397,543

출처: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그림 III-2] 투융자기관채의 규모와 추이



- 민간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융자제도가 존재하지  
만, 이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
  - 일본의 투융자제도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정  
부부채가 과도하게 커지는 단점이 있음
  -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정부의 비효율이 존재: 금융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회수 노력이 부족
  - 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용: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
  - 재정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재정건전화에 방해

#### 나. 재정투융자제도의 개혁

- 일본은 재정투융자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자, 국채부채의 경감 등을 위해 제도개혁을 실시
  - 1998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개혁 이전의 재정투융자는, 우편저축과 연금 적립금 등을 의무  
적으로 예탁하고 이를 재정투융자에 활용

### III. 해외의 재정투자제도 61

- 일본 대장성에 「자금운용부」라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
- 사회자본의 정비 등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정책상의 필요보다는 자금의 운용 자체를 위해 사업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따라서 우편저축과 연금 적립금의 자금예탁 의무가 폐지되고,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 민간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
  - 유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에 적합한 곳만 선별
- 사업 자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투자기관채(정부보증 없이 재정투자를 수행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투자채(정부가 통합하여 발행하는 채권) 등을 이용
- 재정투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보조의 현재가치를 측정
- 정부정책에 수반하는 비용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
  - 한 사업에 어떤 정도의 보조금 등이 투입되고, 사전에 투입된 출자금에 의한 메리트가 어떤 정도가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줌
- 재정보조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미래의 현금흐름(자금 수지) 등에 대해 추계해야 함
  - 사업 타당성의 판단, 사업의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 할인율 등 분석기법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투자기관의 재무의 건전성 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높아짐
  - 채권을 발행할 때 내용을 설명
- 재정투자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민간시장에서 활용되는 재

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민간기업과 통일적인 기준하에서 평가함으로써, 각 기관의 재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

### 3.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EIF(European Investment Fund)

- EIB는 유럽연합이 장기 재정투융자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
  - 특히 EIF는 EIB의 벤처캐피탈을 위한 재원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용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가. 설립개요

- EIB의 활동은 채권발행이나 기타 자본시장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장기투자대출을 하는 유럽연합의 비영리 공공 금융기관
  -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
    - 금융활동을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융합”을 돕는다는 목적
  - 예금수주나 관리, 고객의 금융상담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은행과 업무가 다르며, 공공 보조금 지급사업도 하지 않음
- EIB은 유럽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기관의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 각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제외하면, 유럽연합의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발행 주체 중 하나

### III. 해외의 재정용자제도 63

- 자금조성 비용에 관리 비용을 더하여 대출이자 결정
-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는 1975년부터 줄곧 EIB 채권을 AAA 등급으로 평가
- 한 사업 전체 비용의 50% 이상은 용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IB의 관리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임원회(Board of Directors),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등으로 구성
  - 이사회: 유럽연합 멤버 국가들의 재무부장관으로 구성
  - 임원회: 멤버 국가와 유럽위원회(EC)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
- EIF(European Investment Fund)는 유럽연합과 그 주변국들의 중소기업에게 자금 용자와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된 기금
  - 벤처캐피탈 기금을 이용한 직접투자와 중소기업 신용보증으로 구성
  - 2006년 말 현재 벤처캐피탈 투자와 신용보증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본과 유보금은 총 6억 9,200만유로에 달함<sup>8)</sup>
- EIF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투자기금은 상업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
  - 단순히 정책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올리도록 규정
- 2000년 6월 EIF의 구조변화에 의해 EIB가 EIF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EIF는 EIB의 유일한 벤처지원 자금 역할을 함
  - EIF의 지분: EIB(62%), EC(30%), 유럽연합의 20여개 민간은행(8%)
  - EIB와 EIF를 합쳐 “The EIB Group”이라 부름

8) 이창용,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 발표자료, 2007.

### 나. 용자방식과 특징

- EIB의 대출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구분됨
  -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2,500만유로가 한도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Intermediated Loans 혹은 Global Loans로 불리며, 금융기관이 최종사업자에게 2,500만 유로를 한도로 장기대출하도록 유도 (일종의 전대방식)
- EIB의 용자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 철도·도로·교량 등의 기반시설 건설, 통신관련 기반 시설, 일반 제조업까지 매우 다양
  - 벤처자금 용자의 경우 EIF가 담당
- EIB 용자는 장기의 고정금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만기는 투자대상에 따라 4년에서 20년(혹은 그 이상도 가능)까지 다양
  - 고정금리 수혜자들에게 안정된 금융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
    - 계약시부터 만기때까지 금리가 일정한 일반적 고정금리 이외의 정해진 시점에서 금리를 다시 정하는 대출도 가능
  - 만기, 상환구조 등은 모두 대출시에 계약에 의해 조정
- 2007년 EIB의 대출규모는 3,247억유로에 해당
  - 이 중 최종사업자에게 대출한 것이 61%, 금융기관에 대출한 것이 39% 정도를 차지 (<표 III-10>)
- EIF는 자기자본으로 보증업무와 대출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EIB 자금이나 EC 자금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함
- 이창용(2007)은 유럽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시장왜곡의 최소화를 강조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65

<표 III-10> EIB의 대출현황

(단위: 천유로)

	To intermediary credit institutions	Directly to final beneficiaries	Total 2007	Total 2006
Disbursed portion	111,215,441	155,222,398	266,437,839	254,616,245
Undisbursed loans	12,341,869	41,264,752	53,606,621	53,571,902
Aggregate loans granted	123,557,310	196,487,150	320,044,460	308,188,147
Asset backed securities portfolio			4,708,928	2,722,397
Aggregate loans including asset backed securities portfolio			324,753,388	310,910,544

- EIF의 보증은 직접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증기관을 재보증하는 형태
  - 이러한 다단계 지원의 이유는 개별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각 부문의 전문성 유도,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
-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노림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재정융자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임
  - <표 III-11>은 각국의 재정투융자의 활용사례와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lt;표 III-11&gt; 외국의 재정투융자 활용사례와 규모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정부에 의한 신용제공을 일원적으로 정리	연방신용 계획	-	없음	없음	없음	재정투융자 계획
정부 대출 잔고 (2007회계연도)	169조엔	-	18조엔	12조엔	2조엔	245조엔
융자의 주요 대상부분	민간부문	민간부문	공적부문 (지방자치단체)	공적부문 (주정부, 부흥금융공고)	민간부문	공적부문 (재투기관, 지방자치체)
주요 대상분야	주택, 중소기업, 교육, 지역개발, 농업, 무역	회사자본 중소기업	중소기업, 교육, 무역, 해외원조	주택, 중소기업, 회사자본, 농업	주택, 회사자본, 중소기업, 무역	중소기업, 주택, 회사자본, 농업, 해외원조
주요기관						
주택	GNMA FNMA FDMC 연방주택 대부은행 제도(FHLBS)	-	-	부흥금융 공고 지원은행 (kfw Förderbank)	예금공탁 공고 (CDC)	(독)주택 금융 지원기구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SBA)	유럽투자 은행(EIB), 유럽투자 기금(EIF)	중소기업 비즈니스 (SBS)	부흥금융 공고중견 기업은행	중소기업 개발 은행(BDP ME)	국민생활 금융공고, 중소기업 금융공고
무역·해외 원조	수출입은행 (EXIM)	-	-	수출금융 공고 IPEX은행, 부흥금융 공고 개발은행, 독일투자 개발은행	프랑스개 발청 (AFD)	국제협력 은행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잔고 (2006 회계연도말)	532조엔	42조엔	-	31조엔	13조엔	133조엔
국내비금융부문 부채잔고 (2006 회계연도말)	3,205조엔	-	1,177조엔	980조엔	1,205조엔	3,167조엔

출처: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 III. 해외의 재정융자제도 67

- 구체적인 방식, 대상, 규모 등은 역사적 이유나 금융시장 상황, 정책적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보증 방식이, 일본은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융자를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대차방식이 주로 이용됨
- 채원조달 측면에서도 (준)조세를 이용하는 방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부담금이나 채권의 강제구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
  - 일본의 경우에는 투융자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성
  - 미국이나 영국은 조세를 통해 조성한 자금과 국채로 차입한 자금을 구분하여 사용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융자하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은 30% 정도이지만 영국은 90%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융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정부는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해 조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융자로 취급 가능
    - 이는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 중앙정부가 인수한 지방정부 채무>임과 같은 맥락
-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들 모두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정융자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
  - 재정융자제도가 재정규모의 확대 및 재정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
  - 특별히 국채나 공공기관의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재정융자제도의 확대는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비중을 높여 장기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
-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융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

-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없다면 재정융자제도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
- 각국의 재정융자제도에 대한 관리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으로부터 시작
  - 재정융자제도는 경상수입과 경상지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융자와 보조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일관된 보고서를 작성
  - 특히 재정보조율, 융자의 재정비용의 측정과 발표를 통해, 각 융자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돕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 민간의 금융활동을 위축하지 않고 그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
    - 유럽의 EIF가 대표적인 사례
  - 이는 점차 공공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건전화 문제와도 역시 관련됨

## IV. 재정융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 1. 재정융자의 현황

#### 가. 재정융자제도의 발전과정

- 자금지원 정책수단은 정책금융 ⇒ 재정투융자 ⇒ 재정융자로 발전
  - 이러한 자금지원은 목표선정 - 대상선정 - 지원방법개발(융자와 직접지원)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지원과정은 지원조건 - 사후관리 - 미수(손실)처리 - 성과분석으로 이루어짐
- 시대에 따라 재정(투)융자를 위한 재정자금 조달 및 대상사업의 변천을 거듭함.<sup>9)</sup>
  - 최근까지 재정(투)융자에 소요되는 자금 및 지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음
  - 2007년 공공지금관리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통합된 공공지금관리기금이 운영되기 이전까지 재정(투)융자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발전과정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재정투융자제도의 형성(1953~61년)
    -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1962년~73년)
    - 경제개발특별회계(1974~76년)
    - 자금관리특별회계(1977~87년)
    - 재정투융자특별회계(1988~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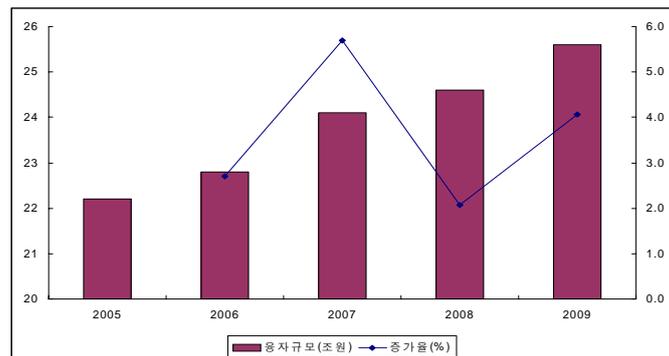
9) 1990년대까지의 재정융자제도의 발전과정은 고영선·신인석(2000)에서 일부 발췌·정리하였음

- 재정용자특별회계(1997~2007년)
- 공공자금관리기금(2007~현재)

#### 나. 규모

- (규모) '09년도 예산 기준 재정용자 규모는 25.6조원 수준임
  - '07년말 기준 용자자산 잔액(stock)은 113.1조원으로 5대 시중은행 자산평균(160조원)의 70% 수준
  - '08년도 재정용자(flow) 규모는 24.6조원 수준
- (증가율) 재정용자 규모(flow)는 최근 5년간 평균 3.6% 증가

[그림 IV-1] 용자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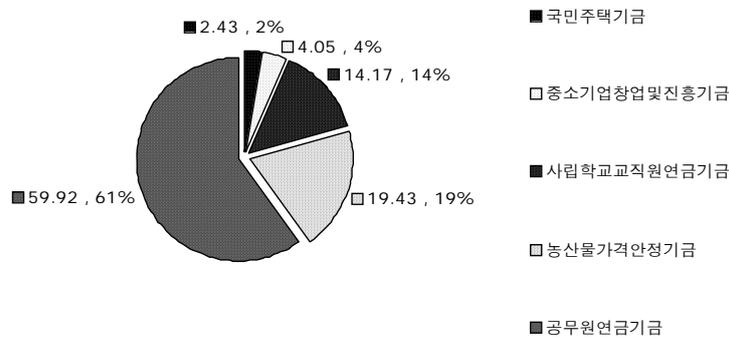
- (사업 수) '08년 15개 부처에서 174개 재정용자사업 시행하였고, '09년 187개 재정용자사업을 시행
- (재원) 34개 회계·기금에서 용자사업 지원('09년 flow기준)<sup>10)</sup>
  -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용자 사업은 47.4조원으로 총액 대비 49%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용자 사업은 16.7조원, 총액 대비 17%

10) 특별회계와 기금의 flow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기준에 따른 비중과 차이가 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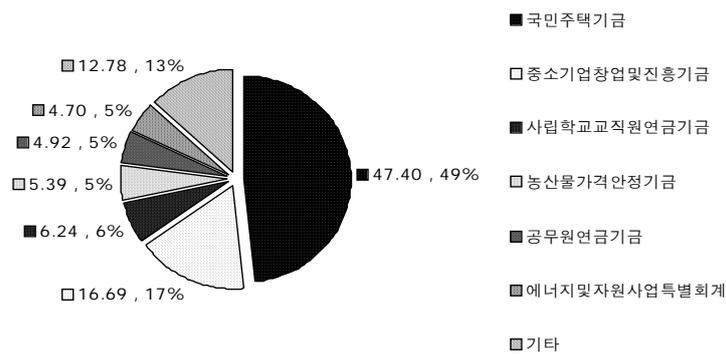
####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7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재정용자 사업은 6.2조원으로 총액 대비 6% 규모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재정용자의 경우 총액 대비 5% 규모임
- 기타 재정용자 사업의 규모 및 비중은 12.8조원, 13%임

[그림 IV-2] 자원별 재정용자 비중(2008)



[그림 IV-3] 자원별 용자규모(2009)



### 다. 주요 부문별 현황

#### 1) 주택(국민주택기금)부문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용자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재원의 사용처는 출자, 용자, 그리고 기금운영비로 구분

<표 IV-1> 국민주택기금 용자금 세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417,500	411,561	429,333	452,968	498,313	550,262	595,675
○ 임대주택 건설	175,929	202,564	221,162	238,448	250,722	268,653	288,679
- 국민임대	14,228	25,772	40,343	60,723	84,123	115,393	147,115
- 공공임대	158,815	174,399	179,177	176,321	165,427	152,632	141,148
- 임대중도금	2,886	2,393	1,642	1,404	1,172	628	416
○ 분양주택 건설	136,277	109,737	96,392	99,251	102,310	103,768	107,971
- 공공분양	136,277	109,737	96,392	97,154	94,517	92,932	94,160
(입주자알분양)	(117,887)	(97,311)	(84,903)	(82,069)	(79,786)	(81,561)	(85,596)
- 후분양	-	-	-	2,097	7,793	10,836	13,811
○ 수요자용자지원	74,531	66,928	82,343	91,326	123,436	156,530	177,362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4,585	8,241	11,248	10,807	11,364	14,143	17,291
- 근로자·서민주택전세	15,714	14,289	18,859	20,246	24,512	31,441	43,521
- 전세금반환자금	131	23	15	143	267	192	142
- 근로자·서민주택구입	50,407	32,323	23,248	32,505	52,444	55,305	66,207
- 최초주택구입	3,423	11,535	27,777	25,763	32,084	50,956	46,252
- 매입임대주택자금	271	517	1,196	1,856	2,717	3,191	2,939
- 개발이주자전세	0	0	0	6	48	1,302	1,010
○ 주택개발사업	19,379	19,465	19,129	18,533	18,613	18,701	18,638
- 주거환경개선	4,453	4,992	4,870	4,684	4,766	5,012	4,805
- 농촌주택	14,926	14,473	14,259	13,849	13,847	13,689	13,833
○ 기타사업	11,384	12,867	10,367	5,410	3,232	2,610	3,025
- 대지조성자금	10,500	11,890	9,414	4,570	2,500	2,000	2,500
- 부도사업장정상화	862	956	953	840	732	610	525
- 표준화자재 등	22	21	0	0	0	0	0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73

<표 IV-2> 국민주택기금 용자자금별 지원조건

(단위: 백만원, %)

구분	용자대상	용자 한도액 (호당)	금리(연)	상환방법
-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주택 소유자 및 이외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15~40	3.0	1(3)년거치 19(17)년상환 (다가구 : 1년일시) <sup>1)</sup>
- 농어촌주택 개량	농촌주택 개량자	40	3.0	5년거치 15년상환
- 매입임대	매입임대사업자	60	5.0	5년 일시상환
- 대지조성자금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	5.0	국토부장관 별도 지정
- 공공분양 · 60㎡이하 · 60~75㎡	주택건설사업자(공공기 관 및 민간사업자) * 민간은 60㎡이하만 가능	55 75	5.0 [5.2] 6.0 [5.2]	3년 일시상환 [(13)년거치19 (17)년상환]
- 후분양자금 · 60㎡이하 · 60~85㎡	후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60 80	4.5 [5.2] 5.5 [5.2]	3년 일시상환 [(13)년거치19 (17)년 상환]
- 도시재정비	지자체	-	-	-

주: 1) 아파트·연립주택은 분양 및 임대자금 기준  
 2)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대출조건  
 3) 보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pp. 52~56 참조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용자사업 현황

<표 IV-3>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 용자추이

(단위: 억원)

사업별	'06결산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율(%)
계	17,745	13,860	15,380	1,520	11.0
주거환경개선	108	100	100	-	-
농어촌주택개량	1,260	1,260	1,080	△180	△14.3
매입임대	718	1,000	700	△300	△30.0
대지조성자금	1,000	500	500	-	-
공공분양	7,855	3,000	3,000	-	-
후분양	6,804	8,000	10,000	2,000	25.0
집행률(B/A)	100	100	99.9	99.9	100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 주택구입자금 용자사업 현황

- 무주택 근로자·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1조 9,000억원

&lt;표 IV-4&gt; 주택구입자금

(단위: 백만원)

사업별	'06결산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율(%)
근로자·서민주택구입	37,098	20,400	19,000	△1,400	△6.9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 전세자금 용자사업 현황

- 저소득층(소년소녀가정 포함) 전세자금 지원 1조 700억원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무주택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 대한 전세자금 1조 9,952억원

&lt;표 IV-5&gt; 전세자금의 용자추이

(단위: 억원)

사업별	'06결산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율(%)
계	22,194	33,650	30,652	△2,998	△8.9
저소득가구전세	5,587	11,150	10,700	△450	△4.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15,348	22,500	19,952	△2,548	△11.3
개발이주자전세	1,259	-	-	-	-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75

□ 국민임대주택건설 용자사업 현황

- 국민임대 100만호('03~'12)중 '08년 계획물량 10만호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용자금 3조 4,218억원

<표 IV-6> 국민임대주택건설 용자추이

(단위: 억원)

사업별	'06결산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	32,004	34,322	34,218	△104	△0.3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공공임대주택건설 용자사업 현황

- 장기임대 비축 및 기존사업에 대한 용자금 1조 5,375억원

<표 IV-7> 공공임대주택건설 용자추이

(단위: 억원)

사업별	'06결산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율(%)
공공임대주택건설	8,362	13,955	15,375	1,420	10.2

자료: 국토해양부(2008),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 중소기업부문

-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는 '97년 1.7조원에서 '99년 3.0조원으로 76.5% 증액하여 중소기업 자금애로에 대응. 2000년 이후 정책 자금 공급은 연평균 2.7% 수준임.

- 정책자금 잔액(조원) : ('97) 5.9 → ('99) 7.5(27%↑)
- 정책자금 잔액(조원) : ('00) 6.1 → ('07) 12.2(100%↑)

- 정책자금(잔액)이 은행 중기대출 대비 비중도 '97년 5.9%에서 '99년 7.5%로 증가('07년 3.3%)
- 정책자금(공급) 비중(%) : ('97) 3.0 → ('99) 3.8% / 참고, '07 0.75%

&lt;표 IV-8&gt;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은행중기 대출 (잔액)	57.3	59.4	78.9	130.2	165.5	202.9	237.9	245.2	258.0	303.3	371.7	
순증 (조원)		2.1	19.5	51.3	35.3	37.4	35.0	7.3	11.8	45.3	68.4	
증가율 (%)		3.7	32.8	65.2	27.1	22.6	17.2	3.1	4.8	17.6	22.6	
정책 자금	잔 액	3.4	4.5	5.9	6.1	6.2	7.9	8.4	9.5	10.7	11.6	12.2
	공 급	1.7	2.2	3.0	2.2	2.7	2.6	2.7	2.7	3.2	2.8	2.8
정책자금 비중(%)	5.9	7.6	7.5	4.7	3.7	3.9	3.5	3.9	4.1	3.8	3.3	
명목 GDP	491	484	529	579	622	684	725	779	811	848	901	
중소제조 GDP	201	197	228	268	282	317	340	383	419	447	-	

주: 1. '99년 이전에는 특수은행(산은, 수은 등) 중기대출 제외 수치  
 2. '09년 정책자금 공급규모 : 4조원 ('08 중기 대출 잔액의 0.9%)

IV. 재정융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77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지원조건

<표 IV-9>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지원 조건

(2008. 3월말 기준)

사 업 명	규모 (억원)	지원 한도 (억원)	금리 (기준)	대출기간 (상환/거치)	지 원 내 역		
○중소벤처 창업자금	6,400	20	공자기금 대출금리 △0.53%p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업력 5년미만)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200	10		8년/3년	설비 및 운전자금		
경영 혁신 자금	시설 개선	7,904		30	8년/3년	시설자금 (일부운전자금) (업력 5년 이상)	
	지식 서비스	1,000		10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기업간 협력	2,527		소요액의 80~100 %	10년/5년	시설 및 운전자금	
	소 계	11,431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원부자 재구입	1,750		5	3년/1년	원부자재 구입자금	
	재해 복구	500		10	공자기금 △1.23%p	3년/1년	재해복구 운전자금
	수출 금융	663		10	공자기금 △0.53%p	1년이내	수출품 생산자금
	소 계	2,913					
구조 조정 자금	회생 특례	200	10	공자기금 △2.27%p	3년/1년	기업 경영정상화지원	
	사업 전환	1,100	30	공자기금 △0.53%p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무역 조정	300	30		8년/5년	시설 및 운전자금	
	소 계	1,600					
○ 소상공인 지원자금	2,400	0.5	공자기금 +0.12%p	5년/1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400	50	채권금리 연동	5년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연2회)		
합 계	26,344						

주: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며, 업체의 신용  
등급별 차등적용

## 3) 농업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

가) 농지관리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lt;표 IV-10&gt; 영농규모화사업의 용자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312,060	309,212	476,941	434,146	340,000	320,500
집 행(B)	312,060	309,212	476,937	434,112	340,000	-
집행률(B/A)	100	100	99.9	99.9	100	-

주: 1. 비중('08년기준): 기금 12,504억원 중 용자 3,205억원(비중 25.6%)

2. 재정보조율 관련: 영농규모화사업('08예산 : 3,205억원) : 용자 100%

□ 농지관리기금 지원조건 및 현황

&lt;표 IV-11&gt;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한국농촌공사)

(단위: 억원)

대상자금		'08. 6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대출 금리	지원조건
규모화 자금	농지매매 자금	19,037	2,390	2%	15~30년 균분상환
	농지임대차 자금	5,238	796	-	5~10년 균분상환
	농지교환 분합자금	160	19	2%	10년 균분상환
	농지구입 자금 <sup>1)</sup>	316			
	합 계	24,751	3,205		
경영안정 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974	1,195	2)	3)
	합 계	1,974	1,195		
총 계		26,725	4,400		

주: 1) 농지구입자금은 '93년까지 지원

2) 금리방식이 아닌 농지매도가의 1%범위내 임차료 납부방식

3) 매각농지 임대(5~8년)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79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표 IV-12> 농안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월말
계획(A)	1,751,337	1,581,549	1,436,760	1,396,630	1,394,184	1,468,806
집행(B)	1,693,762	1,504,275	1,381,519	1,388,706	1,375,620	1,276,247
집행률 (B/A)	97	95	96	99	99	87

주: 1. 2008년 6월 현재 용자잔액 3,141,087백만원

2. 비중('08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 기금 2조 1,468억원 중 용자 1조4,689  
억원 (비중 68%)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조건 및 현황

<표 IV-13>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억원)

대상자금	'08.11 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대출금리	지원조건 (거치/상환)
산지유통 활성화	11,053	5,832	- 산지유통활성: 1~3% - 원예브랜드 : 3%	- 산지유통활성: -/1~3 - 원예브랜드 : -/5
소비자유통 활성화	1,803	1,778	- 소비자유통활성: 3~4%	- 소비자유통활성: -/1~3
농산물유통 개선	1,509	581	- 시설현대화 : 3~4% - 친환경소비지 : 3% - 저온유통체계 : 3%	- 시설현대화 : 3/7 - 친환경소비지 : -/5 - 저온유통체계 : 3/7
민간가격 안정지원	11,393	2,475	- 수매지원 : 3~4% - 채소수급 : 무이자 - 동절기수급: 1.5%	- 수매지원 : -/1~5 - 채소수급: 10/거치기 간내 - 동절기수급: 3/7
인삼산업 지원	1,930	522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 무이자 * 수매자금 : 3%	5년거치/거치기간내
농산물 수출촉진	3,292	3,500	- 운영활성화 : 4% (농업인 : 3%)	- 운영활성화 : -/1
계	30,980	14,688	-	-

- 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FTA)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표 IV-14> FTA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획(A)	63,885	55,552	59,980	47,066	179,417	182,076
집행(B)	39,213	52,597	59,465	47,066	-	-
집행률(B/A)	61.4	94.7	99.1	100.0	-	-

주: 1. '07년 현재 용자잔액: 146,735백만원

2. 비중('08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 기금 5,162억원 중 용자 1,794억원(비중 34.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원조건 및 현황

<표 IV-15>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백만원)

구분	'08. 6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대여	대출	거치 기간	상환 기간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55,889	23,405	1.5	3.0	5	5
과수우량묘목생산	1,444	1,082	1.5	3.0	5	5
과원규모화	126,452	35,175				
- 매매	105,287	29,400	2.0	2.0	-	15~30
- 임대차	21,165	5,775	무이자	무이자	-	5~10
고당도과실 생산지원	-	1,395	1.5	3.0	5	5
시설원예품질개선	-	39,180	1.5	3.0	3	7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	1,984	2.9	3.0	5	5
축사시설현대화	-	77,196	1.5	3.0	5	10
계	183,785	179,417				

4) 수산업 (수산발전기금)

□ 수산발전기금 규모 및 추이

<표 IV-16> 수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386,926	504,313	451,622	449,909	406,629	483,119
집 행(B)	344,069	468,250	375,639	405,375	362,918	-
집행률(B/A)	89	93	83	90	89	

주: 1. 규모 : ('07년 용자잔액) 1,680,471백만원  
 2. 비중('08년기준) : 기금 9,857억원 중 용자 4,831억원(비중 49%)

□ 수산발전기금 지원조건 및 현황

<표 IV-17>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억원, %)

대상자금	'08. 6월말	'08년도	대출금리	용자조건(거치/상환)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348	150	3.0	2년/3년
양식어업지원자금	264	133	3.0~4.0	해면 : 3년/7년 내수면 : 3년/10년 양식기자재 : - /2년 폐각처리 : 2년/3년
어망생산운영및어구 제작비지원자금	12	7	3.0~4.0	어망 : - /1년 어구 : 2년/3년
어선기관및장비개량자금	22	6	3.0	1년/4년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	561	157	3.0	5년/10년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자금	266	24	4.0	5년/10년
어업인정책보험지원자금	100	100	4.0	2년/3년
어업질서확립자금	49		3.0	2년/3년

&lt;표 IV-17&gt;의 계속

(단위: 억원, %)

대상자금	'08. 6월말	'08년도	대출금리	용자조건(거치/상환)
관리회사제도도입자금	-	50	3.0	운영자금 : - /2년 시설자금 : 5년/10년
원양어선설비현대화자금	-	10	3.0	5년/5년
순환여과식양식시설 지원자금	-	7	3.0	3년/10년
수 산 발 전 기 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1,461	1,340	3.0~4.0	- / 1년 (어가공동 - /2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1,270	1,366	2.0~4.0	- / 1년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자금	871	257	3.0~4.0	가공업체 : - /2년 노후시설 : 3년/7년 단지조성 : 5년/10년
감친항공영수산물도 매시장건설자금	248	61	3.0	3년/7년
산지및소비자유통개 선지원자금	1,154	1,209	3.0~4.0	- / 1년
총 계	6,626	4,877		

## 5) 축산업(축산발전기금)

□ 수산발전기금 규모 및 추이

&lt;표 IV-18&gt; 축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386,926	504,313	451,622	449,909	406,629	483,119
집 행(B)	344,069	468,250	375,639	405,375	362,918	-
집행률(B/A)	89	93	83	90	89	

주: 1. 규모 : (07년 용자잔액) 1,680,471백만원

2. 비중('08년기준) : 기금 9,857억원 중 용자 4,831억원(비중 49%)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83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원조건 및 현황

<표 IV-19>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08.6월말 대여액	'08년도 예산	대출 금리	지원조건
중축시설현대화	-	8,492	3.0	5년거치 10년상환
마필육성사업	153	7,636	3.0	3년거치 7년상환
축산물도축가공 업체지원	68,924	157,941	0.0~4.0	1년거치 10년상환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131,490	180,200	0.0~4.0	3년거치 7년상환
사료산업종합지원	80,923	83,900	3.0~4.0	3년거치 7년상환
낙농체험관광	-	400	0.0	3년거치 7년상환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	2,000	3.0	3년거치 5년상환
가축밧계란수송 차량지원	-	3,250	3.0	2년거치 3년상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031	6,900	3.0	3년거치 7년상환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400	400	3.0	5년거치 10년상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24,750	32,000	2.0	3년거치 일시상환
합 계	308,671	483,119		

2. 재정용자의 유형

□ 재정용자의 유형별 분류는 용자사업별 차별화와 목적달성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됨

- 재정용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진흥과 보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지원분야와 지원조건이 차이가 발생함

&lt;표 IV-20&gt; 출자계정별 재정용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및 기금명	2008년		09년 수정안	09년 국회확정
	당초	수정 (9.26일기준)		
재정용자사업(187개) 합계	49,751,609	50,419,361	52,762,408	51,630,300
① 특별회계사업(25개) 소계	3,024,827	3,124,747	3,066,620	2,700,752
② 기금사업(162개) 소계	46,614,173	47,182,005	49,602,788	48,834,54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9,148	319,108	340,620	161,68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36,961	1,186,961	1,146,190	1,141,190
환경개선특별회계	112,609	112,609	93,000	95,000
공공자금관리기금	1,223,545	1,223,545	997,621	997,621
대외경제협력기금	350,000	350,000	350,000	35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15,000	15,00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지급기금	1,717,558	1,717,558	1,591,418	1,591,418
사학진흥기금	130,000	130,000	167,100	167,100
군인복지기금	104,340	104,340	143,455	143,455
남북협력기금	508,919	508,919	528,950	176,950
공무원연금지급기금	1,190,965	1,190,965	1,254,334	1,254,334
관광진흥개발기금	213,159	213,159	238,450	238,450
국민체육진흥기금	19,285	19,285	16,692	16,692
신문발전기금	7,000	7,000	4,000	4,000
영화발전기금	6,000	6,000	5,000	4,000
지역신문발전기금	5,000	5,000	3,000	3,000
방송발전기금	16,000	16,000	20,500	19,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68,806	1,453,806	1,398,756	1,373,284
농지관리기금	440,000	440,000	418,235	417,23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79,417	179,417	182,076	155,413
축산발전기금	483,119	483,119	365,421	365,421
수산발전기금	487,713	491,143	490,405	490,405
전력산업기반기금	185,576	230,000	103,130	98,030
정보통신진흥기금	143,000	143,000	70,000	70,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000	5,000	2,900	2,900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902,400	3,153,000	4,035,500	4,255,500
응급의료기금	7,000	7,000	6,170	6,170
청소년육성기금	2,000	2,000	1,000	1,000
고용보험기금	132,227	132,227	175,253	172,653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00	61,900	104,560	104,56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0,415	130,877	122,294	122,29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7,100	17,100	12,500	12,500
국민주택기금	11,462,536	11,462,536	12,272,825	12,083,540
보훈기금	23,553	23,553	22,323	22,323

가. 지원분야별 유형<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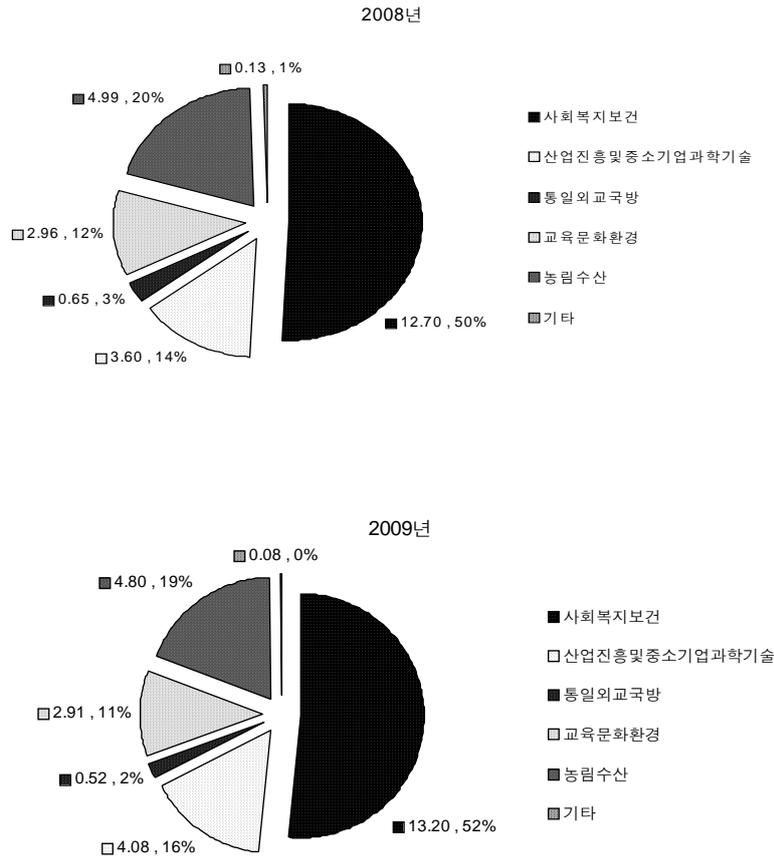
- (분야 유형) 크게 5개 분야에 재정용자 지원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부문 구분, 수혜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
    - ① 통일·외교·국방, ② 농림수산, ③ 사회복지·보건, ④ 교육·문화·환경 ⑤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 (분야별 비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주택 포함)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농림수산 분야 순임
- (분야별 비중 증감)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산업진흥·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는 증가추세인 데 반해 통일·외교·국방, 그리고 농림수산 분야는 감소추세임

<표 IV-21> 재정용자 지원분야별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사회복지·보건	A	교육훈련및관련시설	1
		창업지원	2
		의료및관련시설	3
		복지및보훈관련용자	4
		주택	5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과학기술	B	중소기업및산업	1
	B	기술개발	2
	B	유통및산업단지	3
통일·외교·국방	C		1
교육·문화·환경	D	에너지·환경및문화(관광)관련SOC	1
	D	교육및문화(관광스포츠)관련용자	2
농림·수산	E	농림경영및산업,기반시설	1
	E	축산경영및산업,기반시설	2
	E	수산경영및산업,기반시설	3
	E	농림수산(통합)유통및관련시설	4
	E	재해대책	5
기타	F		1

11) 분야별 재정용자의 대분류, 소분류, 세부사업 구분은 표준적인 분류방식의 부재로 2008~2009년도 재정용자 재원별 항목(2009년 187개 사업)을 저자가 직접 유형을 분류한 것임

[그림 IV-4] 분야별 재정용자 비중(2008~2009)



1) 사회복지·보건

- 교육훈련 및 관련시설, 취약계층 창업지원, 의료 및 관련시설, 주택의 재정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 및 보훈 관련 용자 금액과 비중이 증가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87

<표 IV-22> 사회복지·보건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분야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1	교육훈련 및 관련시설	741,867	734,142	2.97	2.87
2	취약계층 창업지원	353,841	208,859	1.42	0.82
3	의료 및 관련시설	114,149	79,789	0.46	0.31
4	복지 및 보훈 관련 용자	4,006,652	5,119,909	16.02	20.01
5	주택	7,491,028	7,049,145	29.96	27.55
A	계	12,707,537	13,191,844	50.82	51.56

2)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 유통 및 산업단지 분야를 제외한 중소기업 및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용자의 금액 및 비중 확대

<표 IV-23>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분야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1	중소기업 및 산업	2,283,795	2,651,304	9.13	10.36
2	기술개발	1,198,228	1,388,900	4.79	5.43
3	유통및산업단지	76,991	41,800	0.31	0.16
B	계	3,559,014	4,082,004	14.23	15.95

3) 농림수산

- 농림수산 분야는 2008년 대비 대규모 증감은 없지만, 통합유통 및 관련시설의 증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다소 감소하였음

&lt;표 IV-24&gt; 농림수산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분야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1	농림경영 및 산업 및 기반시설	1,836,228	1,856,178	7.34	7.25
2	축산 경영 및 산업 및 기반시설	635,038	498,033	2.54	1.95
3	수산 경영 및 산업 및 기반시설	1,017,468	945,305	4.07	3.69
4	농림수산(통합)유 통 및 관련시설	1,398,219	1,465,881	5.59	5.73
5	재해대책	104,733	38,768	0.42	0.15
E	계	4,991,686	4,804,165	19.96	18.78

## 4) 교육·문화·환경

- 교육·문화·환경 분야(대분류)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 에너지·환경 및 문화 관련 SOC 분야와 교육 및 문화 관련 용자 금액과 비중은 감소하였음

&lt;표 IV-25&gt; 교육·문화·환경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분야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1	에너지·환경 및 문화 (관광)관련SOC	418,449	387,338	1.67	1.51
2	교육 및 문화 (관광·스포츠)관련 용자	2,549,008	2,521,452	10.19	9.85
D	계	2,967,457	2,908,790	11.87	11.37

나. 용자사업별 주관기관

1) 기금

- 각 용자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관을 둬, 이에 용자 자금을 관리하는 공단, 공사, 협회 등을 설립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은행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간의 관리비용은 절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통해 집행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동단,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항공우주협회 등을 두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두고 있음
  -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두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주무부처별 취급기관<sup>12)</sup>

<표 IV-26> 기획재정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립대병원지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환경개선자금 저소득층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산업기술자금 농공단지진흥자금 선대구조개선자금 복합화물터미널건설자금 화물자동차차고지건설 초고속공중망구축용자 IT실비투자확대자금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외환은행 등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농협, 국민은행 농협,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대외경제 협력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 은행 경제 협력본부(위탁관리)	대개도국차관	한국수출입은행

<표 IV-27> 지식경제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전력산업 기반기금	-지식경제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위탁관리)	전력수요관리용자 전원개발용자 농어촌전기공급용자 신재생에너지보급 용자 농어촌용자채권인수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은행) 산업은행 에너지관리공단 -
정보통신 진흥기금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관리단(위탁관리)	IT신성장동력육성	기업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한국정밀화학산업진 흥회	기술개발자금 시설대체자금	기업, 국민, 수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부산 은행

12) 부처별 현황은 이원희(2008)에서 재인용하였음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91

<표 IV-28>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과학기술 진흥기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위탁 관리)	연구개발용자지원 민항기국제공동개발용자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기관 한국항공우주진 흥협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학자금대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용자 사립대학기숙사 현대화 자금용자 사학시설 민자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

<표 IV-29> 행정안전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공무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대여학자금대부 공무원연금대부	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지식경제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표 IV-30>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지원	산업은행 및 13개 시중은행 산업은행 및 13개 시중은행
국민체육 진흥기금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산업용자 기금조성사업용자	시중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신문발전 기금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위탁관리)	구조개선및신규사 업지원 시설도입및정보화 지원	대구은행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유통환경개선용자	우리은행
지역신문발 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경영여건개선자금 용자	부산,대구,광주은행

<표 IV-31> 국방부

구분	관리운영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학자금대부 기타일반대부 군간부전세대부	농협 직접대부 직접대부

<표 IV-32> 국토해양부

구분	관리운영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국토해양부 -우리,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위탁관리)	주거환경개선 농촌주택개량 매입임대 대지조성자금 공공분양 후분양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저소득가구전세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	수탁은행

<표 IV-33> 노동부

구분	관리 운영 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고용보험 기금	노동부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능력개발시설·장비비 대부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고령자고용촉진시설등용자 장애인고용환경개선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자금대부 체불생계비대부 복지시설용자사업 실직여성가장점포지원 장기실업자점포지원 관광창업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93

<표 IV-33>의 계속

구분	관리 운영 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산업재해 보상보험및 예방기금	노동부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창업점포지원 요양비대부 산재예방시설용자 교육정보센터입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 촉진및 직업재활기금	노동부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용자 장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자영업창업용자 자영업전대용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표 IV-34> 농림수산물식품부

구분	관리 운영 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관리)	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 친환경농산물소비자유통 활성화 산지유통활성화 원예브랜드육성 소비자유통활성화 운영활성화지원 수매지원 채소수급안정 과실수급안정 동절기수급안정 인삼계열화지원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립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지관리 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농촌 공사 기금 관리처 (위탁관리)	영농규모화사업	한국농촌공사

<표 IV-34>의 계속

구분	관리·운영 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수산발전 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 기금사무국 (위탁관리)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산자금 양식어업지원 어망생산운영및 어구제작비지원 어선기관및장비개량 어업인후계자육성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어업질서확립자금 관리회사제도도입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및운영지원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관리)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실가공품품질향상 과원규모화 고당도과실생산지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축산발전 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농협중앙 회 축산 발전기금 사무국	종축시설현대화 돼지경제능력검정 마필육성사업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및계란수송차량지원 낙농체험관광사업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송아지생산기지조성 기타	농협중앙회 등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95

<표 IV-35> 보건복지가족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시설확충용자지원	농협중앙회
청소년육성기금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시설용자지원	우리은행

<표 IV-36> 여성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여성발전기금	여성부	여성가장창업자금대출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 여성기술인창업자금대출	-

<표 IV-37> 통일부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위탁기관)	인도적지원 경협대출 교역대출 경협기반조성 개성공단지원 경수로사업	한국수출입은행

<표 IV-38> 국가보훈처

구분	관리운용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표 IV-39>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관리운영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위탁관리)	프로그램제작비용자 디지털방송전환용자	우리, 신한, 기업은행 우리, 신한, 기업은행

<표 IV-40> 중소기업청

구분	관리운영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창업지원 구조조정지원 경영안정지원 경영혁신지원 기업간협력지원 자산유동화 개발기술사업화지원 소상공인지원 산업기반지원	중진공 및 금융기관 중진공 및 금융기관 중진공 및 금융기관 중진공 및 금융기관 중진공 및 금융기관 - 중진공 금융기관 중진공 및 금융기관

2) 특별회계

<표 IV-41> 지식경제부

구분	관리운영 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에너지및자원 사업 특별회계	한국석유 공사	에너지 및 자원정책 에너지 안전 국내외자원개발 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 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 공단

<표 IV-42> 농림수산식품부

구분	관리운영주체	용자사업명	용자취급기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 리단 (위탁관리)	재해대책용자금 미곡종합처리장운영 화훼공관장경매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주택개량 후계농업인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수·산림조합중 양회

다. 용자조건

통일성·일관성 있는 용자기준 없이 소관부처별로 용자조건(금리·대출기간 등)을 제각각 결정(분산형 관리체계)

1) 금리

(금리결정방식) 용자사업 소관부처가 자체적 필요에 따라 금리수준을 결정

○ 회계·기금별로 재정부 협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

\* 각 부처는 결정된 금리를 고시·훈령 등의 형태로 공지·시행

(금리유형) 회계·기금별로 관행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임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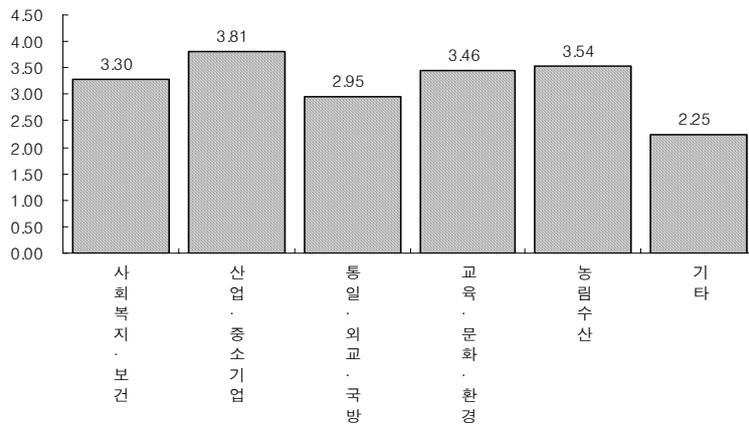
○ 논리적·정책적 판단보다는 관행적·편의적 사유로 금리유형을 선택

\* 5대 시중은행은 조달금리 유형을 감안하여 대출금리 유형 결정

(분야별 금리수준) 용자사업 소관부처가 금리수준을 각각 결정함에 따라 분야별 금리수준도 다양각색

- 통일·외교·국방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금리가 낮고,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는 금리가 높음(평균금리)<sup>13)</sup>

[그림 IV-5] 분야별 금리수준(평균금리)



-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의 근로학자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학학자금 등은 대출금리가 1.0~3.0%인 데 비해, 군인복지기금의 학자금대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국고학자금은 무이자로 지급
  -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와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은 확정금리로 산정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각 부처별·회계별로 융자의 조건이나 절차가 나뉘어져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sup>14)</sup>

13) 평균금리는 2009년 3월 25일 현재 「재정융자현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재정보조율계산을 개괄하는 과정에서에서 기술하도록 함

IV. 재정용자 현황분석과 재정보조율 99

□ 2009년 현재 회계별 재정용자사업의 금리 조건

○ 특별회계사업(25개)

<표 IV-4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용자 금리조건

	세부사업	대출금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RPC경영개선	0~2
	친일업산업육성지원	3
	현장애로기술과제시범	3.0
	축산분뇨처리시설	3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3
	화훼공판장경매시설	3
	농업종합자금	3
	재해대책비	1.5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3
	산림재해복구지원	1.5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비용자	4
	농어촌주택개량	3
	산림사업종합자금	1.5 ~ 4.0

<표 IV-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재정용자 금리조건

	세부사업	대출금리
에너지 및자원 사업특 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
	가스안전관리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
	해외자원개발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2.25%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1.25%
	도시가스공급배관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수익률

14)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처별·회계별 금리현황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회계별 금리 현황만을 파악함

&lt;표 IV-45&gt; 환경개선특별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재활용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28~4.69 ('08년기준)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확충	4.28~4.69 ('08년기준)
	천연가스자동차보급기타민간융자금	변동금리

## ○ 주요 기금사업

&lt;표 IV-46&gt;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부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IT설비투자확대지원	분기별변동금리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분기별변동금리
	산업기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농공단지진흥	분기별변동금리
	농축산경영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선대구조개선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영어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장애인자립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저소득층생업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제주대병원이전신축	분기별변동금리
	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양산부산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칠곡경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진남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전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	무이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분기별변동금리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분기별변동금리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분기별변동금리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분기별변동금리	

<표 IV-47> 고용보험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세부사업	대출금리(%)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지원	무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4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3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1~1.5
	능력개발시설장비대부	1~4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1~3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	3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	3

<표 IV-48> 국민주택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
	대지조성자금	5
	공공분양	5.0~6.0
	후분양주택	4.5~5.5
	매입임대	5.0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
	농어촌주택개량	3.0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5.2
	주거환경개선	3.0
	국민임대	3.0
공공임대	3.0~4.0	

<표 IV-49>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실직여성가장점포지원	4.5
	장기실업자점포지원	4.5
	생활안정자금대부	3.4
	채불생계비대부	3.4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3.4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2.4

&lt;표 IV-50&gt;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식품소비산지상생협력	3~4
	운영활성화지원	3~4
	친환경농산물소비유통활성화	3
	농산물브랜드육성	3
	인삼계열화지원	0~3
	한식세계화지원	4
	산지유통활성화지원	1~4
	소비유통활성화지원	3~4
	전통발효식품육성	3
	수매지원	3~4
	농식품시설현대화	3~4
	저온유통체계구축	3
	채소수급안정	0
	동절기수급안정	1.5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4
생산자용복합형식품제조기업육성	3	

&lt;표 IV-51&gt; 농지관리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농지관리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0 이내
	농지임대차사업	무이자
	농지교환분합사업	2
	해외농업개발사업('09 신규용자)	1.5
	농지매매사업	2

&lt;표 IV-52&gt;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창업점포지원	2.0
	안전교육정보센터임차	무상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	무상
	안전공단청사임차보증금등용자	무상
	대학학자금용자	1.0~3.0
	요양비대부사업	0.6/2.6
	생활안정자금용자	3.0
	산재예방시설용자	3.0

<표 IV-53> 수산발전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수산발전기금	우수수산물지원	2~4
	산지및소비자유통자금지원	3~4
	수산물수매지원	3~4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3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	3~4
	어선기관및장비개발	3
	어업인정책보험지원	4
	원양어선설비현대화	3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3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4
	양식어업지원	3~4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3
	어업인후계자육성	3~4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3
가공시설및운영지원	3~4	

<표 IV-5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자산유동화지원	채권금리연동
	소상공인지원	분기별공자금리-0.33%p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	분기별공자금리-0.33%p
	긴급경영안정	분기별공자금리-0.33%p
	창업활성화	분기별공자금리-0.70%p
	개발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금리-0.70%p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분기별공자금리-0.33%p
	사업전환	분기별공자금리-0.70%p
	신성장기반	분기별공자금리-0.33%p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분기별공자금리-0.33%p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금리-0.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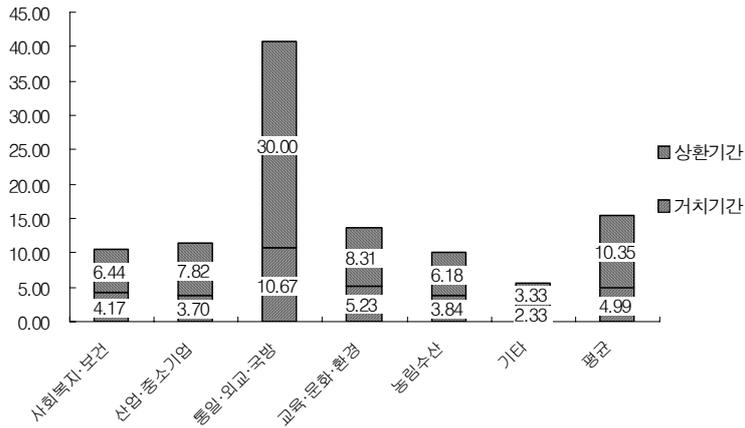
&lt;표 IV-55&gt; 축산발전기금 재정용자 금리조건

회계	세부사업	대출금리(%)	
축산발전기금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브랜드경영체운영지원 3.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3.0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3.0	
	마필육성사업	농업인 3.0, 일반인 4.0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3.0, 일반업체 4.0
			가축계열화 3.0
			브랜드판매시설 3.0
	사료산업종합지원	생산자단체 3.0, 일반업체 4.0	
	낙농체험관광	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	
종축시설현대화	3.0		

## 2) 대출기간

- 정부 전체적인 공통기준 없이 소관부처가 제각각 결정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6개월~40년까지 다양하게 분포
- 통일·외교·국방 분야 대출기간은 장기인 반면, 농림수산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대출기간은 단기

[그림 IV-6] 분야별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 특별회계사업(25개)

<표 IV-5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용자 대출기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RPC경영개선	0	1
	천일염산업육성지원	3	5
	현장애로기술과제시범	1	7
	축산분뇨처리시설	3	7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	7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3	7
	화훼공관장경매시설	3	10
	농업종합자금	5	10
	재해대책비	5	10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5	10
	산림재해복구지원	5	10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비용자	5	10
	농어촌주택개량	5	15
	산림사업종합자금	2~25	2~15

&lt;표 IV-57&gt;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재정용자 대출기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3	5
	가스안전관리용자	3	5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5(운전자금2)	5(운전자금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8	7
	해외자원개발용자	5	10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바이오 5	10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폐기물 3	5
	도시가스공급배관용자	5	10

&lt;표 IV-58&gt; 환경개선특별회계 대출기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산업육성용자	2	3
	재활용산업육성용자	2(3)	3(7)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5	10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확충	5	1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민간용자금	5	10

## ○ 주요 기금사업

&lt;표 IV-59&gt; 고용보험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지원	0	0
	직업훈련생계비대부	1	1~3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	1~6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2	2~4
	능력개발시설장비대부	5	5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5	5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	5	5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	5	5

<표 IV-60>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공공자금관리기금	IT설비투자확대지원	2	3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2	3
	산업기술자금	3	5
	농공단지진흥	5	5
	농축산경영자금융자	5	5
	선대구조개선융자	5	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3	7
	영어자금융자	5	5
	장애인자립자금융자	5	5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융자	5	5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7.5	2.5
	제주대병원이전신축	5	5
	환경개선자금	3	7
	양산부산대병원건립	5	5
	칠곡경북대병원건립	5	5
	전남대병원건립	5	5
	전북대병원건립	5	5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지원	10	5
	지방상수도시설개량	5	10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5	15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5	15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5	15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5	15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5	15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5	15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5	15

&lt;표 IV-61&gt; 국민주택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2
	대지조성자금	-	3
	공공분양	-	3
	후분양주택	-	3
	매입임대	-	5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15
	농어촌주택개량	5	15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1~3	17~19
	주거환경개선	1~3	17~19
	국민임대	10	20
	공공임대	10~15	20

&lt;표 IV-62&gt;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실직여성가장점포지원	1~2	계약종료시
	장기실업자점포지원	1~2	계약종료시
	생활안정자금대부	1	3
	체불생계비대부	1	3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1	3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1	3

<표 IV-6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	1	0
	운영활성화지원	1	0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5	0
	농산물브랜드육성	0	5
	인삼계열화지원	5	0
	한식세계화지원	2	3
	산지유통활성화지원	1~3	0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1~3	0
	전통발효식품육성	3	5
	수매지원	1~5	0
	농식품시설현대화	3	7
	저온유통체계구축	3	7
	채소수급안정	10	0
	동절기수급안정	3	7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3	7
생산자용복합형식품제조기업육성	3	7	

<표 IV-64> 농지관리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농지관리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5	일괄, 분할(40%선납 후3년내3회)
	농지임대차사업		5~10
	농지교환분합사업		10
	해외농업개발사업 (’09 신규용자)	5~10	3
	농지매매사업		15~30

&lt;표 IV-65&gt;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창업점포지원	-	-
	안전교육정보센터임차	-	-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	-	-
	안전공단청사임차보증금 등용자	-	-
	대학학자금용자	1	4
	요양비대부사업	2	3
	생활안정자금용자	5	5
	산재예방시설용자	3	7

&lt;표 IV-66&gt; 수산발전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수산발전기금	우수수산물지원	0	1
	산지및소비자유통자금지원	0	1
	수산물수매지원	0	1~2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2	3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	2	1~3
	어선기관및장비개량	1	4
	어업인정책보험지원	2	3
	원양어선설비현대화	5	5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3	7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3	7
	양식어업지원	2~3	2~10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3	10
	어업인후계자육성	5	10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5	10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5	10
	가공시설및운영지원	3~5	10

<표 IV-67>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자산유동화지원	-	5
	소상공인지원	1	5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	1	5
	긴급경영안정	2	5
	창업활성화	2~3	5~8
	개발기술사업화	2~3	5~8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2~3	5~8
	사업전환	2~3	5~8
	신성장기반	2~3	5~10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3~4	6~9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3~4	6~9

<표 IV-68> 축산발전기금 재정용자 대출기간

회계	세부사업	거치기간	상환기간	
축산발전기금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3	일시상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	일시상환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2	3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3	5	
	마필육성사업	3	7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자금 3, 운영자금 1		시설자금 7, 운영자금 일시상환
		3		7
		3		7
	사료산업종합지원	시설자금 3, 원료구매자금 2		시설자금 7, 원료구매자금 일시상환
	낙농체험관광	3		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		7
	종축시설현대화	시설 5		10
	종축시설현대화	운영 2		일시상환

### 3. 재정보조율 계산과 사례분석

#### 가. 재정보조율 정의

- 재정용자가 일반 금융시장에 비해 얼마나 더 유리한 조건, 수준으로 대출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각각 보조율과 보조금으로 정의
  - 재정용자의 거치기간은  $n$ 년, 상환기간은  $m$ 년이며, 총 대출기간=  $n+m$ 이며,
  - 재정용자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r$ 이고, 재정용자 금리임  $i$  ( $r > i$ )
  - 대출금액  $L$
  - 일반 시장금리의 경우 대출자들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금리( $r$ )를 요구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할 것임
    - 시장금리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항을 참조

#### 나. (이론적인) 시장금리 산정 방법<sup>15)</sup>

- 이론적인 시장(대출)금리의 구성
  - (금리의 구성) 민간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조기업의 상품 가격과 같이 '원가 + 마진'으로 구성됨
  - (대출금리의 원가) 대출금리의 원가는 조달비용, 인건비/경비, 출연료 및 신용원가로 구성됨
    - 조달비용 : 대출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비용

15)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차용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현실적인 재정보조율의 계산방법은 후술하고 있음

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대부분의 선진은행은 FTP를 사용. FTP는 대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용(MOR: market opportunity rate)에 은행의 전략을 감안(즉,  $FTP = MOR \pm \alpha$ )하여 결정

\* FTP : Fund Transfer Price

- 인건비/경비 : 해당 대출을 위해 사용되는 인건비/경비. 각 은행들은 관리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있고 이를 통해 동 원가(ABC: Activity Based Cost)를 산출. 인건비/경비는 대출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대출금액에 비례함
  - 출연료 : 대출을 할 경우 법령에 의해 조세처럼 지출해야 하는 출연료가 해당됨. 예, 주택자금대출 취급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 신용원가 : 이론상으로는 '부도시 예상대출금(EAD)' × '부도율(PD)' × '부도시 손실율(LGD)'의 산식에 의해 계산됨. EAD, PD 및 LGD는 장기간 평균치를 사용. 이렇게 산출된 수치는 결국 평균대손율과 차이가 없으므로 대손율을 신용원가의 대응치로 사용 가능함
- \* EAD, PD 및 LGD는 경기에 의존적이고, 대출결정시점에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economic cycle neutral EAD, PD and LGD를 사용.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장기평균치를 사용
- (마진) 은행이 전략적으로 결정. 경쟁이 치열하고 단골거래를 통해 장기적으로 플러스 마진이 예상되는 경우 표면상 마이너스 마진을 결정하기도 함

## □ 재정자금대출의 시장금리

- 위 내용을 정리하고, 재정자금대출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이론상의 각 재정용자금 가격이 산출됨

&lt;표 IV-69&gt; 재정용자사업의 이론상의 시장금리

구분	내용	방법
조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B(Korea Treasury Bill: 국고채) 금리곡선에 기간별 조달비용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이상 용자: 5년 만기 KTB 수익률</li> <li>2년 이상 4년 미만 용자: 3년 만기 KTB 수익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별 조달비용은 월 1회 기획재정부에서 KTB 수익률을 파악하여 변경계시</li> </ul>
인건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단위: 각 재정용자사업</li> <li>○ 필요자료: 인건비/경비 ÷ 평균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자금: 건당 76,000원</li> <li>· 기업자금: 건당 5,300,000원</li> </ul> </li> <li>- 평균대출금액</li> </ul> </li> </ul>	-
출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단위: 각 재정용자사업</li> <li>○ 필요자료: 신용보증기금출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자금: 0.27%</li> <li>- 기업대출: 0.38%</li> </ul> </li> </ul>	-
신용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단위: 각 재정용자사업</li> <li>○ 필요자료: 대손율</li> </ul>	-
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nchmark ratio</li> </ul>

다. 재정보조율 결정과정<sup>16)</sup>

□ 재정보조율 측정을 위한 설정

- 대출기간= n(거치기간)+ m(상환기간)
- 시장금리= r이고, 재정융자 금리= i (r > i)
- 대출금액 L

① 거치기간 이후 즉시 상환할 경우

- 정부가 가진 채권의 현재가치(PV)

$$PV = \frac{iL}{1+r} + \frac{iL}{(1+r)^2} + \dots + \frac{iL}{(1+r)^n} + \frac{L}{(1+r)^n}$$

$$= \frac{iL}{r} + \frac{(r-i)L}{r(1+r)^n}$$

- 대출금(L)과 대출의 현재가치(PV) 차이: 보조비용(SC)

$$SC = L - PV$$

$$= L - \left[ \frac{iL}{r} + \frac{(r-i)L}{r(1+r)^n} \right]$$

$$= \frac{r-i}{r} \left[ 1 - \frac{1}{(1+r)^n} \right] L$$

- 보조비용(SC)은 시장금리(r)가 높을수록, 대출금리(i)가 낮을수록, 거치기간(n)이 길수록 커짐
- 즉, 현재 제공된 대출금(L) 가운데 재정의 최종적 부담으로 귀착되는 금액의 현재가치임. 수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L) 가운데 정부로부터 순수하게 보조를 받는 부분임

---

16) 제Ⅲ장 1절 다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보조율은 채무불이행확률 혹은 대손율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미국 방식)과 위험대출에 대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음. 이는 채무불이행확률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반면 위험대출에 대한 시장평가는 대하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조율(subsidy rate: SR)

$$SR = \frac{SC}{L} = \frac{r-i}{r} \left[ 1 - \frac{1}{(1+r)^n} \right]$$

② 거치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상환될 경우: n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m년의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이 균등상환 되는 경우

○ 이자상환액의 현재가치(PV1)

$$\begin{aligned} PV(1) &= \frac{iL}{1+r} + \frac{iL}{(1+r)^2} + \dots + \frac{iL}{(1+r)^n} + \frac{iL(m/m)}{(1+r)^{n+1}} + \frac{iL((m-1)/m)}{(1+r)^{n+1}} + \\ &\quad \dots + \frac{iL(1/m)}{(1+r)^{n+m}} \\ &= \frac{iL}{r} - \frac{iL}{r^2L(1+r)^n} \left[ 1 - \frac{1}{(1+r)^m} \right] \end{aligned}$$

○ 원금상환액의 현재가치(PV2)

$$\begin{aligned} PV(2) &= \frac{L(1/m)}{(1+r)^{n+1}} + \frac{L(1/m)}{(1+r)^{n+2}} + \dots + \frac{L(1/m)}{(1+r)^{n+m}} \\ &= \frac{L}{rL(1+r)^n} \left[ 1 - \frac{1}{(1+r)^m} \right] \end{aligned}$$

○ 보조금(SC) 및 보조율(SR)

$$PV = PV(1) + PV(2)$$

$$= \frac{iL}{r} + \frac{(r-i)L}{r^2m(1+r)^n} \left[ 1 - \frac{1}{(1+r)^m} \right]$$

- 이 경우 보조비용(SC)과 보조율(SR)은 다음과 같이 결정

$$SC = L - PV$$

$$= \frac{(r-i)L}{r} \left\{ 1 - \frac{1}{(1+r)^n} \left[ 1 - \frac{1}{(1+r)^m} \right] \right\}$$

$$SR = \frac{SC}{L}$$

$$= \frac{r-i}{r} \left\{ 1 - \frac{1}{(1+r)^n} \left[ 1 - \frac{1}{(1+r)^m} \right] \right\}$$

- 재정보조율 및 보조금 산출은 앞서 기술한 ‘재정보조율 결정과정’ 산식에 기초하여 계산하였음. 즉, 대출금액과 원리금상환금액을 대출기간 및 금리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대출금과 나눔
- 2009년 현재 재정용자 사업(분야별·회계별) 재정보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국채수익률’을 사용함. 또한 일부 자료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름
  - 우선,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범위(range)일 경우는 각각의 최대기간을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의 경우도 최대값을 이용하였음.
  - 대출금리 조건에서 ‘국채수익률(기간별·시점별)에 따른 분기별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가 아니면서, 변동금리일 경우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일 때 KTB 5년 만기수익률(2009년 1분기 현재 4.35%)을 적용하였음
    - 다만, 보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자(대상)조건에 특정한 시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국채수익률을 이용하여 현재가치화

예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활성화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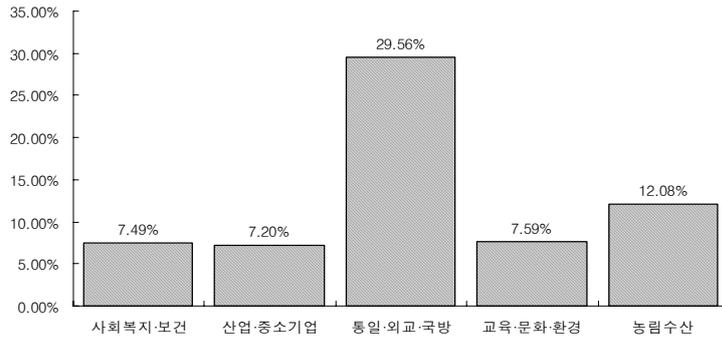
회계 및 기금명	세부 사업	대출조건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활성화	(분기별공자금리 - 0.70%p)	2~3	5~8

- 위의 사업은 대출금리가 분기별공자금리에서 0.70%p를 뺀 것임. 이 경우 재정보조율을 산출 시 사용할 대출금리를 2009년 1/4분기 KTB(5년물) 수익률을 사용. 반면에 융자(대하)조건에 특정시점의 융자금리가 존재할 경우 해당 분기의 KTB(1년물/3년물/5년물) 수익률을 적용('4.35% - 0.70%p = 3.65%')
- 위의 예시의 경우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은 범위로 주어져 있으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8년으로 설정함

#### 라. 재정보조율 시산 결과 (분야별·재원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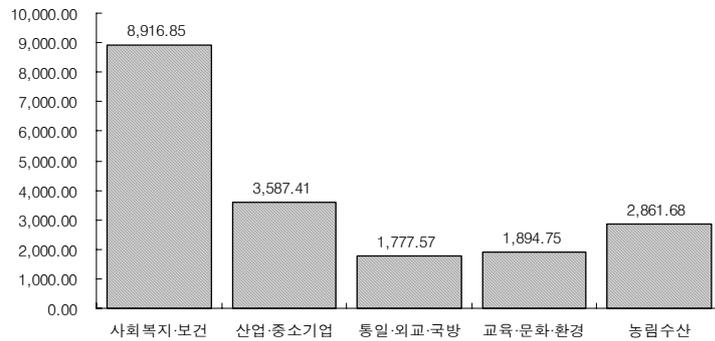
- 재정융자자금의 분야별(평균) 보조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일·외교·국방으로 29.56%로 재정보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농림·수산 분야는 12.08%, 교육·문화·환경분야는 7.59%로 나타남
  -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7.49%이며, 산업·중소기업·과학분야 재정보조율은 7.20%로 나타남
-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야별(평균) 재정보조액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8,916.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87.4억원
  - 농림수산 분야 2,861.7억원, 교육·문화·환경 분야는 1,894.8억원
  -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재정보조액은 1,777.6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IV-7] 분야별 평균 재정보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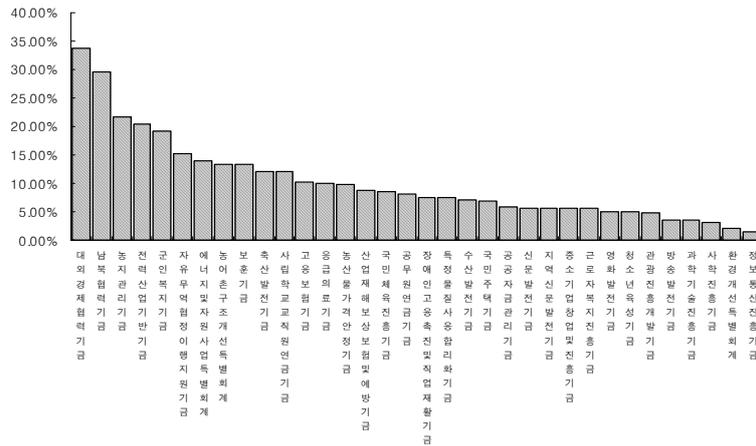
[그림 IV-8] 분야별 평균 재정보조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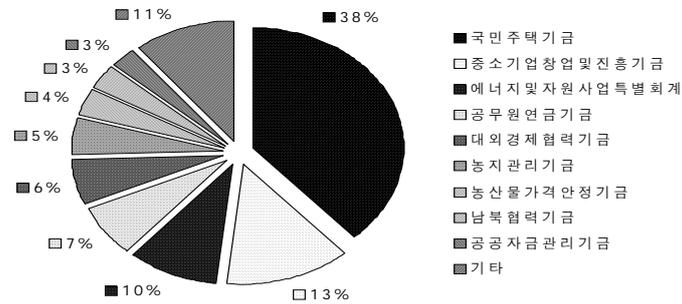
- [그림 IV-9]는 재원별 평균 재정보조율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기금 중 대외경제협력기금(33.70%)이 가장 높은 재정보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뒤이어 남북협력기금(29.56%), 농지관리기금(21.59%), 전력산업기반기금(20.41%), 군인복지기금(19.0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15.2%) 등의 순
  - 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13.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3.43%), 환경개선특별회계(2.06%)의 순

[그림 IV-9] 자원별 평균 재정보조율



- [그림 IV-10]은 '09 재정용자 예산에 재정보조율을 적용한 재정보조액(1조 9,343.5억원) 대비 상위 9개 기금 및 특별회계를 보여주고 있음
- 국민주택기금은 재정보조액 대비 38%(7,435.8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13.2%(2,558.8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IV-10] 자원별 재정보조액 총액 대비 비중



마. 재정보조율 시산 결과 사례분석

- 사례 1) 동일분야(유사사업)이지만 재원별 대출조건 차이에 따른 보조율 차이
  - 아래 사업의 성격은 각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지만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의 차이로 재정보조율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대부 사업은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상환기간 3년)은 4년이고, 대출금리는 3.4%로 재정보조율은 6.10%임
    -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생활안정자금대부 사업은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상환기간 5년)은 10년이고, 대출금리는 3.0%로 재정보조율은 11.86%임

(단위: %)

	재원	세부사업	대출금리	재정보조율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3.4	6.10
A-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3.0	11.86

- 사례 2) 동일분야(유사사업)이면서 동일한 재원의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차이에 따른 보조율 차이
  - 아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으로 세부사업인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와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상환기간 3년)은 동일하나, 대출금리의 상이한 적용으로 재정보조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단위: %)

	재원	세부사업	대출 금리	재정보조율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2.4	9.26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3.4	7.01

□ 사례 3) 국민주택기금의 대지조성자금과 매입임대사업은 모두 대출금리가 5%이며 거치기간은 없음. 두 사업은 상환방식에 따라 재정보조율이 상이함

○ 상환기간의 경우 대지조성자금이 3년이고 매입임대사업이 5년임. 따라서 보조율의 경우 상환기간이 짧은 대지조성자금이 낮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율)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대지 조성자금 (3.15%)	금리	5.00%						
	원금회수	100000.0	16666.67	33333.33	33333.33	16666.67		
	원금잔액		83,333	50,000	16,667	-		
	이자수입	7500.0	2083.333	3333.333	1666.667	416.6667		
	원리금	107500.0	18750	36666.67	35000	17083.33		
매입 임대 (2.51%)	금리	5.00%						
	원금회수	10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원금잔액		0	90,000	70,000	50,000	30,000	10,000
	이자수입	12,500		2,250	4,000	3,000	2,000	1,000
	원리금	112,500	0	12,250	24,000	23,000	22,000	21,000

□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별 현황은 <표 IV-70>~<표 IV-72>를 참고

<표 IV-70> 재정용자 분야별 평균 보조율 및 보조액

대분류	소분류	사업 분야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2009년금액	2009년비중	보조율	보조액
A	1	교육훈련및관련시설	2.49	4.00	4.40	734,142	2.87	10.01	29,596.8
A	2	창업지원	3.34	2.83	5.50	208,859	0.82	5.79	102,879.5
A	3	의료및관련시설	2.96	3.75	9.20	79,789	0.31	6.40	3,446.4
A	4	복지및보호관련용자	2.86	4.25	8.69	5,119,909	20.01	8.25	90,564.4
A	5	주택	4.84	6.00	4.43	7,049,145	27.55	7.01	665,198.2
A	A	사회복지·보건	3.30	4.17	6.44	13,191,844	51.56	7.49	891,685.3
B	1	중소기업및산업	3.40	3.48	7.23	2,651,304	10.36	10.74	330,384.8
B	2	기술개발	3.86	3.83	7.14	1,388,900	5.43	8.65	25,689.3
B	3	유통및산업단지	4.18	3.80	9.10	41,800	0.16	2.22	2,663.2
B	B	산업·중소기업	3.81	3.70	7.82	4,082,004	15.95	7.20	358,741.3
B	C	통일·외교·국방	2.95	10.67	30.00	521,420	2.04	29.56	177,757.3
D	1	에너지·환경및문화(관광)관련SOC	3.43	4.80	8.20	387,338	1.51	3.89	29,088.4
D	2	교육및문화(관광·스포츠)관련용자	3.49	5.67	8.43	2,521,452	9.85	11.28	160,486.5
D	D	교육·문화·환경	3.46	5.23	8.31	2,908,790	11.37	7.59	189,474.9
E	1	농림경영및산업기반시설	2.88	4.24	8.78	1,856,178	7.25	15.57	156,254.3
E	2	축산경영및산업기반시설	3.38	3.14	6.00	498,033	1.95	10.97	50,426.6
E	3	수산업경영및산업기반시설	3.51	3.38	6.00	945,305	3.69	7.95	13,120.8
E	4	농림수산(통합)유통및관련시설	3.58	3.45	5.10	1,465,881	5.73	7.79	60,078.9
E	5	재해대책	4.35	5.00	5.00	38,768	0.15	18.12	6,287.6
E	E	농림수산	3.54	3.84	6.18	4,804,165	18.78	12.08	286,168.1
F	F	기타	2.25	2.33	3.33	78,846	0.31	43.61	30,523.8
평균 및 합계			3.22	4.99	10.35	25,587,069	100	9.85	1,934,350.8

(단위: %, 년, 백만원)

<표 IV-71> 재정용자 분야별·세부사업별 보조율 및 보조액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A-1	고용보험기금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	3.0	5,000	11.86	593.2
A-1	고용보험기금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1~1.5	99,216	13.82	13,709.3
A-1	고용보험기금	능력개발시설장비대부	1~4.0	10,000	5.55	555.3
A-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예방시설용자	3.0	91,600	10.93	10,010.8
A-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안전교육정보센터임차	무상	0		'09 예산없음
A-1	고용보험기금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1~3.0	3,800	11.86	450.8
A-1	고용보험기금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	3.0	8,000	11.86	949.1
A-1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4	35,400	9.26	3,278.7
A-1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시설용자지원	4.0	1,000	4.96	49.6
A-1					10.01	29,596.8
A-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분기별공자금리-0.33%p	500,000	4.16	20,803.3
A-2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실직여성가장점포지원	4.5	500	2.81	14.1
A-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자영업전대지원		2,500	11.93	298.2
A-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자영업창업용자	3.0	2,500	8.13	203.1
A-2	고용보험기금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3.0	10,000	6.97	697.5
A-2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기실업자점포지원	4.5	1,100	2.81	30.9
A-2	공공자금관리기금	저소득층생업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7,200	3.51	252.4

<표 IV-71>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A-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	창업점포지원	2.0	7,185		계산불가
A-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창업활성화	분기별공자금리 -0.70%p	1,000,000	7.64	76,419.4
A-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폐업자영업자진입지원	분기별공자금리 -0.33%p	100,000	4.16	4,160.7
A-2					5.79	102,879.5
A-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의표기관시실장비 보강비용자	4.0	6,500	6.15	399.7
A-3	공공자금관리기금	양산부산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16,500	13.67	2,255.5
A-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	요양비대부사업	0.6/2.6	2,500	6.98	174.6
A-3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시설개선용자	3.5	6,170	9.99	616.7
A-3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남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0	3.60	'09 예산없음
A-3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0	3.60	'09 예산없음
A-3	공공자금관리기금	제주대병원이전신축	분기별변동금리	0	3.60	'09 예산없음
A-3	공공자금관리기금	칠곡경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0	3.60	'09 예산없음
A-3					6.40	3,446.4
A-4	보훈기금	5·18민주유공자대부	3.0	428	15.70	67.2
A-4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	6.5	500,000	-2.81	-14,029.7

&lt;표 IV-기&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A-4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	3.0	18,146	15.70	2,849.2
A-4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5.2	3,008,000	-4.24	-127,647.8
A-4	군인복지기금	대출사업	무이자	143,455	19.07	27,351.9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3.4	31,960	6.10	1,950.6
A-4	신업제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생활안정자금용자	3.0	11,000	11.86	1,305.1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2.4	24,000	9.26	2,222.8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3.4	27,000	7.01	1,891.5
A-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생활안정자금용자	3.0	3,000	5.13	153.8
A-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용자	3.0	4,500	5.13	230.7
A-4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차량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16,000	3.60	576.3
A-4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진세자금	2.0	1,150,000	16.70	192,029.6
A-4	공공자금관리기금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3,000	3.60	108.1
A-4	보훈기금	체대군인대부	4.0	3,375	6.53	220.4
A-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체불생계비대부	3.4	20,000	6.13	1,226.0
A-4	보훈기금	특수임무수행자대부	3.0	374	15.70	58.7
A-4					8.25	90,564.4
A-5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5.0~6.0	550,000	1.02	5,585.5
A-5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	3.0~4.0	1,100,000	7.90	86,933.5

<표 IV-71>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A-5	국민주택기금	국민임대	3.0	2,178,742	20.02	436,270.8
A-5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진체자금	4.5	3,018,798	3.94	119,043.2
A-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주택개발	3.0	18,000	15.56	2,801.4
A-5	국민주택기금	대지조성자금	5.0	0	3.15	'09 예산없음
A-5	국민주택기금	매입임대	5.0	70,000	2.51	1,758.0
A-5	국민주택기금	주거환경개선	3.0	10,000	15.39	1,539.0
A-5	국민주택기금	후분양주택	4.5~5.5	890,000	1.92	17,090.3
A-5					7.94	671,021.7
A					7.68	897,508.9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스안전관리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1.25%	23,000	12.26	2,819.5
B-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운영지원	공자금리, 공자금리-0.75%p, 3.5%~3%	24,750	1.47	362.8
B-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	분기별공자금리 -0.33%p	700,000	5.31	37,193.6
B-1	전력산업기반기금	농어촌전화사업용자	무이자	30	56.26	16.9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1.25%	5,000	14.99	749.3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공급배관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	130,000	8.15	10,592.9
B-1	방송발전기금	디지털방송진흥용자	4.82(변동금리)	17,000	1.47	249.2

&lt;표 IV-71&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B-1	과학기술진흥기금	민항기국제공동개발용자	공자기금예수금리연동 ('08년4.35%)	0	3.46	'09 예산없음
B-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진환	분기별공자금리-0.70%p	147,500	7.64	11,271.9
B-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생산시설현대화	3.0	21,600	11.86	2,562.7
B-1	공공자금관리기금	신대구조개신용자	분기별변동금리	5,200	3.60	187.3
B-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시설대체자금용자	2.5	2,900	12.25	355.4
B-1	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인프라구축지원	3.0	4,000	5.72	228.9
B-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성장기반	분기별공자금리-0.33%p	1,190,000	5.68	67,615.6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1.25%	56,340	17.76	10,007.6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1.25%	56,340	12.41	6,992.2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치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1.25%	518,650	12.26	63,579.9
B-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자산유동화지원	채권금리연동	40,000	2.07	826.8
B-1	진력산업기반기금	진력수요관리용자	3.0	14,000	12.01	1,682.0
B-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분기별공자금리-0.33%p	300,000	5.77	17,304.1
B-1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인프라 구축지원	3.0	3,000	5.72	171.6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	50,000	8.65	4,325.2
B-1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비용지원	3.5(고정금리)	2,000	5.55	111.1

<표 IV-기>의 계속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단위: %, 년, 백만원)	
				09년 예산	보조율
B-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해외자원개발용자	국고채3년유통물평균 수익률-2.25%	358,200	25.45
B-1				10.74	330,384.8
B-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개발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금리 -0.70%p	158,000	7.64
B-2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지원	1.0	11,700	33.69
B-2	투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술개발자금융자	4.0	0	2.57
B-2	공공자금관리기금	산업기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0	11.37
B-2	진력산업기반기금	진원개발용자	4.5	10,000	11.06
B-2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변동금리(평균4.6%)	70,000	1.47
B-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금리 -0.70%p	100,000	7.11
B-2	공공자금관리기금	초고속공공중앙구축지원	분기별변동금리	30,000	1.47
B-2	공공자금관리기금	IT설비투자확대지원	분기별변동금리	0	1.47
B-2				8.65	25,693.3
B-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농공단지임주기업지원	분기별공자금리 -0.33%p	20,000	5.53
B-3	공공자금관리기금	농공단지진흥	분기별변동금리	0	3.60
B-3	공공자금관리기금	수도권내륙핵심지역개발지원	분기별변동금리	1,000	1.15
B-3	공공자금관리기금	수도권북핵심지역개발지원	분기별변동금리	53,555	1.15
B-3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분기별변동금리	0	1.15
					예산없음

&lt;표 IV-71&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B-3	공공자금관리기금	영남권북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32,300	1.15	372.9
B-3	영화발전기금	유통환경개신용자	3.5	4,000	4.96	198.4
B-3	공공자금관리기금	중부권북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28,898	1.15	333.7
B-3	공공자금관리기금	호남권북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1,000	1.15	11.5
B-3	공공자금관리기금	화물자동차공통차고지건설	분기별변동금리	1,000	1.15	11.5
B-3					2.22	2,663.2
B					7.20	358,741.3
C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기반조성	1.0	130,000	50.44	65,576.3
C	남북협력기금	교역경협자금대출	국고채유동수익률+신용 위험가산율	35,250	-16.32	-5,753.6
C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0.01~2.5%	350,000	33.70	117,934.7
C	남북협력기금	인도적지원사업	1.0	0	50.44	0.0
C					29.56	177,757.3
D-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시설확충	공자금리, 공자금리-0.75 %P, 3.5%	213,700	8.26	17,660.6
D-1	공공자금관리기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0	3.67	'09 예산없음
D-1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4.5	74,000	2.30	1,704.0
D-1	환경개선특별회계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확충	4.28~4.69('08년기준)	0	0.84	'09 예산없음
D-1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활용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65,000	3.71	2,409.4

<표 IV-기>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D-1	환경개선훈회계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28~4.69('08년기준)	5,000	0.84	42.1
D-1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상수도시설개발	분기별변동금리	0	3.46	'09 예산없음
D-1	환경개선훈회계	천연가스자동차보급기타 민간용자금	변동금리	15,000	3.46	518.5
D-1	축산발전기금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0		'09 예산없음
D-1	공공자금관리기금	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60,000	10.93	6,557.3
D-1	환경개선훈회계	환경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10,000	1.47	146.6
D-1					3.89	29,038.4
D-2	국민체육진흥기금	경륜경정용자(나뉘져 있음)	변동	2,400		
D-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무이자	135,036	25.67	34,668.6
D-2	축산발전기금	낙농체험관광	0	400	27.06	108.2
D-2	공무원연금기금	대여학자금용자	-	754,334	19.07	143,825.3
D-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	대학학자금용자	1.0~3.0	5,100	5.43	276.8
D-2	사학진흥기금	사립대학기숙사현대화자 금용자	5.13(변동금리)	55,000	3.06	1,685.0
D-2	사학진흥기금	사립교육환경개선지급용자	5.13(변동금리)	112,100	3.06	3,434.2
D-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채5년물+1%P(6.5%)	1,456,382	-1.70	-24,794.3
D-2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키움용자	4.0	14,292	8.63	1,232.7
D-2					11.28	160,436.5
D					7.59	189,474.9

&lt;표 IV-71&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E-1	농지관리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0이내	145,000	21.11	30,612.7
E-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고당도과실생산지원	3.0	279	11.86	33.1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4.0	7,200	5.92	426.6
E-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파수우량묘목생산	3.0	344	11.86	40.8
E-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과원매매	2.0	26,460	27.47	7,269.4
E-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과원임대차	무이자	5,198	21.95	1,140.8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브랜드육성	3.0	34,100	5.13	1,748.2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식품소비자친화사업	3~4	203,262	2.57	5,230.9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식품시설행대화	3~4	70,000	10.93	7,650.2
E-1	국민주택기금	농어촌주택개량	3.0	108,000	15.56	16,808.6
E-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종합자금	3.0	0	13.84	'09 예산없음
E-1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합사업	2.0	1,860	13.60	252.9
E-1	농지관리기금	농지매매사업	2.0	169,575	27.47	46,587.5
E-1	농지관리기금	농지임대차사업	무이자	79,800	21.95	17,514.1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동절기수급안정	1.5	0	22.98	'09 예산없음
E-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사업종합자금	1.5~4.0	34,300	8.49	2,910.5
E-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시설원예품질개선	3.0	37,320	10.93	4,078.7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인삼계열화지원	0~3	52,192	6.56	3,424.6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저온유통체계구축	3.0	914	10.93	99.9

<표 IV-71>의 계속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진통발효식품육성				3.0		9,200		12.01		1,105.3	
E-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3.0		31,200		13.84		4,318.1	
E-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채소수급안정				0		0		37.40		'09 예산없음	
E-1	농지관리기금	해외농업개발사업*09신규				1.5		21,000		23.82		5,001.4	
E-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RPC경영개선				0~2.0		9,600				계산불가	
E-1								15.57		15.57		156,254.3	
E-2	축산발전기금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3.0		1,950		5.72		111.6	
E-2	축산발전기금	마필육성사업				농업인3.0,일반인4.0		5,866		10.93		641.1	
E-2	축산발전기금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3.0		134,000		8.83		11,829.3	
E-2	축산발전기금	사료산업종합지원				생산지단체3.0,일반업체4.0		50,000		10.93		5,464.4	
E-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우량농어지생산비육시찰지원				3.0		2,000		11.86		237.3	
E-2	축산발전기금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0		27,200		11.11		3,020.7	
E-2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3.0		10,400		10.93		1,136.6	
E-2	축산발전기금	종축시설현대화				3.0		13,605		13.84		1,883.0	
E-2	축산발전기금	종축시설현대화				3.0		13,605		10.76		1,463.6	
E-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친일염산업육성지원				3.0		1,876		12.01		225.4	
E-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사시설현대화				3.0		62,212		13.84		8,610.3	
E-2	축산발전기금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농업인,생산자단체3.0 일반업체4.0		120,000		10.93		13,114.6	
E-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물노처리시설				3.0		24,602		10.93		2,688.7	

(단위: %, 년, 백만원)

&lt;표 IV-71&gt;의 계속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단위: %, 년, 백만원)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E-2				10.97	50,426.6	
E-3	수산발전기금	가공시설및운영지원	3~4.0	29,600	6.15	1,820.0
E-3	수산발전기금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0	4,000	6.15	245.9
E-3	수산발전기금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3.0	700	12.18	85.3
E-3	수산발전기금	양식어업지원	3~4.0	8,105	5.81	470.9
E-3	수산발전기금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 비지원	3~4.0	600	2.57	15.4
E-3	수산발전기금	어선기관및장비개발	3.0	600	5.13	30.8
E-3	수산발전기금	어업인정책보급지원	4.0	8,000	2.57	205.5
E-3	수산발전기금	어업인후계자육성	3~4.0	0	6.15	'09 예산없음
E-3	공공자금관리기금	영어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51,000	17.12	8,730.6
E-3	수산발전기금	우수수산물지원	2~4	140,000		계산불가
E-3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선설비현대화	3.0	1,000	10.93	109.3
E-3	수산발전기금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3.0	5,000	13.84	692.0
E-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현장에로기술과제시범	3.0		9.01	0.0
E-3	수산발전기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 선자금	3.0	12,500	5.72	715.2

<표 IV-71>의 계속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09년 예산	보조율	보조액
E-3					7.95	13,120.8
E-4	수산발전기금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3.0	0	10.93	'09 예산없음
E-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0	3,408	10.93	372.5
E-4	수산발전기금	산지및소비자유통자금지원	3~4	147,500		계산불가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통활성화지원	1~4	559,916	6.55	36,675.9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생산자-음료부합형식품제조 기업육성	3.0	10,000	12.75	1,274.7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	3~4	79,100	6.55	5,181.3
E-4	축산발전기금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3.0	2,000	12.01	240.3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매지원	3~4	0	4.78	'09 예산없음
E-4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	3~4	131,800	4.64	6,114.5
E-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3.0	10,400	10.93	1,136.6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활성화지원	3~4	343,000	2.57	8,827.0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친환경농산물소비자유통 활성화	3.0	2,400	6.56	157.5
E-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식세계화지원	4.0	2,000	2.16	43.2

(단위: %, 년, 백만원)

&lt;표 IV-71&gt;의 계속

분류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단위: %, 년, 백만원)	
				09년 예산	보조율
E-4	수산발전기금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4.0	1,000	5.55
E-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화훼관광장경매시설	3.0	0	12.18
E-4					60,078.9
E-5	공공자금관리기금	농축산경영자금융자	분기별변동금리	20,968	3.60
E-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재해복구지원	1.5	1,800	25.38
E-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해대책비	1.5	20,000	25.38
E-5					6,287.6
E					286,168.1
F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	무상	3,109	계산불가
F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지원	무상	1,237	계산불가
F	공공자금관리기금	신협중앙회경영경상화지원	무이자	70,000	30,523.8
F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안전공단청사임차보증금 등용자	무상	1,800	계산불가
F					30,523.8
평균 및 합계					9.85

<표 IV-72> 재정용자 분야별·세부사업별 보조율 및 보조액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0	3	7	10.93	372.5
	농어촌주택개발	3.0	5	15	15.56	2,801.4
	농업종합자금	3.0	5	10	13.84	0.0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 보강비용자	4.0	5	10	6.15	399.7
	산림사업종합자금	1.5~4.0	2~25	2~15	8.49	2,910.5
	산림재해복구지원	1.5	5	10	25.38	456.8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 율화	3.0	3	7	10.93	1,136.6
	재해대책비	1.5	5	10	25.38	5,075.5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3.0	5	10	13.84	4,318.1
	친일업산업육성지원	3.0	3	5	12.01	225.4
	축산분뇨처리시설	3.0	3	7	10.93	2,688.7
	현장에로기술과제시범	3.0	1	7	9.01	0.0
	화해공관장경매시설	3.0	3	10	12.18	0.0
	RPC경영개선	0~2.0	0	1	0.0	0.0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가스안전관리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1.25%	3	5	12.26	2,819.5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1.25%	5(운전자금2)	5(운전자금3)	14.99	749.3

(단위: %, 년, 백만원)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도시가스공급매관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	5	10	8.15	10,592.9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1.25%	바이오5	10	17.76	10,007.6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1.25%	폐기물3	5	12.41	6,992.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1.25%	3	5	12.26	63,579.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	8	7	8.65	4,325.2
	해외자원개발용자	국고채3년유통물 평균수익률-2.25%	5	10	25.45	91,178.5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확충	4.28~4.69(08년기준)	5	10	0.84	0.0
	재활용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2(3)	3(7)	3.71	2,409.4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28~4.69(08년기준)	5	10	0.84	42.1
	친연가스차량보급기 타민간용자금	변동금리	5	10	3.46	518.5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산업육성용자	변동금리	2	3	1.47	146.6
	고령자고용환경개선용자	3.0	5	5	11.86	593.2
고용보합기금	근로복지공단청사임차지원	무상	0	0		0.0

<표 IV-72>의 계속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고용보협기금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 대부	1~1.5	2	2~4	13.82	13,709.3
		능력개발시설장비대부	1~4	5	5	5.55	555.3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1~3	5	5	11.86	450.8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 지원	3.0		1~6	6.97	697.5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	3.0	5	5	11.86	949.1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4	1	1~3	9.26	3,278.7
		농공단지진흥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0.0
		농축산경영자금용자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755.3
		산업기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3	5	11.37	0.0
		선대구조개선용자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187.3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 설지원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11.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3	7	3.67	0.0
		수도권북화물터미널 건설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618.3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 지원	무이자	10	5	43.61	30,523.8

(단위: %, 년, 백만원)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회계및기금명  공공자금 관리기금	양산부산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5	5	13.67	2,255.5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0.0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372.9
	영어자금융자	분기별변동금리	5	5	17.12	8,730.6
	장애인자립자금융자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576.3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 자금융자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108.1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분기별변동금리	7.5	2.5	3.51	252.4
	전남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0.0
	전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0.0
	제주대병원이진신축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0.0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333.7
	지방상수도시설개발	분기별변동금리	5	10	3.46	0.0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분기별변동금리	2	3	1.47	439.8
	칠곡경북대병원건립	분기별변동금리	5	5	3.60	0.0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11.5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분기별변동금리	5	15	1.15	11.5
	환경개선자금	분기별변동금리	3	7	10.93	6,557.3
	IT설비투자확대지원	분기별변동금리	2	3	1.47	0.0

<표 IV-72>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공무원연금 기금	공무원연금대부	6.5	-	1~5	-2.81	-14,029.7
	대여학자금용자	-	2	3~4	19.07	143,825.3
과학기술 진흥기금	민항기국제공동개발용자	공자기금예수금리 연동(08년4.35%)	5	10	3.46	0.0
	관광사업체운영지원	공자금리, 공자금 리-0.75%p, 3.5%, 3%	2	2~3	1.47	362.8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시설확충	공자금리, 공자금 리-0.75%p, 3.5%	3~4	4~5	8.26	17,660.6
	공공분양	5.0~6.0	-	3	1.02	5,585.5
국민주택 기금	공공임대	3.0~4.0	10~15	20	7.90	86,933.5
	국민임대	3.0	10	20	20.02	436,270.8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5.2	1~3	17~19	-4.24	-127,647.8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	-	2	3.94	119,043.2
	농어촌주택개발	3.0	5	15	15.56	16,808.6
	대지조성자금	5.0	-	3	3.15	0.0
	매입임대	5.0	-	5	-5.81	-4,065.6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0	-	15	16.70	192,029.6
	주거환경개선	3.0	1~3	17~19	15.39	1,539.0
	후분양주택	4.5~5.5	-	3	1.92	17,090.3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국민체육진흥기금	경륜경쟁용자(니뉘져있음)	변동	-	-	-	0.0
	스포츠타일용자	4.0	1~4	3~10	8.63	1,232.7
군인복지기금	대출사업	무이자	2	4(학자금), 전출시 (전세자금)	19.07	27,351.9
	생활안정자금대부	3.4	1	3	6.10	1,950.6
근로자복지 진흥기금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2.4	1	3	9.26	2,222.8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3.4	1	3	7.01	1,891.5
	실직여성가장점포지원	4.5	1~2	계약종료시	2.81	14.1
	장기실업자점포지원	4.5	1~2	계약종료시	2.81	30.9
	체물생계비대부	3.4	1	3	6.13	1,226.0
	개성공단지원	1.0	5	15	33.69	3,941.5
	경제협력기반조성	1.0	5~10	15~30	50.44	65,576.3
	교역경협자금대출	국고채유동수익률 +신용위협가산율	0~7	0.5~20	-16.32	-5,753.6
남북협력 기금	인도적지원사업	1.0	10	30	50.44	0.0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4.0	3	7	5.92	426.6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산물브랜드육성	3.0	0	5	5.13	1,748.2
	농식품소비산지상생 협력	3~4.0	1	0	2.57	5,230.9
	농식품시설현대화	3~4.0	3	7	10.93	7,650.2

<표 IV-72>의 계속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동결기수급안정	1.5	3	7	22.98	0.0
	산지유통활성화지원	1~4.0	1~3	0	6.55	36,675.9
	생산자-옹북합형식품제조기업육성	3.0	3	7	12.75	1,274.7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	3~4.0	1~3	0	6.55	5,181.3
	수매지원	3~4.0	1~5	0	4.78	0.0
	운영활성화지원	3~4.0	1	0	2.57	8,827.0
	인삼계열화지원	0~3.0	5	0	6.56	3,424.6
	지은유통체계구축	3.0	3	7	10.93	99.9
	진통발효식품육성	3.0	3	5	12.01	1,105.3
	체소수급안정	0	10	0	37.40	0.0
	친환경농산물소비자유 통활성화	3.0	5	0	6.56	157.5
	한식세계화지원	4.0	2	3	2.16	43.2
	경영회생지원동지매입 사업	1.0이내	5	일괄분할(40%신남후 3년내 3회)	21.11	30,612.7
	농지교환분합사업	2.0		10	13.60	252.9
	농지매매사업	2.0		15~30	27.47	46,587.5
	농지임대차사업	무이자		5~10	21.95	17,514.1
	해외농업개발사업*09신규	1.5	5~10	3	23.82	5,001.4

(단위: %, 년, 백만원)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지관리  
기금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대외경제 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0.01~2.5%	7~15	25~40	33.70	117,934.7
	디지털방송진환용자	4.82(변동금리)	2	3	1.47	249.2
방송발전 기금	프로그램제작비용지원	3.5(고정금리)	1	2	5.55	111.1
	5·18민주유공자대부	3.0	3	3~20	15.70	67.2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	3.0	3	3~20	15.70	2,849.2
	체대군인대부	4.0	3	3~20	6.53	220.4
	특수임무수행자대부	3.0	3	3~20	15.70	58.7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무이자	졸업후 (중퇴후)2	2~4	25.67	34,668.6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기금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채5년물+1%P (6.5%)	1~3년	2~10	-1.70	-24,794.3
	사립대학기숙사현대화 자금용자	5.13(변동금리)	1~12	1~12	3.06	1,685.0
사학진흥 기금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	5.13(변동금리)	1~12	1~12	3.06	3,434.2
	근로복지공단청산임차	무상				0.0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대학학자금용자	1.0~3.0	1	4	5.43	276.8
	산재예방시설통자	3.0	3	7	10.93	10,010.8
	생활안정자금용자	3.0	5	5	11.86	1,305.1

<표 IV-72>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회계및기금명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안전공단청사임차보증 금등용자	무상				0.0
	안전교육정보센터임차 요양비대부사업	0.6/2.6	2	3	6.98	174.6
	창업점포지원	2.0				0.0
	가공시설및운영지원	3~4.0	3~5	10	6.15	1,820.0
수산발전 기금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 시장건설	3.0	3	7	10.93	0.0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0	5	10	6.15	245.9
	산지및소매지유통자금지원	3~4.0	0	1		0.0
	수산물수매지원	3~4.0	0	1~2	4.64	6,114.5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3.0	3	10	12.18	85.3
	양식어업지원	3~4.0	2~3	2~10	5.81	470.9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 작비지원	3~4.0	2	1~3	2.57	15.4
	어선기관및장비개발	3.0	1	4	5.13	30.8
	어업인정책보험지원	4.0	2	3	2.57	205.5
	어업인후계자육성	3~4.0	5	10	6.15	0.0
	우수수산물지원	2~4.0	0	1		0.0
	원양어선설비현대화	3.0	5	5	10.93	109.3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3.0	5	10	13.84	692.0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4.0	3	7	5.55	55.5
	TAC참여어업인경영 개신자금	3.0	2	3	5.72	715.2
신문발전 기금	신문발전기금인프라구 축지원	3.0	2	3	5.72	228.9
영화발전 기금	유통환경개신용자	3.5	2	2~4	4.96	198.4
응급의료 기금	응급의료시설개신용자	3.5	5	10	9.99	616.7
	고당도과실생산지원	3.0	5	5	11.86	33.1
	과수우량표목생산	3.0	5	5	11.86	40.8
	과원매매	2.0	0	15~30	27.47	7,269.4
	과원임대차	무이자	0	5~10	21.95	1,140.8
	생산시설현대화	3.0	5	5	11.86	2,562.7
	시설원예품질개선	3.0	3	7	10.93	4,078.7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 설지원	3.0	5	5	11.86	237.3
	축사시설현대화	3.0	5	10	13.84	8,610.3
	자영업전대지원			1~5	11.93	298.2
	자영업창업용자	3.0	2	5	8.13	203.1
	장애인생활안정자금용자	3.0		5	5.13	153.8
장애인고용 촉진 및직업 개발기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용자	3.0		5	5.13	230.7

<표 IV-72>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친력산업 기반기금	농어촌진화사업용자	무이자	5	30	56.26	16.9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	4.5	5	10	2.30	1,704.0
	친력수요관리용자	3.0	3	5	12.01	1,682.0
	진원개발용자	4.5	3	5	11.06	1,105.6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지원	변동금리 (평균4.6%)	2	3	1.47	1,026.2
	개발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 금리-0.70%p	2~3	5~8	7.64	12,074.3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	분기별공자 금리-0.33%p	2	5	5.31	37,193.6
	동공단지업주기업지원	분기별공자 금리-0.33%p	2~3	5~8	5.53	1,105.2
	사업진환	분기별공자 금리-0.70%p	2~3	5~8	7.64	11,271.9
	소상공인지원	분기별공자 금리-0.33%p	1	5	4.16	20,803.3
	신성장기반	분기별공자 금리-0.33%p	2~3	5~10	5.68	67,615.6
	자산유동화지원	채권금리연동	-	5	2.07	826.8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분기별공자 금리-0.33%p	3~4	6~9	5.77	17,304.1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분기별공자 금리-0.70%p	3~4	6~9	7.11	7,105.9

&lt;표 IV-72&gt;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창업활성화	분기별공자 금리-0.70%p	2~3	5~8	7.64	76,419.4
	폐업자영업자진입지원	분기별공자 금리-0.33%p	1	5	4.16	4,160.7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인프라구축지원	3.0	2	3	5.72	171.6
청소년육성 기금	청소년시설용자지원	4.0	1	3~5	4.96	49.6
축산발전 기금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3.0	2	3	5.72	111.6
	낙농체험관광	0	3	7	27.06	108.2
	마필육성사업	농업인3.0, 일반인4.0	3	7	10.93	641.1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3.0	3	일시상환	8.83	11,829.3
	사료산업종합지원	생산자단체3.0, 일반업체4.0	시설자금3, 원료구매자금2	시설자금7, 원료구매 자금일시상환	10.93	5,464.4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3.0	3	5	12.01	240.3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0	3	일시상환	11.11	3,020.7
	조시료생산기반확충	3.0	3	7	10.93	1,136.6
	종축시설현대화	3.0	시설5	10	13.84	1,883.0
	종축시설현대화	3.0	운영2	일시상환	10.76	1,463.6

<표 IV-72>의 계속

		(단위: %, 년, 백만원)				
회계및기금명	세부사업	대출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보조율	보조액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농업인,생산자단체3.0,일반업체4.0	시설자금3, 운영자금1	시설자금7,운영자금 일시상환	10.93	13,114.6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0.0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기금	기술개발자금융자	4.0	2	3	2.57	0.0
	시설대체자금융자	2.5	3	5	12.25	355.4

## V. 재정용자의 표준화·단순화

### 1. 현행 재정용자제도의 문제점

- 재정용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재정용자 잔액은 113.1조원('07년말)으로 5대 시중은행 평균 자산(160조원)의 70% 수준에 달하나, 관리시스템은 후진적
    - 사업타당성 검증, 용자조건 설계기준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관리시스템 미비
  - 용자사업 관리가 특별회계와 기금별로 이루어져 관리책임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의 사업관리가 전년답습식이어서 제도혁신에 한계
    - 잠재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최종수혜자 만족도도 미흡
- 부처별로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이 천차만별
  - 2008년 현재 174개 사업의 용자조건이 원칙 없이 결정되어, 유사사업도 용자조건이 상이한 대출조건을 가지고 있음  
(예시) 여성 고용환경개선 대출금리(고용보험기금) : 1%, 2%, 3%(3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대출금리(고용보험기금) : 3%(1개)
  - 또한 대부분 고정금리로 운용중이어서 금리위험 관리가 미흡
    - 시중금리 인상시에는 재정부담(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시중금리 인하시에는 수요자의 혜택 축소(부담 발생)
- 용자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 용자사업의 존재를 아는 소수의 기업·개인만 수혜대상이고 대다수 중소기업·개인은 인지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즉,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발생
- 용자사업에 자금이 지출되지 않고 유보되는 자금이 많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낭비되는 것이 많음
- 재정용자사업을 위해 조성된 규모는 104조 3,768억원(2007년 기준)에 달하나 실제 운용은 22.00%(총 15개 부처가 32개의 기금을 통해 22조 9,677억원(2007년)의 재정용자사업을 시행)만이 매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가장 큰 59조 5,676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12조 1,018억원, 기획재정부가 10조 2,497억원, 농림수산식품부가 7조 9,6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조성규모가 가장 큰 용자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사업으로 59조 5,676억원이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12조 1,01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8조 7,056억원), 공무원연금기금(3조 9,868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3조 463억원) 등이 조성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조성된 용자규모 대비 2007년 지출된 용자규모의 비중, 즉 활용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 용자사업이 16.8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용자사업은 26.24% 등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10.06%), 과학기술진흥기금(11.60%), 국민체육진흥기금(11.21%), 지역신문발전기금(8.70%), 남북협력기금(10.66%)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요에 비해 많은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2. 재정용자 표준화를 위한 기준

□ 재정용자방식이든 이차보전방식이든 간에 재정용자사업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적정 지원 정도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지원이란 재정보조율처럼 정부 지원의 크기를 의미하며, 대출기간(상환기간) 및 보증 여부를 모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 이자율만을 고려한다면,

$$\text{이차보전의 경우: } \frac{\text{정부지원}}{\text{공급자이자율}} = \frac{\text{공급자이자율} - \text{수요자이자율}}{\text{공급자이자율}}$$

$$\text{재정용자방식의 경우: } 1 - \frac{\text{정부가 공급하는 이자율}}{\text{시장에서 적용되었을 이자율}}$$

□ 먼저 재정보조율을 이용하여 재정용자사업을 유형화할 수 있음 (제Ⅳ장 참조)

○ 전술하였듯이 재정보조율이란 각 사업의 대출기간과 대출이자율 등의 대출조건에 기초하여 정부가 사업수혜자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지표로 표시하는 것임

○ 담당부처별, 분야별, 사업별로 정부지원의 규모와 대상이 서로 다른데 이를 재정보조율을 통해 표준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음

-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지원의 크기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

○ 재정보조율을 이용한 유형화는 중복성, 보조규모, 효과성 측면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줌

□ 기존 사업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때, 그 사업에 맞는 지원 정도(재정보조율)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

- 요가 있음 (제V장 제3절의 대안 3과도 연관됨)
- 아래 기술하는 기준들은 중복되거나 대체성이 있는 것도 있음
- 이차보전방식으로서의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됨
- 지원의 성격에 따라 형평성 제고와 산업진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형평성이란 소외계층과 같이 민간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이 공급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취약 분야의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가용성과 재정보조 양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
  - 산업진흥이란 정부가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
  - 형평성 제고의 경우 본질적으로 대상과 분야에 따라 지원의 크기가 달라져야 하지만, 산업진흥에 비해 적정 재정보조율이 높을 필요가 있음
- 민간 금융기관과 유사경쟁에 있는 분야나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우량한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도 충분할 유인이 있어 일종의 경쟁관계가 형성
  - 이 경우 추가적으로 정부가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 자금의 회수에 대한 위험도(default ratio)가 높은 경우, 혹은 우량한 차입자를 선별하는 기능이 중요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야 함
  - 위험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민간에서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이 높을 것이므로 동일한 대출조건이라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명목적 재정보조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대상에 지원하는 경우 실질 지원 수준은 높다고 보아야 함

- 자금의 회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경우, 보조율이 높을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므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짐
-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간 보조율 차별이 심할수록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FTA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경우, FTA로 인한 피해자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함
-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하여 세분화된 보조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화된 보조율을 따르는 것이 필요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혜택의 차별 방지

### 3. 재정융자제도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

#### 가. 금리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제1안)

- 고정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리인상 시에는 재정 부담, 인하시에는 수요자 부담 발생
  - 이를 감안, 변동금리로 일원화하되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수요자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허용하되, 변동금리를 선택한 수요자에게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 스프레드만큼 대출금리 할인해 줄 수 있음 (아래 설명 참조)
- 정부가 고정금리 국고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 시중은행과의 금리스왑계약을 체결 가능

- 계약금액(원금)에 변동금리 (91일 만기 CD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원금)에 고정금리(IRS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취
- 수취한 고정금리 이자로 국고채로 조달한 금액(원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정부는 결국 'CD금리 + 국고채금리 - IRS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 됨<sup>17)</sup>
  - 정부는 3개월마다 변동하는 금리(CD금리) 지급하면서 국고채금리와 IRS금리의 차이만큼 스프레드를 지급하는 결과가 됨
  - 국고채금리와 IRS금리는 만기를 동일하게 계약할 것이기에 결국 그 차이인 스프레드(spread)는 만기까지 고정됨
  - 결국, 정부는 변동금리인 CD금리에 고정된 스프레드를 지불하게 됨
- 금리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정금리로 용자할 경우, 금리 상승시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함
  - 수요자가 변동금리(91일만기 CD금리 연동)를 수용할 경우에는 금리위험이 제거되므로, 변동금리를 선택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줄 수 있게 됨
- 2009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금리스왑의 예
  - 종가기준 CD금리: 2.43%
    - 국고채 수익률: 1년 만기 2.64%, 3년만기 3.74%, 5년만기 4.59%
    - IRS bid 금리: 1년 만기 2.77%, 3년 만기 3.40%, 5년 만기 3.66%
  - 정부가 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정부의 조달비용은 아래와 같이 됨

---

17) CD금리, 국고채수익률, IRS금리 모두 시시각각 변동하는 금리이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만기까지는 금리가 고정(fixing)됨. 그런데, 국고채수익률과 IRS는 만기가 1년 이상이어서 그 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되고, CD금리는 만기가 91일이어서 매 3개월마다 금리가 제조정됨. 따라서 통상 CD연동금리를 통상 변동금리라고 함(엄밀하게는 91일간은 고정금리)

1년만기:  $2.43\% + 2.64\% - 2.77\% = 2.30\%$

3년만기:  $2.43\% + 3.74\% - 3.40\% = 2.77\%$

5년만기:  $2.43\% + 4.59\% - 3.66\% = 3.36\%$

- 결국 고정금리 조달시에 비해 아래와 같이 조달비용이 낮아짐

1년만기:  $2.64\% - 2.30\% = 0.34\%$

3년만기:  $3.74\% - 2.77\% = 0.97\%$

5년만기:  $4.59\% - 3.36\% = 1.23\%$

- 정부채정용자액 중 상당부분을 금리스왑하게 되면, 금리스왑 시장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실제 할인 가능한 금리는 상기 계산된 금리(1년만기 0.34%, 3년만기 0.97%, 5년만기 1.23%)보다 줄어들 것임

-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며, 예시적으로 각각 0.2% 이내에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음

1년만기: 연 0.14~0.34%

3년만기: 연 0.77~0.97%

5년만기: 연 1.03~1.23%

- 용자조건(금리, 대출기간)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로 일원화하는 대안은 장점이 있으나 수요자의 선호도 낮아지는 단점이 문제

- 일정한 표준유형을 만들고, 이 중에서 택일하는 메뉴방식으로 개선 필요

나. 용자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3가지 금리와 만기로 단순화(제2안)

- 금리 수준을 3개 범주로 대폭 단순화

- ① 시장실세금리형 : 운영자금지원 등 단기자금 성격으로 시중 은행 여신과 대체적인 경우

V. 재정용자의 표준화·단순화 157

→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Base 금리<sup>18</sup>) 수준의 고금리),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만 지원

② 재정보조 유형 : 보조사업 대신 용자를 해주는 경우로서, 정책적 지원 목적이 강한 경우(예 : 통일·외교·국방 분야)

→ 무이자 수준 금리를 적용(「Base금리 - 5%」, 저금리)

③ 중간유형 : 농림수산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정책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 중간수준 금리를 적용(「Base금리 - 2~3%」, 중간금리)

□ 대출기간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설정

① 단기자금(2년 미만) : 운영자금 지원

<표 V-1> 분야별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 예시 : 제2안

(단위: %, 년)

분 야	금리 유형/ 대출기간 유형	대출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상환)
1. 통일·외교·국방	재정보조유형/ 장기자금	공자 금리 <sup>1)</sup> -5%p (약 1% 수준)	10(5/5)
2. 농림수산	중간유형/ 중기자금	공자 금리-2%p (약 3% 수준)	5(3/2)
3. 사회복지·보건			
4. 교육·문화·환경			
5.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시장실세 금리형/ 단기자금	공자금리 (약 5% 수준)	2(1/1)

주: 1) '08년 3분기 : 5.32%

18) Base 금리 : 국고채 해당만기물 유통수익률 ('09년 3월 27일 : 1년물 2.64%, 3년물 3.74%, 5년물 4.59%). 통상 만기가 길수록 시장금리가 높아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현상 반영 필요

- ② 중기자금(3~5년) : 시설건설·유형자산취득 자금 지원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차별화)
- ③ 장기자금(5년 이상) :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2안처럼 재정보조유형, 중간유형, 시장실세금리형으로 3가지 금리와 만기로 표준화하는 경우 단순화의 장점이 크나 각 부처의 개별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크며 표준화의 장점에 비해 개별 사업의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위축될 위험이 높음

다. 재정보조율 개념을 활용하여 용자조건 유형화(제3안)

- 금리수준과 대출기간을 종합하는 재정보조율(subsidy rate) 개념을 활용하여 사업유형별(분야별)로 용자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

<표 V-2> 분야별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 예시 : 제3안

(단위: %, 년)

분 야	기준보조율의 예 <sup>1)</sup>	대출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상환)
1. 통일·외교·국방	35	공자금리-4%p	20(5/15)
2. 농림수산	30	공자금리-4%p	10(5/5)
3. 사회복지·보건	20	공자금리-2%p	20(5/15)
4. 교육·문화·환경 <sup>2)</sup>	10	①공자금리-2%p	①10(5/5)
		②공자금리-4%p	②3(1/2)
		③공자금리-2%p	③3(1/2)
5.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sup>1)</sup>	5	①공자금리	①10(5/5)
		②공자금리	②3(1/2)

주: 1) 제시된 기준보조율은 하나의 예를 나타낼 뿐 본 보고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2) 교육·문화·환경,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는 각각 3가지, 2가지 용자조건 메뉴 중에서 선택권 보장

- 사업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재정보조율을 먼저 정하고 금리와 대출기간을 적용하는 방식
  - 재정보조율은 금리·대출기간에 따른 수혜자의 용자 혜택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 (제IV장 설명 참조)
  - 사업유형별(분야별) ‘기준 재정보조율’ 책정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과 유사한 개념)
  - ‘기준 재정보조율’에 부합하는 금리와 대출기간을 역산하여 도출한 후 사업유형별(분야별)로 적용
- 위에서 제시한 예의 조건은 시중금리(국고채 유통수익률) 급변 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 하락 → 대출금액과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치간 격차 증가 → 재정보조율 증가 효과
  - 반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공자금리 증가 → 공자금리 대비 할인폭이 동일할 경우, 공자금리 할인을 감소 → 재정보조율 감소 효과
  - 상기 상반되는 효과 중 어느 효과가 상대효과를 압도할지는 계량적인 분석이 더 필요함
  - 대부분 상쇄되어 무시해도 좋다는 계량적인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정보조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조정 필요
    - 상기 표의 수치가 고시된 시점 대비 시중금리가 일정수준(예, 1%) 이상 변동하면, 변동된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재정보조율을 다시 계산하고
    - 상기 계산된 재정보조율이 타깃 범위 내인지 확인한 후, 범위 밖이면 조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임

&lt;표 V-3&gt; 융자사업의 유형(예시)

대분류	중분류	회계·기금	'08용자액 (조원)
1. 통일·외교· 국방	① 통일·외교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0.9
	② 국방	군인복지기금	0.1
2. 농림수산	③ 농림수산	농특, 농안기금, 농지기금, 수 산발전기금, FTA기금, 축산 발전기금	3.4
3. 사회복지· 보건	④ 공적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2.9
	⑤ 노인·청소년	청소년육성기금	0.0
	⑥ 노동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 진기금	0.3
	⑦ 보훈	보훈기금	0.0
	⑧ 보건	응급의료기금	0.0
	⑨ 주택	주택기금	11.5
4. 교육·문화· 환경	⑩ 교육	사학진흥기금	0.2
	⑪ 문화·관광	체육기금, 관광기금, 방송발 진, 신문발전, 지역신문발전, 영화발전기금	0.3
	⑫ 환경	환특	0.2
5. 산업·중소 기업·과학 기술	⑬ 산업진흥 ·고도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0.3
	⑭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0
	⑮ 통신	정보통신진흥기금	0.2
	⑯ 에너지	에특, 전력기금	1.3
	⑰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기금	0.0
계			24.6

- 고영선·신인석(2000)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대안(제 3안)은 사업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재정보조율을 먼저 정함으로써 재정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점이 있음

V. 재정용자의 표준화·단순화 161

-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용자기간(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몇 개로 단순화하고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용자기간을 선택하도록 함
- 용자금리는 재정보조율, 용자기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공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됨
- 현재 다양한 수준을 보이는 보조율을 최소 5%에서 최대 35%까지 5%p 단위로 단순화
  - 이러한 단순화의 단점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선형적으로 정확히 어느 수준의 보조율이 적합한가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대략적인 보조율이 정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화의 장점이 훨씬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산업지원에 대한 보조율은 최소한으로 하고 외부효과가 큰 SOC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사업은 높은 보조율을 적용함
  - 각종 산업지원과 관련한 재정용자는 5%를 기준보조율로 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문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10%의 보조율을 제공하되 사양산업지원(농업관련 용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을 포함 30%의 기준보조율 설정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는 20%를 기준보조율로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심대한 계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북상황을 감안 통일, 외교,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수준인 35%를 기준보조율로 설정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 4. 재정용자사업 편성지침

-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매년 재정용자사업의 편성을 위해서는 용자조건의 결정, 용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용자사업 편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 기본방향

- 용자사업 중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하는 금리와 기간결정을 일차적으로 용자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른 사업유형의 대분류, 중분류 구분에 기초한 표준재정보조율을 매뉴얼에 규정하고 이를 기준보조율로 해서 5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실제 적용 보조율을 각 사업별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가칭) 재정용자심의위원회<sup>19)</sup>에 보고하고 공시
  -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는 재정용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설정된 각 사업별 재정보조율을 매년 심의하여 매뉴얼의 표준재정보조율을 수정하고 각 부처의 적용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권고
  - 이러한 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기초한 국가보조금의 91개 유형화된 기준보조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하는 것임
    - 기준보조율과 탄력적으로 활용되는 실제 차등보조율의 개념 원용

19) 새로 신설되는 동 위원회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제VII장에 나오는 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임

- 동 시행령 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따로 정함.”
-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 재정용자사업도 단기적으로는 180여개에 달하는 사업들을 5개의 대분류, 17개의 중분류, 그리고 여기에 용자목적의 형평성 제고와 산업진흥으로 구분해 총 3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재정보조율을 산정하고 이를 매뉴얼에 규정
  - 사업의 다기한 형식을 인정해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
  -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시행에서의 수정을 권고
  -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탄력적인 적용의 기준도 매뉴얼에 표준화

## 나. 편성지침

### 1) 적용대상

- 정부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융자금
  - 정부(공공기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차입자를 선별 지원
  -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고,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
  - 특정지원 대상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대부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융자금

## 2) 재정용자 편성지침

-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주체)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용자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정용자지원금 예산 반영
  - 지원대상자의 신청없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재정용자포털에 사전 고지
  - 중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내역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
-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용자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모든 재정용자사업은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
  - 재정용자사업 운용·집행상의 탄력성 제고 등을 위해 유사·영세 사업은 최대한 통폐합
    -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
  - 소득재분배 또는 외부효과 등 사전검토절차 이행 등 용자사업 수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 전년도 용자실적 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진행상황 등 검토
  - 일정시점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된 일몰제 대상 사업은 지원 중단
  - 신규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규모 축소
  - 재정용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

V. 재정용자의 표준화·단순화 165

- 재정용자금 목적외 사용 및 재정용자원리금 회수 부진 사업
- 재정용자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별표] 재정용자금의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설정
  - 유사한 성격의 용자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작성
  - 하나의 세부사업에 용자방식 또는 기준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용자사업이 여러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2 재정용자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신설: 재정용자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속 하에 재정용자사업관리위원회 설치하고 다음 사항 심의
  1. 재정용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유사사업의 조정
  2. 재정용자사업의 금리와 대출기간 등 용자조건
  3. 재정용자사업의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4. 재정용자사업 시행절차 및 사후평가
  5. 재정용자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6. 기타 재정용자사업의 제도개선

<표 V-4>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별표]의 예

사	업
<input type="checkbox"/> 특별회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환경개선특별회계 4. 교통시설특별회계 <input type="checkbox"/> 기금 1.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준보조율

## &lt;표 V-4&gt;의 계속

사	업
3. 공무원연금기금	
4. 과학기술진흥기금	
5. 관광진흥개발기금	
6. 국민주택기금	
7. 국민체육진흥기금	
8. 군인복지기금	
9.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 남북협력기금	
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 농지관리기금	
13. 대외경제협력기금	
14. 방송발전기금	
15. 보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7. 사학진흥기금	
1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기준보조율
19. 수산발전기금	
20. 신문발전기금	
21. 여성발전기금	
22. 영화발전기금	
23. 응급의료기금	
2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6. 전력산업기반기금	
27. 정보통신진흥기금	
2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9. 지역신문발전기금	
30. 청소년육성기금	
31. 축산발전기금	
3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3) 재정용자 대상사업 선정 관리 기준

- 재정용자사업의 선정기준
  - 재정용자사업의 목표와 대상: 정책목표의 정당성과 필요성
  - 재정용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민간 금융시장의 현황: 민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판단
  - 민간 금융시장과 재정용자사업의 역할 분담과 상충 가능성 분석
    - 재정용자사업을 통한 민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보완방법
    - 재정용자사업으로 인한 민간대출의 감소규모
    - 재정용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 채무보증이 아닌 재정용자의 형태를 택해야 하는 근거
- 재정지원의 형태
  - 적정 재정보조율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적정 용자기간의 설정
- 용자사업의 관리
  - 채무불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DB 구축
  -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4) 재정용자사업 평가 기준

- 재정용자사업의 폐지/축소 기준
  - 재정용자사업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 민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자체적으로 해소된 경우
  -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불완전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 용자사업의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대체정도가 높은 경우
- 재정용자사업 통합 기준
  - 재정용자사업간 목표와 대상이 유사한 경우
- 재정용자사업관리체계 효율화 검토
  - 재정보조율 수준과 용자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수준 검토 및 채무상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

## VI. 재정용자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 시스템 구축

###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 가. 구축의 주요 변수

- 거시적인 총량 자료와 개별 사업별 미시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구축함
  - 거시적인 총량 자료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임
    - 이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분석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별 미시적인 자료는 개별 사업 담당자가 업무의 프로세스와 자료를 관리하는 수준임
    - 이에 대해서는 자금을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내부관리 자료로서의 의미와 대국민 홍보자료로서의 의미를 병행함
  - 행정부 내부의 D/B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과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한편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도 부여함
    - 특히 과거 재정용자 사업이 정책자금으로서 특혜금융이라는 오해도 야기한 만큼 절차와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매우 중요함

- 이에 주요 수요자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 개별 부처와 사업 관리 담당자
  - 정책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의 연구 및 정책제안
  - 자금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나. 종합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요소

- 이미 구축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사이트에 연계하고 이를 활용함
  - 이미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포털 사이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http://www.digitalbrain.go.kr/>)
  - 이 사이트에 메뉴로써 링크하여 운영하도록 함
  - 예컨대 이 사이트에 “재정용자” 메뉴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정리함
- 재정용자계획의 수립과 공표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
  - 국가재정법에 의해 매년 2월~3월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시기에 재정용자와 관련한 재정용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용자가 별도의 항목을 갖도록 함
- 연차보고서 발간
  - 매년 개별 사업부서에서 용자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가 단위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 그리고 이 연차보고서에서는 반드시 성과 평가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

- 메뉴얼 발간
  -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쉽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발간하여 홍보함
- 교육 및 홍보
  - 용자사업의 절차가 복잡하여 담당자가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뉴얼을 발간하면서 이를 토대로 교육을 하도록 함
  - 교육 대상은 대상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실시함
    - 부처별 담당 공무원
    - 용자 활동을 하는 기관 : 공공기관, 금융권
    - 자금 수요자
- 성과 평가
  - 용자사업의 경우 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 관행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있음
  - 용자 활동을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더 이상 수요가 없거나 지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함
    - 사업의 방식이나 절차를 전환하는 필요성을 평가함
    - 대상의 적합성을 평가함
    - 용자 사업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러한 평가 결과가 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D/B가 될 것임

#### 다. 용자자금 관리 체계의 재구축

- 용자자금의 관리 체계의 경우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가칭 재정용자사업관리위원회를 두어 총괄적인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함

- 2단계: 기획재정부의 담당과에서 이를 총괄 관리함
- 3단계: 개별 부처에서 관리 기능과 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함
- 4단계: 실제 자금이 집행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이나 금융기관

1) 재정용자사업관리위원회 (신설될 경우)

- 재정용자사업관리위원회의 기능은
  - 용자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의 기능을 수행함
    - 개별 사업의 용자 조건과 규모를 통제함
  - 재정용자사업의 설계·집행·사후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
    - 재정용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유사 사업의 구조조정
    - 사업별 용자 조건(금리, 대출기간)에 대한 기준 제시
    - 사업 시행 절차 및 사후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재정, 금융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주무 부처의 참여를 보장함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함
  -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국장급)이 당연직으로 참여
  -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
  -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이 참여
  -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참여

2)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과 : 향후 확대 개편이 필요함

- 현재 용자사업이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과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용자제도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다시 부각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장급의 “재정용자 담당관” 신설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 수준을 강화함

### 3) 개별 부처의 000국 00과 00담당

- 개별적인 사업을 개별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담당 부처의 관리를 강화

### 4) 용자사업 집행 기관

- 현재 용자사업은 복잡한 단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
  - 각 사업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적 활동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함

## 2. 포털시스템 구축

- 포털시스템의 구축도 거시자료의 구축과 미시자료의 구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음

### 가. 거시자료로서의 관리 체계

-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접근되는 것이며, 주로 기획재정부와 같은 총괄적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리하게 됨
- 정부의 역할과 재정 투융자
  - 시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용자를 설명함

- 정부활동의 재원
  - 용자 활동을 하는 사업의 재원 구성을 설명함
  - 일반회계 지원금, 국채 발생, 이자 수입 등을 구분하여 소개함
- 재정 기능과 재정투용자의 기능
  - 보조, 용자, 출자, 출연의 의미를 구분함
- 재정투용자를 활용한 사업
  - 용자사업의 유형
  - 용자사업의 의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함
- 용자자금의 성격 설명
  - 개념
    - 자금을 적립하고 용자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받는 활동이 갖는 의미
    - 보조금에 비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장치임을 강조함
  - 필요성
    - 민간 금융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자금을 지원함
  - 효과
    - 국민경제적 효과를 가능한 계량화하여 성과를 보여주도록 함
  - 재정투용자 활동의 원칙
    - 이러한 원칙을 정립하고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예측 가능한 몇 가지의 원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시장 기능의 실패에 대한 보충성
    - 지원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의 적합성
    -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성
    - 절차와 과정에서 있어서의 투명성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의 총괄 규정
    - 개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을 구분하여 제시함

- 우리나라 용자자금의 연혁과 발전 과정
  - 연혁
    - 가능한 초기의 자료를 추적하여 정리함
    - 특히 과거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실적을 정리함
  - 변화 과정
    - 재정 활동에서 융자 활동이 갖는 의미의 변화를 소개함
    - 특히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논리를 소개하여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함
- 주요 외국의 용자자금
  - 주요 외국의 정책을 소개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재정용자리포터’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바, 이를 소개함
  -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 위기 시에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바, 이를 소개함
- 부처별 용자자금의 운영 현황
  - 자금별 조성 규모
    - 한 부처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총괄적으로 보여줌
    - 특별회계, 기금 등 종류를 구분함
  - 자금별 운영규모
    - 적립금과 운영 규모를 구분하여 정리함
    - 이때 시계열별 정리를 하여 수요의 변화를 정리함
  - 자금별 금리 체계
    - 자금별로 다양한 금리 체계를 정리함
    - 여기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원리와 논리를 소개함
  - 사업 집행률

VI. 재정용자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시스템 구축 175

- 적립금 대비 실제 용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집행률을 공개함
- 이를 통해 집행률이 낮은 자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 과제가 도출되도록 함
- 대손율
  - 용자를 한 다음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채권이 되는 대손율을 공개함
  - 이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금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자금별 여유 자금의 규모와 활용
  - 여유자금의 규모를 확인함
  - 여유자금의 활용을 확인함
  - 지나치게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 이를 다른 자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됨
  - 특히 여유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자금의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용자성 자금 자체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음
  - 한편 여유자금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정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함
- 용자자금의 일반적인 운영 절차 (편람과 지침의 기능)
  - 재정용자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함
  - 전반적인 관리 절차를 소개함
  - 예산 결정과의 관계를 설명함
  - 금리 수준의 결정 논리를 설명함
  - 자금 집행의 절차를 설명함

### 나. 미시적인 자료로서의 관리 체계

- 개별적인 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료를 정리함
  - 예컨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개별 사업 단위로 정리함
  - 이러한 미시적인 자료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에 대한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수혜자에 대한 사업 안내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구성한다는 것임
  - 개별 사업별로 포함되어야 할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sup>20)</sup>

#### <예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
  - <총계적 자료>
    - ① 연도별 조성 내역
    - ② 연도별 지출 내역
    - ③ 연도별 연체금 및 대손처리 내역
  - <관리적 자료>
    - ④ 용자절차
      - 신청 서류의 제공
      -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신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 도입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OPEN 시스템을 도입함
    - ⑤ 용자신청 자격 조건
    - ⑥ 지원 내역
    - ⑦ 금리 및 상환 조건
    - ⑧ 용자를 위한 공모 시기
    - ⑨ 연체 상환 절차
    - ⑩ 대손률
    - ⑪ 담당자 연락처

20) 별첨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함

- 특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함
  - 자금 수요자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용자 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맞춤형 자금 지원의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개별 자금의 활용을 위한 신청 자체가 이러한 사이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웹상에서 원 스탑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관리 방안과 홍보

- 용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홍보에 있어서 다음의 활동이 중요함
  - 연차보고서
  - 매뉴얼 발간
  - 교육 및 홍보
  - 성과 평가

#### 가. 연차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연차보고서에서는 총량적인 자료 관리로서의 DB 구축과 미시적인 사업관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총량관리는 용자 활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
  - 미시적인 사업 관리는 개별 사업 단위의 자료임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사업별 용자사업의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나. 재정용자사업의 매뉴얼 발간

- 사업 담당자에게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의 목적
  - 용자와 다른 정책 수단의 비교
  - 자격자 관리
  - 용자 조건의 관리
  - 용자 절차

#### 다. 교육의 실시

-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부처별 용자 담당공무원이 재정 활동 중에서 용자 활동을 하는 의미를 인식하도록 해야 함
  - 기금, 은행 등의 담당자와 같은 자금집행기관이 용자 활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용자를 이해하도록 교육함
-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보고서와 매뉴얼에 입각한 운영방안 설명
  - 사업의 목적
  - 용자와 다른 정책 수단의 비교
  - 자격자 관리
  - 용자 조건의 관리
  - 용자 절차

#### 라. 만족도 조사 및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 용자를 위해 자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실시가 매우 중요함

- 기금사업 평가 시 용자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나 다른 자금으로 시행되는 경우 별도로 평가
  -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PART에 근거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 평가뿐만 아니라, 존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함
  - 자격 관리 평가
  - 금리와 상환 조건 평가
  - 절차 간소화 방안 평가
- 재정용자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정책실효성을 평가함
  - 그리고 금리와 상환 조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 절차 간소화의 방안에 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지도록 함
- 사업이나 정책 유형별 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2007년도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75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특이함
    - 일정한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고 있음<sup>21)</sup>
  -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관련 용자 활동의 실효성, 농업 관련 용자 활동의 실효성 등과 같이 프로그램별 평가 활동이 필요함

21) S, A, B, C의 4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음. 등급의 분포를 보면 S는 30%, A는 50% B는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예는 <부록>으로 제시함

## VII. 결 론

- 재정용자제도는 규모와 역할 측면에서 볼 때,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 2008년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용자한 규모는 약 24.6조원 수준이며, 2007년말 기준 용자자산은 113.1조원 규모임
- 현재 재정용자제도의 형태는 기금의 역할 및 활용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재정용자제도는 공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용자하고 미래에 상환받는 구조이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편리
  - 1980년대부터 기금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여 1993년에 114개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통합과 폐지 정책에 의해 점차 그 수가 감소
- 개별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신속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재정용자사업도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수행됨
  - 이러한 재정용자제도의 모습이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용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투자 은행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방만한 재정용자제도의 운용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음
- 특히 제IV장에서는 재정용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보조율이란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음
  - 재정보조율은 각 재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하나의 수치로 환산한 것
  - 재정보조율이 높다는 것은 그 사업으로부터의 정부지출(혹은 수혜자의 수혜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
  - 현행 재정보조율을 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음
    - 이러한 차이가 적절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형성된 것이라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임
  - 자료가 확보되었을 경우 향후에 연구를 확장할 계획
    -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용자제도의 보조율만 산출하였는데, 보증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의 보조율도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미국방식처럼 채무불이행 자료를 확보하여 대손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재정보조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재정용자사업 단위로 출연율도 포함시켜 지원의 규모를 보는 것도 필요함
- 제V장에서는 제IV장 분석에 기초하여 재정용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
  - 재정용자제도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

- 재정용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부처별로 용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이 천차만별
- 용자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 재정용자제도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 금리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
  - 용자조건(금리, 대출기간)을 단순화: 메뉴를 통한 단순화 방안과 재정정보조율을 이용한 유형화하는 방안으로 세분됨
- 재정용자사업의 매뉴얼 및 편성지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제VI장에서는 재정용자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 논의함
  - 종합관리체계의 경우 거시적인 총량 자료와 개별 사업별 미시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연차보고서 및 매뉴얼 등의 발간을 제안
  -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서술
- 재정용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는 반드시 새롭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특히 고영선·신익석(2000)의 경우 유사한 문제의식 및 분석과 함께 체계적 관리를 주장
    -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차별성과 의의가 있음
  -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용자제도의 주된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정책당국의 결단이 필요
- 마지막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재

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재정용  
자제도의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용자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정용자의 개편을 추진하기  
에는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가능
- 하지만 재정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용자제  
도의 효율성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필요  
- 사업간 형평, 일관된 기준, 체계적 관리 및 홍보 없이 진행  
되는 재정용자사업은 향후에 더욱 큰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참고문헌

- 고영선·신인석, 『재정용자제도의 개선방안』, KDI, 2000.
-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005년 10월.
-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006년 11월.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2008년 10월.
-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
-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7.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용자제도 개선방안』, 2008
- 김지영·박상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 이차보전방식  
으로의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김현욱·박창균·임경묵,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용  
개선 방향』, 차문중(편),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KDI, 2007.
- 이기영,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성명재·  
박형수(편),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이원희, 「재정용자자금의 운영개선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 2008.
- 한국재정연구회, 『저금리시대의 재정용자제도 개편방향』, 2002.
- 황선호, 「재정용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ABO 재정브리프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pp. 15~27.
- 황성현, 「한국의 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 『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3, pp. 103~135.
- 황성현·이기영·박정수, 「재정용자제도의 개편방안」, 『경제학연구』,

- 제50권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2.
- 일본재무성, 『재정투융자 리포트 2008』  
(<http://www.mof.go.jp/zaito/zaito2008.html>)
- Elliott, D. J., *Budget for Credit Programs: A Primer*, Center on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2004
- Fred, J., “Government Loan and Guarantee Program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983.
- Gale, William G., “Collateral, Rationing,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n Credit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 3983, 1989.
- Gale, William G., “Federal Lending and the Market for Credi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uly 1990, pp. 177~193.
- Gale, William G., “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91, pp. 133~152.
- Li, W., “Government Loan, Guarantee, and Grant Programs: an Evalu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84(4), 1998, pp. 25~51.
- U.S. Government,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alytical Perspectives*, 2009

## <부록 IV-1> 주요 부문별 현황

1) 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표 IV-1>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증감률	비고
경상 및 자본지출	140,372	125,760	△14,612	△10.4	
융자지출	3,131,500	2,902,400	△229,100	△7.3	

### <부표 IV-2> 중소기업 대출금리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
중소기업	6.21	5.62	5.92	6.40	7.27	7.09
대 기 업	6.07	5.28	5.24	5.88	6.77	6.42

주: 한국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 매년 12월중(해당월) 신규대출 가중평균기준

자료: 중소기업(2008), 『중소기업관련통계』에서 재인용

### <부표 IV-3> 중소기업 대출 현황(잔액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2008.2
중소기업	237.9	245.2	258.0	303.3	371.5	383.0
대 기 업	42.5	40.1	44.7	40.8	56.9	62.6

주: 외은지점 포함,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중소기업(2008), 『중소기업관련통계』에서 재인용

<부표 IV-4>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현황

(단위: 조원, 잔액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용보증기금	19.6	20.3	23.3	25.7	28.4	30.5	29.2	28.5	28.5	28.0
기술신용보증기금	11.3	12.5	13.7	14.1	14.4	13.4	11.5	11.2	11.3	11.8
지역신용보증재단	0.6	1.0	1.5	1.9	2.3	2.6	3.4	4.0	4.6	

<부표 IV-5>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5잔액	'06잔액	'07. 12월		'08년 1월	
			정부출연	잔액	정부출연	잔액
신 보	291,528	285,243	1,300	285,422	600	283,003
기 보	115,013	111,508	2,000	112,459	800	110,244
지역신보	34,133	40,327	154	45,867	180	
계	440,674	437,078	3,454	443,748	1,580	393,247

<부표 IV-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조건

(2008. 3월말 기준)

사 업 명	규모 (억원)	지원한도 (억원)	금리 (기준)	대출기간 (상환/거치)	지 원 내 역	
○중소벤처창업자금	6,400	20	공자기금 대출금리 △0.53%p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업력 5년 미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200	10		8년/3년	설비 및 운전자금	
경영혁신 자금	시설개선	7,904		30	8년/3년	시설자금 (일부운전자금) (업력 5년 이상)
	지식서비스	1,000		10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기업간협력	2,527		소요액의 80~100%	10년/5년	시설 및 운전자금
소 계	11,431					

## &lt;부표 IV-6&gt;의 계속

사 업 명	규모 (억원)	지원한도 (억원)	금리 (기준)	대출기간 (상환/거치)	지 원 내 역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원부자재구입	1,750	5		3년/1년	원부자재 구입자금
	재해복구	500	10	공자기금 △1.23%p	3년/1년	재해복구 운전자금
	수출금융	663	10	공자기금 △0.53%p	1년이내	수출품 생산자금
	소 계	29,044				
구조 조정 자금	희생특례	200	10	공자기금 △2.27%p	3년/1년	기업 경영정상화지원
	사업전환	1,100	30	공자기금 △0.53%p	8년/3년	시설 및 운전자금
	무역조정	300	30		8년/5년	시설 및 운전자금
	소 계	26,344				
○ 소상공인지원자금	2,400	0.5	공자기금 +0.12%p	5년/1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자산유동화지원사업	400	50	채권금리 연동	5년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연2회)	
합 계	26,344					

주: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며, 업체의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97년 1.7조원에서 '99년 3.0조원으로 76.5% 증액하여 중소기업 자금에로에 대응
- 정책자금 잔액(조원) : ('97) 5.9 → ('99) 7.5(27%↑)
    - 정책자금(잔액)이 은행 중기대출 대비 비중도 '97년 5.9%에서 '99년 7.5%로 증가('07년 3.3%)
  - 정책자금(공급) 비중(%) : ('97) 3.0 → ('99) 3.8% / 참고. '07 0.75%

## &lt;부표 IV-7&gt;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및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은행중기대출 (잔액)	57.3	59.4	78.9	130.2	165.5	202.9	237.9	245.2	258.0	303.3	371.7	
순증(조원)		2.1	19.5	51.3	35.3	37.4	35.0	7.3	11.8	45.3	68.4	
증가율(%)		3.7	32.8	65.2	27.1	22.6	17.2	3.1	4.8	17.6	22.6	
정책자 금	잔액	3.4	4.5	5.9	6.1	6.2	7.9	8.4	9.5	10.7	11.6	12.2
	공급	1.7	2.2	3.0	2.2	2.7	2.6	2.7	2.7	3.2	2.8	2.8
정책자금비중 (%)	5.9	7.6	7.5	4.7	3.7	3.9	3.5	3.9	4.1	3.8	3.3	
명목 GDP	491	484	529	579	622	684	725	779	811	848	901	
중소제조 GDP	201	197	228	268	282	317	340	383	419	447	-	

주: 1. '99년 이전에는 특수은행(산은, 수은 등) 중기대출 제외 수치  
2. '09년 정책자금 공급규모 : 4조원 ('08 중기 대출 잔액의 0.9%)

- 중소기업 금융 총 규모(07년말, 잔액기준) : 383조원
- 간접금융(374조원) : 시중은행 대출 371.7조원, 중진공 직접 대출 2.4조원
    - \* 신용보증(44조원) : 신보 28.5조원, 기보 11.3조원, 지역신보 4.6조원
    - \* 정책자금(30조원) : 중진공 12.7조원, 타부처 5조원(추정), 지자체 12.2조원
  - 직접금융(9조원) : 주식 4.6조원, 회사채 0.7조원, 벤처투자 3.3조원

[부 그림 IV-1]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



주: 정부 中企 R&D 지원예산 : 1.2조원(중기R&D투자 4.3조원)

- 중소기업분야 분야 재정지원 규모는 정부예산 총지출의 2.1% 수준
  - 中企 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대폭 축소된 추세

<부표 IV-8> 중소기업 분야 재정비중 (단위: 조원)

	'03	'04	'05	'06	'07	'08
정부예산 총지출(a)	118.1	120.1	173.5	186.8	238.4	257.2
中企 분야 지출(b)	5.6	5.6	5.8	5.7	5.4	5.3
중기비율(b/a, %)	4.7	4.7	3.3	3.1	2.3	2.1

- 중소기업 재정지출 분야 중 상당부분이 창업·개발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융자)이 포함
  - \* 중기 재정지출 중 평균 정책자금 3.2조원 내외(60% 수준) 포함
  - \* 회수를 전제로 한 재정지출(정책융자방식)은 타 분야 보조금지출방식보다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혜택 및 의무를 부여하여 도덕적·효율적
- 중산자금 정책자금은 1.4% 수준 이차보전 정부출연으로 12조원의 대출금 운용
  - 재정 이차보전 = 시중조달(채권발행) 금리 - 정책자금 금리 (정부고시금리)

<부표 IV-9>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비 (단위: 억원, %)

	'01	'02	'03	'04	'05	'06	'07
신규융자(a)	26,910	29,623	34,486	33,870	36,403	31,645	31,315
융자잔액(평균, b)	89,005	99,965	108,871	111,716	116,950	122,235	125,413
이차보전소요	1,379	1,454	1,546	1,386	1,958	1,986	1,761
정부출연금(c)	1,379	1,454	1,546	377	158	1,645	1,761
이월액활용	-	-	-	1,009	1,800	341	-
신규융자 對 재정출연 비중(c/a)	5.12	4.91	4.48	1.11	0.43	5.20	5.62
융자잔액 對 재정출연 비중(c/b)	1.55	1.45	1.42	0.34	0.14	1.35	1.40

주: 평균 : 신규융자대비 재정출연 비중 3.84%, 융자잔액대비 재정출연 비중 1.09%

- 그간 정책자금은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생산적 복지(산업 정책+복지정책) 역할 수행 중
  - \*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활성화 → 일자리 창출(최대 복지정책 역할) 유도

2) 농업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

가) 농지관리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 정책 목표: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 시장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규모화 등 조속한 구조개선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용자 지원 필요
-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사업)
  -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하여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그러나, 농업인들의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시장 기능으로만 규모화를 추진할 경우 구조개선 지연으로 경쟁력 확보 및 주곡 안정적 공급 등 우리 농업의 지속성 유지 차질
    - 따라서 정부 재정용자 지원으로 조속한 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추진 필요

<부표 IV-10> 영농규모화사업의 용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총대여액	총회수액	대여잔액	비 고
합 계	6,256,843	3,801,610	2,455,233	
농지매매사업	3,936,617	2,072,586	1,864,031	
농지임대차사업	1,555,642	1,017,887	537,755	
농지교환·분합사업	77,677	60,486	17,191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686,907	650,651	36,256	'93까지 지원

주: 2007년 용자잔액 기준

<부표 IV-11> 영농규모화사업의 용자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312,060	309,212	476,941	434,146	340,000	320,500
집 행(B)	312,060	309,212	476,937	434,112	340,000	
집행률(B/A)	100	100	99.9	99.9	100	

주: 1. 비중('08년기준): 기금 12,504억원 중 용자 3,205억원(비중 25.6%)  
 2. 재정보조율 관련: 영농규모화사업('08예산 : 3,205억원) : 용자 100%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성실경작 농업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부채가 심화되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영회생 도모 필요
- 시장에만 맡길 경우 연쇄적 부도 등으로 사회 문제화 및 또 다른 사회적 경비 지출 확대 불가피

<부표 IV-1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용자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대여액	총회수액	대여잔액	비 고
합 계	137,485	46	137,439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37,485	46	137,439	

주: '07년 용자잔액 기준

<부표 IV-1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용자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	-	-	42,200	95,300	119,500
집 행(B)	-	-	-	42,200	95,285	
집행률(B/A)		-	-	100	99.9	

주: 1. 비중('08년기준) : 기금 12,504억원 중 용자 1,195억원(비중 9.6%)  
 2. 재정보조율 관련: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08예산 : 1,195억원) : 용자 100%

□ 농지관리기금융자금 현황

<부표 IV-14> 농지관리기금 자금별 업무 요약

구 분	내 용
농지매매자금	부채지주, 고령·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일정규모(논 1.5ha, 밭 1.0, 시설 0.3) 이상의 전업농육성대상자들에게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매도
농지임대차자금	고령·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5~10년)하여 임대차선급금을 지급하고 일정규모(논 1.5ha, 밭 1.0, 시설 0.3) 이상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농업인은 매년 임차료 균분상환
농지교환분합자금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지를 교환·분합시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금	재해,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 *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 자격 부여

<부표 IV-15>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한국농촌공사)

(단위: 억원)

대상자금		'08. 6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대출 금리	지원조건
규모화 자금	농지매매자금	19,037	2,390	2%	15~30년 균분상환
	농지임대차자금	5,238	796	-	5~10년 균분상환
	농지교환 분합자금	160	19	2%	10년 균분상환
	농지구입자금 <sup>1)</sup>	316			
	합 계	24,751	3,205		
경영안정 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974	1,195	2)	3)
	합 계	1,974	1,195		
총 계		26,725	4,400		

주: 1) 농지구입자금은 '93년까지 지원  
 2) 금리방식이 아닌 농지매도가의 1% 범위내 임차료 납부방식  
 3) 매각농지 임대(5~8년)

##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 정책목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 촉진
- UR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WTO 체제 아래에서 농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저율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이 증가하고 시장 개방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국내 농업 및 시장의 수급시스템에 대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
  -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영세성 등 국내 농업 환경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의 적응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한 실정으로 국내 농업 및 시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투입 필요
- 농안기금의 주요 사업인 정부비축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및 산지유통개선사업 중 정부 비축사업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인 반면, 식품산업육성 및 진흥 등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로 생산자(단체)와 민간에 대한 용자금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농안기금의 수혜자는 소득이 불확실한 농업계층으로 대내외 환경과 기후 등 자연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고 생산물의 규모와 가치 변동폭의 불안정성은 존치함에도 소비자(국민)의 농식품 소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소득(재원)의 효과적인 재분배 역할 필요
- 기금 용자의 기능
  - ① 농산물 가격안정 (민간의 가격안정 지원)
    - 수매지원
      - 성출하기 생산자(단체) 및 저장·가공업체에 농산물수매자금 용자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채소·과실 수급안정
      - 가격 등락폭이 심한 채소·과실류의 계약재배, 수매, 산지

폐기 등 지원

○ 인삼계열화지원

-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및 유통개선

○ 농산물의 수출 촉진

- 수출유망 우수농산물의 원료구입, 포장, 수송 등 수출부대비 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② 농산물유통 효율화

○ 우수 농산물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한 농산물유통 개선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산지유통 활성화

○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대한 출하 촉진을 통한 소비지유통 활성화

<부표 IV-16> 농안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월말
계 획(A)	1,751,337	1,581,549	1,436,760	1,396,630	1,394,184	1,468,806
집 행(B)	1,693,762	1,504,275	1,381,519	1,388,706	1,375,620	1,276,247
집행률(B/A)	97	95	96	99	99	87

주: 1. 2008년 6월 현재 용자잔액 3,141,087백만원

2. 비중('08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 기금 2조 1,468억 중 용자 1조 4,689억원 (비중 68%)

□ 기금용자금 현황

- 농식품시설현대화('08 예산: 550억원) : 용자 50~80%
- 친환경농산물소비지활성화('08 예산: 24억원) : 용자 80%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08 예산: 7억원) : 국고 40~50%, 용자 30%, 지방비 50%, 자부담 30~50%

&lt;부표 IV-17&gt; 농안기금 자금별 업무 요약

구 분	내 용
산지유통활성화 - 산지유통활성화 - 원예브랜드육성 - 발작물브랜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 등에 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으로 규모화, 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li> <li>▪ 주산지 중심의 원예, 발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생산·유통 혁신유도 및 경쟁력 제고</li> </ul>
소비자유통활성화 - 소비자유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출하촉진자금 지원</li> <li>▪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자금 융자지원</li> </ul>
농산물유통개선 - 농식품시설현대화 - 저온유통체계구축 - 친환경소비자유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또는 개선 희망자에게 자금융자 지원 및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li> </ul>
민간가격안정지원 - 수매지원 - 채소수급안정지원 - 동절기수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저장·가공 시설 운영자에게 수매자금 지원, 채소수급안정 및 동절기수급안정 지원</li> </ul>
인삼산업지원 - 인삼계열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 생산·가공·유통 등의 계열화로 품질경쟁력 제고, 유통개선으로 인삼경작 농가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li> </ul>
농산물수출촉진 - 운영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한식세계화 지원, 원료구입 및 포장·수송 등 수출부대비 융자지원</li> </ul>

- 산지유통 활성화지원('08 예산: 5,700억원) : 융자 100%
- 농산물브랜드육성('08 예산: 132억원) :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중 원료매입 및 개별시설 융자 100%, 나머지는 국고 40%, 지방비 40~60%, 자부담 0~20%
- 소비자유통활성화('08 예산: 1,778억원): 융자 100%
- 수매지원('08 예산: 2,201억원): 융자 80%

- 채소수급안정('08 예산: 268억원): 용자 80%, 자부담 20%
- 동절기수급안정('08 예산: 6억원): 용자 100%
- 인삼계열화지원('08 예산: 522억원): 용자 80%, 자부담 20%
- 운영활성화지원('08 예산: 3,500억원): 용자 100%

<부표 IV-18> 2008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억원)

대상자금	'08.11 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대출금리	지원조건 (거치/상환)
산지유통 활성화	11,053	5,832	- 산지유통활성: 1~3% - 원예브랜드 : 3%	- 산지유통활성: -/1~3 - 원예브랜드 : -/5
소비자유통 활성화	1,803	1,778	- 소비자유통활성: 3~4%	- 소비자유통활성: -/1~3
농산물유통 개선	1,509	581	- 시설현대화 : 3~4% - 친환경소비지 : 3% - 저온유통체계 : 3%	- 시설현대화 : 3/7 - 친환경소비지 : -/5 - 저온유통체계 : 3/7
민간가격 안정지원	11,393	2,475	- 수매지원 : 3~4% - 채소수급 : 무이자 - 동절기수급: 1.5%	- 수매지원 : -/1~5 - 채소수급: 10/거치기 간내 - 동절기수급: 3/7
인삼산업 지원	1,930	522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 무이자 * 수매자금 : 3%	5년거치/거치기간내
농산물수출 촉진	3,292	3,500	- 운영활성화 : 4% (농업인 : 3%)	- 운영활성화 : -/1
계	30,980	14,688	-	-

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FTA)기금의 재정용자 현황과 특징

- 정책목표 :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재정용자<sup>22)</sup>의 필요성

- 협정의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FTA기금의 기능

① 지원원칙

- 개방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안정 지원
  - 칠레산 수입으로 국산가격 하락시 일정부분 피해지원
  - 관세 감축품목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
  -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집중 육성
-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관리를 추진

② 추진방향

- 지원대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투·융자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투·융자 부실화 방지
  -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조정, 통폐합 등 엄격한 피드백 제도화
- 투·융자 사업에 대한 관련 주체의 책임성 향상
  -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사업대상자의 수용역량을 강화

---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 제고

○ 투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확보

-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외부 참여 확대
-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현장여론 수렴 등

③ 추진방식

- 지방농정 활성화 및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추진사업과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전국단위 동일기준 적용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과원규모화사업 등)

-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종합사업계획에 의한 일괄지원(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 FTA기금 용자현황

<부표 IV-19> FTA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획(A)	63,885	55,552	59,980	47,066	179,417	182,076
집행(B)	39,213	52,597	59,465	47,066	-	-
집행률(B/A)	61.4	94.7	99.1	100.0	-	-

주: 1. '07년 현재 용자잔액: 146,735백만원

2. 비중('08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 기금 5,162억원 중 용자 1,794억원 (비중 34.8%)

## &lt;부표 IV-20&gt; 자금별 업무요약

주요 사업명	사 업 개 요	'08예산 (백만원)	지원기준
○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 설현대화 등 지원	23,405	○ 기금보조 25%, 기 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 과수우량 묘목생산	○ 중앙모수포로부터 모수를 분양받아 우량규격묘(품질 보증)를 생산·보급	1,082	○ 기금보조 60%, 기금 융자 20, 자부담 20
○ 과원규모화	○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 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의 매매 또는 임대차 지원	35,175	○ 기금융자 100%
○ 고당도과실 생산시설 지원	○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공질필름 재배로 당도를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공급	1,395	○ 기금보조 25%, 지 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시설원예 품질개선	○ 수출잠재력이 있는 원예전 문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증·개축 지원	39,180	○ 기금보조 20%, 기금 융자 60, 자부담 20
○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 설지원	○ 송아지 생산 단지 및 공동 사육시설을 특화하여 품질 균일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1,984	○ 기금보조 20%, 기 금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축사시설현 대화	○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 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 력 제고	77,196	○ 기금보조 20%, 기금 융자 60, 자부담 20

## &lt;부표 IV-21&gt;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백만원)

구분	'08.6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대여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55,889	23,405	1.5	3.0	5	5
과수우량묘목생산	1,444	1,082	1.5	3.0	5	5
과원규모화	126,452	35,175				
- 매매	105,287	29,400	2.0	2.0	-	15~30
- 임대차	21,165	5,775	무이자	무이자	-	5~10
고당도과실생산지원	-	1,395	1.5	3.0	5	5
시설원예품질개선	-	39,180	1.5	3.0	3	7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	1,984	2.9	3.0	5	5
축사시설현대화	-	77,196	1.5	3.0	5	10
계	183,785	179,417				

## 3) 수산업 (수산발전기금)

정책 목표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및 발전 도모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완충적 기능수행의 필요성 증대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FTA 및 WTO/DDA협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산업의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증대

- 대외적인 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산부문의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 및 어업인들의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동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현재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경영의 악화,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어가소득의 지속적 감소 등 심각한 어촌경제의 문제

점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따른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기금사업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충족 가능

- 재정용자 확대를 통한 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대
  -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산업 분야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을 통한 재정용자사업의 확대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업구조조정,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 친환경 어업 쪽으로 수산업의 재개편 및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금을 통한 재정용자 수행의 필요성 고려
  - 수산업은 생산량이 변수가 많은 자연조건에 절대적으로 좌우되어 인위적 생산조절이 어려우며, 보관이 어렵고 유통체계가 타산업에 비하여 복잡한 특수성이 있음. 따라서 수산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산업부문으로서 재정용자는 지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수산분야의 유일한 지원 기금인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부표 IV-22> 수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억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149,523	209,756	611,034	600,851	599,381	599,793
집 행(B)	156,086	241,559	627,225	627,964	604,856	-
집행률(B/A)	104	115	103	105	101	-

주: 1. '07년 현재 용자잔액: 638,001백만원  
 2. 비중('08년기준) : 기금 5,998억원 중 용자 4,877억원(비중 81%)

## □ 기금용자금 현황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사업('08예산: 150억원): 용자 100%
- 양식어업지원사업('08예산: 133억원): 용자 70(100)%, 자부담 30%
-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사업('08예산: 7억원): 용자 100%
- 어선기관및장비개량사업('08예산: 6억원): 용자 80%, 자부담 20%
-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08예산: 157억원): 용자 100%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사업('08예산: 24억원): 용자 80%, 자부담 20%
- 어업인정책보험지원사업('08예산: 100억원): 용자 100%
- 관리회사제도도입사업('08예산: 50억원): 용자 70(100)%, 자부담 3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사업('08예산: 10억원): 용자 100%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사업('08예산: 7억원): 용자 70%, 자부담 30%
- 수산물수매지원사업('08예산: 1,340억원): 용자 80%, 자부담 20%
- 우수수산물지원사업('08예산: 1,366억원): 용자 100%
- 가공시설및운영지원사업('08예산: 257억원): 용자 70~80%, 자부담 20~30%
-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08예산: 61억원): 국고 70%, 지방비 30%(용자 20%, 자부담(시비) 10%)
-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사업('08예산: 1,209억원) : 용자 80(100)%, 자부담 20%

## &lt;부표 IV-23&gt; 자금별 업무요약

구 분	내 용
TAC참여어업인경영 개선자금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양식어업지원자금	양식어업 기반구축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 등 지원 및 양식기자재배합사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원활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배합사료 전문생산시설 지원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양식비용 절감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자금	어망류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한 어망류 제조업체 운영자금 지원 및 친환경 자원관리형 어구에 대한 지원
어선기관및장비개량자금	노후어선의 기관대체 및 장비설비개량 지원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	전문 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 지원자금	노후 원양참치연승(선망) 어선의 대체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정책보험지원자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지급채원 확보 및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
관리회사제도도입자금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경비절감,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원양어업 경쟁력 제고
원양어선설비현대화자금	노후원양어선설비 등 교체지원으로 운항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순환여과식양식시설 지원자금	양식시설을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여 생산 비용 절감 등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수산물수매지원자금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출용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
가공시설및운영지원자금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가공산업 육성 및 동북아 수산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지원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 시장건설자금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 무역중심기지 기능 확보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지원자금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 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및 공판장 출하 촉진, 직거래고취, 도매시장출하 촉진자금 지원

## &lt;부표 IV-24&gt;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잔액

(단위: 억원)

대상자금	'08. 6월말 잔액	'08년도 예산	대출 금리(%)	용자조건 (거치/상환)
TAC참여어업인경영 개선자금	348	150	3.0	2년/3년
양식어업지원자금	264	133	3.0~ 4.0	해면 : 3년/7년 내수면 : 3년/10년 양식기자재 : - /2년 패각처리 : 2년/3년
어망생산운영및어구 제작비지원자금	12	7	3.0~ 4.0	어망 : - /1년 어구 : 2년/3년
어선기관및장비개량자금	22	6	3.0	1년/4년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	561	157	3.0	5년/10년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자금	266	24	4.0	5년/10년
어업인정책보험지원자금	100	100	4.0	2년/3년
어업질서확립자금	49		3.0	2년/3년
관리회사제도도입자금	-	50	3.0	운영자금 : - /2년 시설자금 : 5년/10년
원양어선설비현대화자금	-	10	3.0	5년/5년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자금	-	7	3.0	3년/10년
수산물수매지원자금	1,461	1,340	3.0~ 4.0	- / 1년 (어가공동 - /2년)
우수수산물지원자금	1,270	1,366	2.0~ 4.0	- / 1년
가공시설및운영지원자금	871	257	3.0~ 4.0	가공업체 : - /2년 노후시설 : 3년/7년 단지조성 : 5년/10년
감천항공영수산물 도매시장건설자금	248	61	3.0	3년/7년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지원자금	1,154	1,209	3.0~ 4.0	- / 1년
총 계	6,626	4,877		

수  
산  
발  
전  
기  
금

## 4) 축산업 (축산발전기금)

- 정책목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 현재 축산농가는 한미 FTA, 한·EU FTA 등 개방 확대로 연 평균 생산액 감소와 세계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AI 등 각종 가축질병의 피해로 우리 축산업에는 많은 환경 불안과 제약요인이 있어 그 기반을 유지·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축산발전기금은 그동안 꾸준한 용자지원으로 UR 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의 33.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축산업생산액 : ('80) 1.2 → ('06) 11.7조원
    - 농업생산액(35.2조원)의 33.1%
  -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 :('95) 27.4 → ('04) 31.3 → ('07) 35.4kg
- 따라서 앞으로의 축산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농가의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면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축산발전기금의 기능
  -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기반 구축,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등을 추진
  -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시 가축 및 축산물의 수매비축,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도모
-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 에 대한 기반 구축과 안전성 확보
-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 가축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사료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 가축위생 및 방역
  - 국경검역 강화, 예방원칙에 입각한 평시 방역 활동 지원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응 추진
-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 및 이용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처리를 지원

<부표 IV-25> 축산발전기금의 용자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획(A)	386,926	504,313	451,622	449,909	406,629	483,119
집 행(B)	344,069	468,250	375,639	405,375	362,918	-
집행률(B/A)	89	93	83	90	89	

주: 1. 규모 : ('07년 용자잔액) 1,680,471백만원

2. 비중('08년기준) : 기금 9,857억원 중 용자 4,831억원(비중49%)

## &lt;부표 IV-26&gt; 자금별 업무요약

구 분	사 업 내 용
종축시설 현대화	○ 종축시설개선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마필육성사업	○ 국산경주마 사육기반 조성
축산물도축가공 업체지원	○ 위생적인 도축·가공기반시설확충 및 냉장육 등 유통체계 정착 지원 및 가공업체 원료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브랜드경영체종합 지원	○ 브랜드 및 가축 계열화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생산유통 선진화 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원료구매(수입)자금 지원 및 HACCP 도입을 통한 사료제조시설 개선지원
가축및계란수송 차량지원	○ 근출혈 및 물떼지 발생억제(품질향상), 가축전염병예방, 계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송 특장차량 지원
낙농체험관광사업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체험관광상품을 개발, 도시민의 이해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 가축시장이 중개를 통한 거래가 점차 경매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송아지경매시장 개보수자금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국내 부존 사료자원 활용 확대 등 지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알선하여 농가소득 제고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 주변환경이 열악한 가축밀집사육 지역농가의 특별관리 등 가축질병 최소화

## &lt;부표 IV-27&gt; 2008년도 상반기 용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8.6월말 대여액	'08년도 예산	대출금리 (%)	지원조건
종축시설 현대화	-	8,492	3.0	5년거치 10년상환
마필육성사업	153	7,636	3.0	3년거치 7년상환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68,924	157,941	0.0~4.0	1년거치 10년상환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131,490	180,200	0.0~4.0	3년거치 7년상환
사료산업종합지원	80,923	83,900	3.0~4.0	3년거치 7년상환
낙농체험관광	-	400	0.0	3년거치 7년상환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	2,000	3.0	3년거치 5년상환
가축및계란수송차량지원	-	3,250	3.0	2년거치 3년상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031	6,900	3.0	3년거치 7년상환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400	400	3.0	5년거치 10년상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750	32,000	2.0	3년거치 일시상환
합 계	308,671	483,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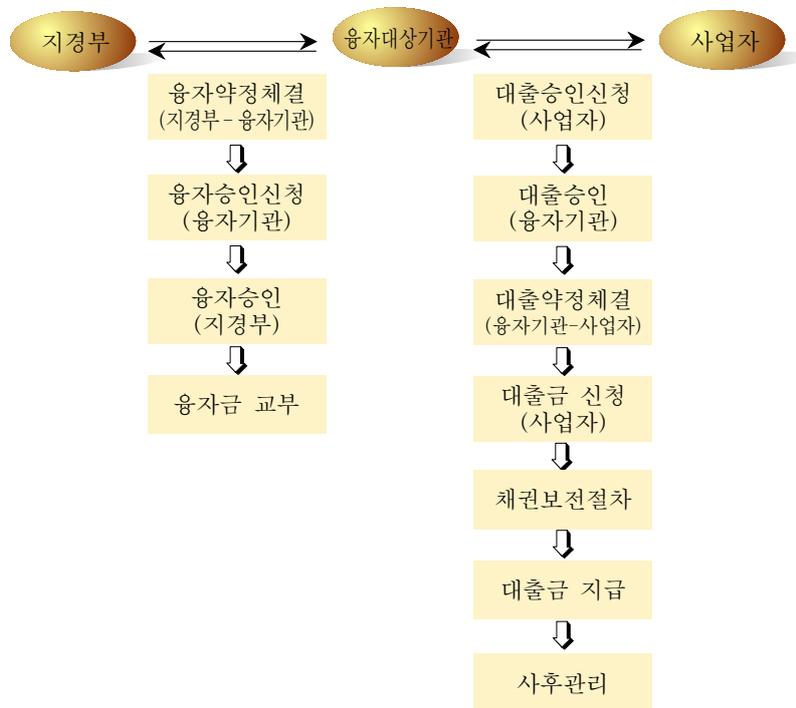
## &lt;부표 IV-28&gt; 2008년도 상반기 융자금 잔액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대여잔액('08.6말)
마필육성사업	17,594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278,752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497,925
사료산업종합지원	127,47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2,218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4,08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8,910
기타사업	706,881
-가축입식자금	5,427
-관광목장조성	157
-낙농관련시설	135
-낙농진흥회설립지원	21,737
-농가긴급경영안정	9,683
-농협번식우시범목장	1,200
-닭경쟁력강화	17,310
-동물약품GMP	640
-돼지경쟁력강화	31,246
-경제능력검정	900
-부루세라피해농가경영안정	16,604
-선도전업양축가지원	199
-송아지생산기지화	6,427
-재해복구지원	934
-전문종돈업육성	6,309
-젖소경쟁력강화	18,809
-축사시설개선	445
-축산기자재생산	764
-축산단지조성	13,583
-축산업등록지원사업	982
-한우경쟁력강화	4,541
-한우특화사업	77
-'04년 부채대책사업	548,772
합 계	1,713,835

### <부록 VI-1> 개별 용자자금의 관리방식의 예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용자자금의 명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용자금
2. 필요성(목적)
  -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자에게 금융지원
3. 관리기관
  - 한국석유공사
4. 신청절차



## 5. 설치연도

- 1995년(가스안전관리사업은 1997년 가스안전관리기금 통합시 이관됨)

## 6. 연도별 조성 규모와 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조성규모			
	투자계정 (특별회계내) 전출금	융자원리금 회수	기타	합계
1998	190,000	500,244	211,147	901,391
1999	200,984	556,498	128,287	885,769
2000	166,000	721,590	35,519	923,109
2001	102,000	1,168,403	42,143	1,312,546
2002	-	927,677	278,525	1,206,202
2003	131,876	653,559	247,813	1,033,248
2004	-	824,897	92,617	917,514
2005	151,695	714,385	16,133	882,213
2006	158,339	844,528	49,325	1,052,192
2007	278,655	923,654	24,282	1,226,591
합계	1,379,549	7,835,435	1,125,791	10,340,775

주: 기타에는 전년도이월금, 공자기금예탁원금 및 예탁이자 등이 포함

연도	운용규모		
	운용규모		합계
	누적(기초잔액)	매년도 신규	
1998	3,839,313	773,250	4,612,563
1999	4,174,609	877,015	5,051,624
2000	4,682,437	986,613	5,669,050
2001	5,178,446	1,113,399	6,291,845
2002	5,197,287	1,027,109	6,224,396
2003	5,397,302	976,221	6,373,523
2004	5,823,420	926,284	6,749,704
2005	5,938,031	903,475	6,841,506
2006	6,270,371	1,032,263	7,302,634
2007	6,567,593	1,179,533	7,747,126
합계	53,068,809	9,795,162	62,863,971

## 7. 사업별 현황

## 1~2) 금리 및 용자조건

사업명	용자대상 기관	금리(%)	기간	
			거치	상환
◇ 에너지 및 자원정책				
· 집단에너지공급 (직접대출)	에너지관리 공단	4.75	8	7
		5.25	8	7
· 에너지절약시설설치[기존 대출분] [08년대출분]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 사업)	에너지관리 공단	3.00	3	5
		1.50	3	5
- 대출받는자와 대출은행 합 의시[기존대출분] [08년대출분]		고정 1.50	3	2(전기)/7(월)
- 신용대출		고정 0.00	3	2(전기)/7(월)
- 신용대출중 대출받는자와 대출은행 합의 (기술담보대출)		3.50	3	2(전기)/7(월)
		고정 4.00	3	2(전기)/7(월)
		3.50	2	3
· 신재생에너지보급 (기술담보대출)	에너지관리 공단	3.00	5	10
		3.50	2	3
◇ 에너지 안전				
· 가스안전관리	한국가스안 전공사	3.50	3	5
◇ 국내외자원개발				
· 국내유전개발 (탐사사업)	한국석유공사	3.50	5	5
		4.50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	
· 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한국석유공사	2.50	5	5
		3.50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	
·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	대한광업진 흥공사	2.50	5	5
		3.50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석유공/ 광진공	3.50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	
◇ 에너지수급안정				
· 도시가스공급배관	한국석유공사	5.05	5	10
· 대체산업창업지원	한국광해관 리공단	3.00	5	5

주: 1. 이자율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매분기마다 국고채 3년 유통물 평  
균수익율에 연동하여 0.25%P 단위로 조정됨  
2. 위 자료는 2008년 4/4분기 기준으로 작성됨

## 3) 각 사업별 개별 대상자 지원현황 (2006~2007)

(단위:백만원)

사업명	용자취급기관	용자대상	2006	2007	비고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자	195,524	129,923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 설치 사업자	433,875	467,367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자	62,600	56,340	
가스안전관리	한국가스안전 공사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39,000	36,367	
국내외유전개발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 사업자	218,500	357,557	
해외자원개발	대한광업진흥 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체	50,500	68,400	
도시가스공급배관	한국석유공사	도시가스사	21,000	16,000	
대체산업창업지원	한국광해관리 공단	석탄·광업 이외 업종 사업자	10,000	5,000	
합 계			1,030,999	1,136,954	

## 8. 용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 1) 실익

- 용자 지원예산의 축소를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투자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지므로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 예상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차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단기적인 수익증대를 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시

대출상환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설정 등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대출시에는 상환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높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 상존

- 성공불용자 등 감면사업 수행이 곤란

석유 및 자원개발사업 등 성공불용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불용자 등 감면용자 사업의 수행이 곤란

## <부록 IV-2>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평가 결과

<제1분야 : 구조고도화(16개)>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1. 경영안정지원 (4,312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외부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급애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경제 통합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li> <li>- 목표달성도, 만족도 등 정책성고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li> <li>- 본 사업은 불가불 중진공의 직접신용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진공의 위험평가기능 강화나 대손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치의 강구가 필요</li> </ul>
2. 경영혁신지원 (10,352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일반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의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정부분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li> <li>- 본 사업은 정책성고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li> <li>- 본 사업은 민간금융기관과의 경합(crowding out)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정 정책지원 수준에 대한 고민 및 민간금융시장의 장기금융, 신용금융 기능 확대를 위한 유인책의 강구가 필요</li> </ul>
3. 구조조정지원 (30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FTA에 따른 무역구제금융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li> <li>- 본 사업은 사업집행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단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정책성고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부터 가능함</li> </ul>

## &lt;제1분야 : 구조고도화(16개)&gt;의 계속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후 치유적 성격이 강하므로 예산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 예산배정을 위한 예측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업간협력지원 (2,778억원, 중기청)	A	- 본 사업은 소규모 기업간의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사업으로 공통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매우 높음 - 본 사업은 정책성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은 그동안 물리적 시설의 집단화, 공동화에 치중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어 공동판매활동지원 등 연성 협업화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가스안전관리 용자 (369.7억원, 산자부)	A	- 가스사고 발생예방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본 사업 지속의 의미 중요 - 대기업보다 가스사고 발생소지가 높은 LP가스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지원 조건 완화 또는 지원규모 확대 필요 - 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별 차등금리 적용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정부분 신용대출 추진 검토
6. 도시가스공급 배관건설사업 (210억원, 산자부)	B	- 수도권외의 경우 도시가스보급률이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나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 지원범위를 지방으로 한정할 점은 매우 타당함 - 최근 도시가스보급률이 상당 수준 충족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원 대상을 지방 중소기업체로 한정하고 대기업 지원은 연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필요
7. 에너지이용합 리화자금지원 (6,293억원, 산자부)	A	- 에너지절약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사업성과는 다른 사업에 비해 종합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 향후 수혜기업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지원과정상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 &lt;제1분야 : 구조고도화(16개)&gt;의 계속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8. 일반광업육성 (105억원, 산자부)	A	- 일반광업육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임 - 사업성결과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편임 - 향후 외부로부터의 사업선정상의 객관성 유지평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 (500억원, 산자부)	S	- 최근 대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본 사업 지속의 의미 중요 - 향후 본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 수요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핵심기술의 공동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
10. 부품소재산업 육성 (732억원, 산자부)	A	- 부품소재산업육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사업성결과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는 조금 낮은 편임 -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고 수혜기업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11. 지식기반산업 발전 (456.2억원, 산자부)	S	- 최근 수요산업 고도화, IT, BT, NT, CT 등 신기술 발전, 융합화에 부응하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 나노 기술 연구성과 산업화 촉진과 해당기업들의 영세성, 노동집약산업 특성상 본 사업 지속의 의미 중요 - 수혜기업들의 만족도 및 핵심성과지표가 탁월한 수준임
12.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63.05억원, 산자부)	B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 - 정책집행과정에서 지원신청 기업수가 미미하여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충분하고 광범위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 - 아울러 지원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지원예산규모가 여타 사업에 비해 매우 작아 사업성결과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

## &lt;제1분야 : 구조고도화(16개)&gt;의 계속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13.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881억원, 노동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예방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임</li> <li>- 사업성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임</li> <li>-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향후 성과목표로서 자금지원율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발생 및 감소와 관련된 계량지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정책수요자 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보전달의 개선이 요구됨</li> </ul>
14. 농기계생산 지원 (200억원, 농림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농기계생산 원자재인 국제금속가격의 불안정과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에서 본 사업 지속의 의미 중요</li> <li>- 농업부문 개방,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 추세로 고품질 농기계로의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li> <li>-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기계별로 지원규모를 차등화하거나,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간의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li> </ul>
15. 재활용산업 육성융자 (700억원, 환경부)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산업육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li> <li>- 사업성과는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임</li> <li>- 향후 성과지표 목표치로서 폐기물 절감 또는 재활용량과 같은 거시적 지표로의 평가관리가 요구됨</li> </ul>
16. 환경개선자금 (540억원, 환경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개선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li> <li>- 사업성과는 다른 사업에 비해 보통 수준임</li> <li>- 향후 성과목표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혁신이나 변화(예, 수질 또는 공기오염정도의 저감 등)과 같은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li> </ul>

## &lt;제2분야 : 정보화(7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건
17. 기술정보 진흥원 보조 (39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들 경쟁력 요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보조는 중소기업정책의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li> <li>- 전문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본사업의 설정이 중요한바, 현재 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합목적적으로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li> </ul>
18. 상권정보제공 시스템 (6.8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과잉진입을 예방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li> <li>- 상권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특정 상권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li> <li>-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기반정보를 신규·확충하는 방안 필요</li> </ul>
19. 생산공정 디지털화 (115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실질적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목표에 부합</li> <li>- 구체적인 과제의 달성을 통하여 경영프로세스의 개선을 달성하여 현장성파가 탁월</li> <li>- 폐지된 사업부문인 공정혁신개선사업도 기술혁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를 대체할 사업의 개발이 필요</li> </ul>
20.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32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낮은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화 설비 수준으로 사업의 효과가 사업기획시의 기대치에 미흡</li> <li>- 지원 대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li> <li>- 구축 후의 시스템 관리역량 및 활용도가 명확한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li> </ul>

## &lt;제2분야 : 정보화(7개)&gt;의 계속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21.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112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지향적인 정보화 과제를 발굴하여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개선하는 중소기업 현장 연구개발 사업임</li> <li>-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정보화를 촉진·유도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직 프로세스의 개선성과를 달성</li> <li>- 기업규모에 적합한 정보화 구축으로 현장기술을 축적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li> </ul>
22. 산업부문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113억원, 산자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48개 업종이 구축·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기획 시 계획된 사업목표를 완료한 상태</li> <li>- 향후, 기구축된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거래규모 확대 등 실질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li> <li>- 성공사례의 개발·확산을 통하여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li> </ul>
23. IT설비투자 확대 지원사업 (550억원, 정통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동화, 경영정보자동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진작</li> <li>- 사업성과 분석결과는 소기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임</li> <li>- 중소기업 및 국가 전체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이루어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li> </ul>

## &lt;제3분야 : 창업벤처(8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건
24. 벤처캐피탈 선진화 (18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투자 투명성 제고와 중소기업 투자유치지원 사업으로 현 정부정책방향과 부합되며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달성 가능성 역시 높으며, 지원대상, 규모, 조건 등 사업추진체계 등이 양호함</li> <li>- 사업집행이 타당하며 투명하고, 정책목표 달성도가 매우 양호하며, 특히 7개 핵심성과지표들이 매우 양호함을 보여줌</li> </ul>
25. 신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88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역량 강화, BI성공률 제고, 벤처기업역량 강화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 운영됨</li> <li>- 동 사업은 창업보육협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시행하며 매년 중소기업청의 승인과 결과보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li> <li>- 자체목표의 달성도, 수혜기업만족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진행상의 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낮음</li> <li>- 사업의 본래 목적을 대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음</li> </ul>
26. 여성기업육성 (76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창업촉진,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함</li> <li>- 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총 14개 사업을 운영</li> <li>- 대체로 수혜기업 만족도가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특히 사업 전문성, 진행 지원성, 사업 공감성 부분의 만족도가 낮음</li> </ul>
27. 중소벤처창업 대학원운영 (20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 관점에서 사업 자체는 타당하며, 사업홍보 및 집행이 대체로 타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정책성과 역시 양호함</li> <li>- 다만, 창업전문가 양성 및 예비창업자 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운영 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개편이 필요함</li> </ul>

## &lt;제3분야 : 창업벤처(8개)&gt;의 계속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28. 중소기업모태 조합출자 (1,000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추진체계가 매우 적정하고 충실함</li> <li>- 수요자 접근성은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 반면 사업 집행은 매우 높은 타당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고, 당초 설정목표대로 목표가 달성되고 있으며, 5개 핵심성과지표 역시 매우 높은 달성도를 보여줌</li> </ul>
29. 중소·벤처 창업지원 (5,610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크며, 사업목표 및 달성도 등 정책형성이나, 사업추진체계, 수요자 접근성 등 정책집행 및 정책목표 등이 타 사업에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운영됨</li> <li>- 특히, 4가지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가 매우 양호하며, 자체 관리실태도 매우 양호함</li> </ul>
30. 석탄대체산업 창업지원 (100억원, 산업자원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지역에서의 창업 및 확장 지원으로 지원목표가 뚜렷함</li> <li>- 사업의 집행체계, 성과 등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남</li> <li>- 인력, 연구개발 등과 같은 다른 인프라 지원이 동반될 경우, 본 사업의 효과는 더욱 좋아질 것임</li> </ul>
31.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19.6억원, 노동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영업장소를 전세로 얻어, 장애인 사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의 2~3%를 연간 임대료로 받고 전대하는 사업</li> <li>- '06년 19.6억원에서 '07년 88억원으로 예산의 대폭 증가</li> <li>- 향후 '사업유지율'을 주요 목표지표화하여 관리할 예정임</li> </ul>

## &lt;제4분야 : 기술혁신(10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건
32. 기술혁신선도 기업육성 (38억원, 중기청)	B	- 경비성 사업으로 성과평가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 며, 사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군으로 구 성되어 있음 -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 특히, 유사 사업끼리 묶어서 사업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33.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평가 (30억원, 중기청)	S	-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 성 증대 - 기업의 만족도와 사업성과는 매우 우수 -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사업과 연 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34. 개발기술 사업화지원 (850억원, 중기청)	A	-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용자사업으로서 원활 히 진행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절히 운용 -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하며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매우 우수하며, 핵심 성과지표 달성도는 탁월
35. 해외기술인력 지원 (31.67억원, 중기청)	S	- 기술인력 부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가 매우 높으며 사업체계 또 한 매우 우수함 - 특히 기술애로 해결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
36.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1,800억원, 정통부)	S	-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진행 - 담보가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부합 - 사업 참여주체의 만족도가 우수하며, 탁월한 성과 를 시현
37. 국제출원촉진 (14.63억원, 특허청)	A	- 우수특허의 해외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목 표가 뚜렷함 - 특허가치의 증대 및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임 -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사업의 집행체계 및 성 과 역시 매우 우수함

## &lt;제4분야 : 기술혁신(10개)&gt;의 계속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38. 모태조합출자 (550억원, 특허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며, 사업추진체계, 정책형성이나 정책성과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하며, 집행기관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적정 및 양호할 것으로 유추됨</li> <li>- 그러나 모태펀드의 분야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제한된 자원이지만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분야로의 재분배가 필요함</li> </ul>
39. 특허기술가치 평가 (56.1억원, 특허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수요, 체계, 성과가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li> <li>- 본 사업의 결과가 기술금융, 기술거래로의 연결을 통한 직접적 사업화 제고에는 한계를 가짐</li> <li>- 평가기관을 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40.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31.4억원, 특허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특허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높음</li> <li>- 사업에 대한 수요, 체계, 성과가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li> <li>- 다만 특허권자가 시작품 제작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41.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15억원, 과기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우수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인정</li> <li>- 선정심의, 투명한 사업집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li> <li>-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li> <li>- 다만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li> </ul>

## &lt;제5분야 : 수출 출(12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4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33.9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마케팅 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임</li> <li>- 핵심성과지표 달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속적 지원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예산 조정이 고려됨</li> <li>- 수출관련 유사 사업과의 통합지원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경제적이고도 효율적 집행을 고려 할 필요성 있음</li> </ul>
43. 무역촉진단 파견 (109.9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목표달성도가 매우 우수하며, 수혜기업의 만족도도 우수함으로 조사된 사업임</li> <li>- 수출 증가율과 수출 전망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핵심성과지표 조사 결과 우수함으로 판단됨으로 지속적 지원 요구됨</li> </ul>
44. 브랜드활성화 지원 (45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판로의 유지와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대체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됨</li> <li>- 브랜드파워 육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제의 보완 필요</li> <li>-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4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200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li> <li>- 사업실시 후 기업의 수출 및 매출증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품질향상에 대한 결과는 다소 낮게 나타남</li> </ul>

## &lt;제5분야 : 수출 출(12개)&gt;의 계속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건
46.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70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실업률 감소/전문요원 양성인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초보수준 개척요원으로부터의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임</li> <li>-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 무역요원의 육성방안 검토가 필요함</li> <li>- 정예화된 요원만을 파견함으로써 파견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동시에 수출증대라는 동반성과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li> </ul>
47.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 (63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 전문기관인 민간해외지원센터를 적극 발굴하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함</li> <li>- 해외진출민간거점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적절하며, 본 사업의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충실성은 매우 탁월함</li> <li>-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민간센터를 활용하면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초기위험을 줄이고 진출을 위한 소요기간이 단축되므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에 효율적인 사업임</li> </ul>
48. 수출인큐 베이터 운영 (55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충실성, 정책집행의 홍보 및 투명성, 사업성과 등이 매우 우수함</li> <li>-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중소기업이 임차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인큐베이터는 기반 시설만 구축할 필요</li> </ul>
49. 인터넷 중소기업관 (30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수행체계 및 사업성과도 우수함</li> <li>- 아직도 웹페이지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며, 수정이 필요</li> <li>- 중소기업이 사업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기업의 부담금을 늘릴 필요</li> </ul>

## &lt;제5분야 : 수출 출(12개)&gt;의 계속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건
50. 중소기업 의환거래지원 (1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추진체계 및 수혜자 만족도 등도 우수하다고 판단됨</li> <li>- 일부 사업부대비비용만 예산으로 책정하고 우발채무 성격의 예산은 예비비로 책정하여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li> </ul>
51. 해외산업 협력지원 (24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 및 수혜기업 만족도도 우수</li> <li>- 예산을 운영비로만 집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해외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집행되도록 할 필요</li> </ul>
52. 국내전시 회지원 (45억원, 산자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수준의 전시회 육성을 통해 수출마케팅효과, 기술 및 경쟁정보 습득, 기업 홍보효과, 동기부여 등의 부수성과 제고</li> <li>-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할 때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됨</li> <li>- 지원 전시산업체의 차별적인 사업기획력을 선정조건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함</li> </ul>
53. 해외마케팅 지원 (170억원, 산자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만족도와 성과지표는 우수한 수준의 평가치를 달성하였으나 해외전시회 참가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li> <li>- 수출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업 방식이나, 사업의 신규 전시회 참가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li> <li>- 차별화된 기획 전시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li> </ul>

## &lt;제6분야 : 경영(7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54. 대·중소 기업간 협력증진 (30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목표달성도, 수혜기업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li> <li>-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매칭펀드 비율을 높이고 기업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li> </ul>
55. 중소기업 조사평가 (12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통계기반 구축, 지식서비스업 육성, 중기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성</li> <li>- 통계기반구축은 중소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유지 관리,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는 지식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 도모, 중기정책평가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li> </ul>
56. 중소기업 중앙회보조 (71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위임·위탁한 사업으로 지원은 적정하다고 봄</li> <li>- 사업집행의 타당성이나 투명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li> </ul>
57. 중소기업 컨설팅 (186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등을 통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며 컨설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사업임</li> <li>- 지원 효과는 투입 대비 매우 높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함</li> <li>- 혁신성과는 지원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바, 사후관리와 추적성과평가가 필요하며, 글로벌 수준의 컨설턴트 사전 교육, 차별화된 컨설팅 기획이 선정조건으로 강화될 필요</li> </ul>

## &lt;제6분야 : 경영(7개)&gt;의 계속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58. 자산유동화 지원 (201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성과 및 수혜자만족도 등이 매우 낮아 사업은 미흡하다고 평가</li> <li>- 주식시장 호조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로 본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줄고 있음</li> </ul>
59. 정보제공사업 (48.1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보 문제 해소라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사업집행을 실시하고 있음</li> <li>- 사업성과 관련 지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 성과는 탁월함</li> </ul>
60. 정책자금 맞춤 연계지원 (9.4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기업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li> <li>- 수혜기업 CEO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업시행후 매출액 증가도 높게 나타났다으나, 중소기업컨설팅 사업 등 유사한 사업 존재</li> </ul>

## &lt;제7분야 : 판로(3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61. 공공구매 지원 (7.2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정보망 운영, 유지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위해 적절한 사업체계 및 지원방식을 갖추</li> <li>- 정보제공 및 성능인증에 대한 목표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구매 후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큰 폭의 증가</li> </ul>
62. 마케팅 촉진지원 (30.6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활동 중 하나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홍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유용한 사업임</li> <li>- 연구원에서 수혜기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후 매출실적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조사됨</li> <li>-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li> <li>- 매출 증감률과 홍보 후 인지도 증가를 변수로 하는 핵심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탁월한 사업으로 평가됨</li> </ul>
63. 유통물류 합리화 (299.6억원, 산자부)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구조 혁신 및 효율화를 통해 국가 및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함</li> <li>- 정책형성의 체계와 정책필요성, 적절성,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li> <li>- 향후 종합물류기업 육성, 동북아 물류거점 확충 등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li> </ul>

## &lt;제8분야 : 인력(6개)&gt;

사 업 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 업 평 가	
	평가 등급	평 가 의 견
64.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양성 (49.98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단절로 인한 skill-mismatch(숙련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li> <li>-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공고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제도적 개선의 기대효과를 가짐</li> <li>- 현 시점에서 지속수행한 후 사업결과 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li> </ul>
65.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194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미흡하고 인력개발역량도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적자원 수준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li> <li>- 구직자들의 막연한 중소기업 기피의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사업</li> </ul>
66. 연수사업 (125.7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근로자는 능력개발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양질의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li>- 본 사업은 이런 필요성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핵심기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li> </ul>
67. 장애인시설 설치비용융자 (179.9억원, 노동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인력유입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시설미비로 고용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li> <li>-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으로 판단됨</li> </ul>

## &lt;제9분야 : 지역균형(6개)&gt;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68.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450억원, 노동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업은 훈련여건의 취약으로 능력개발기회가 제약받고 있던 중소기업근로자에 대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li> <li>-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li> </ul>
69. 클린사업 조성지원 (1,000억원, 노동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한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사업의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음</li> <li>- 지원에 앞서 충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진행과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조에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ul>
70.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39.26억원, 중기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li> <li>- 정책성과 지표가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li> </ul>
71. 시장경영혁신 (245억원, 중기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집행 및 평가체계도 적절함</li> <li>- 정책성과 지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li> </ul>

## &lt;제9분야 : 지역균형(6개)&gt;의 계속

사업명 (‘06지원규모, 부처명)	사업평가	
	평가 등급	평가의견
72. 소상공인 지원자금 (4304.6억원, 중기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li> <li>- 사업관련기관인 중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취급금융기관에서 현황 및 사후 관리되지 않는 점은 보완될 필요</li> </ul>
73.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600억원, 산자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li> <li>-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74. 산업단지 활성화 (487억원, 산자부)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정책성과 지표도 높으나 지원금리(5.0%)가 타 정책자금보다 높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은 개선 필요</li> </ul>
75. 지역산업 균형발전 (532.9억원, 산자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실적이 주로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집행실적이 없던 충청, 호남, 강원 지역에서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가능성이 높음</li> <li>- 담보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담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li> </ul>

## <저자약력>

### 박상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박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정책학 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원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재정융자제도 개선방안

---

---

2009년 6월 22일 인쇄  
2009년 6월 29일 발행

저 자 박상원·박정수·안중범·이원희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32-5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